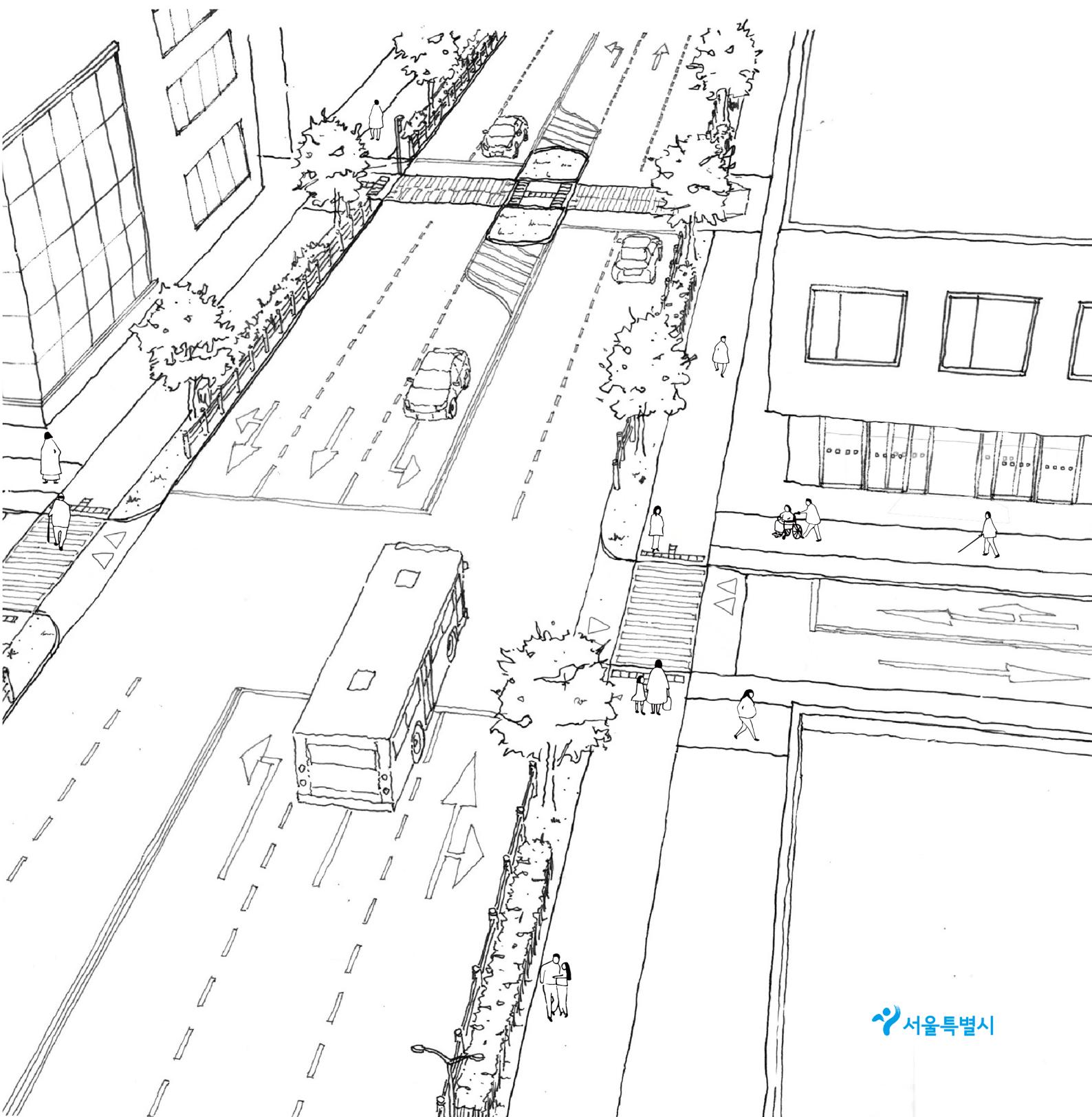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





---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SEOUL UNIVERSAL DESIGN GUIDELINE

**CONTENTS****1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b>  개요</b>	<b>0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b>	8
	1.1 배경 및 필요성	8
	1.2 왜 <유니버설디자인>인가?	8
	1.3 목표	10
	<b>0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b>	11
	2.1 범위	11
	2.2 원칙	12
	2.3 특징	13
	2.4 구성	14
	<b>03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b>	16
	3.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16
	3.2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해	19

**2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b>  가로</b>	<b>01 적용범위</b>	36
	<b>02 보도</b>	39
	2.1 보행안전구역	39
	2.2 차량진입구역	51
	2.3 대지 안의 공지	55
	2.4 자전거도로	61
	2.5 시설물 구역	73
	<b>03 차도</b>	93
	3.1 국지도로	93
	3.2 횡단보도	99
	3.3 속도저감 방안	109

**II 공원 · 광장**

<b>01 적용범위</b>	118
<b>02 진입공간</b>	120
2.1 접근로	120
2.2 주출입구	122
2.3 주차장	124

03 이동공간	126
3.1 산책로	126
04 위생공간	128
4.1 화장실	128
05 편의공간	130
5.1 편의시설	130
5.2 안내시설	132
06 휴게공간	134
6.1 휴게구역	134
6.2 놀이터	136
<hr/>	
<b>III 공공건축물</b>	
01 적용범위	142
02 접근공간	143
2.1 대지 출입구	143
2.2 보행접근로	149
2.3 주차장	157
03 진입공간	165
3.1 주출입구	165
3.2 로비	173
04 이동공간	177
4.1 복도	177
4.2 실내출입문	187
4.3 경사로	193
4.4 계단	199
4.5 엘리베이터	207
4.6 에스컬레이터	217
4.7 방재 및 피난시설	223
05 위생공간	229
5.1 화장실	229
5.2 다목적 화장실	243
5.3 수유실	249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255
<hr/>	
<b>통합 · 연계한 기준 및 지침</b>	262



1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 1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요

---

### I 개요

0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8
1.1 배경 및 필요성	8
1.2 왜 <유니버설디자인>인가?	8
1.3 목표	10
0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11
2.1 범위	11
2.2 원칙	12
2.3 특징	13
2.4 구성	14
03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6
3.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16
3.2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해	19

---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 1.1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이다.
- 이 중에서 12.5%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고,<sup>1)</sup> 8.8%는 임산부 · 유아동반자이며,<sup>2)</sup> 3.9%는 장애인<sup>3)</sup>이다. 또한 한해 1,357만명(2016년)이 방문하는 도시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방문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환경과 건축물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나이, 신체 크기, 국적,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즉 쉽게 접근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한다.

### 1.2 왜 <유니버설디자인>인가?

-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 정보 ·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론과 철학이다.
- 유니버설디자인에서는,

- 1) 성별, 연령, 국적, 신체 크기, 왼손잡이, 질병 등에 의한 차이 뿐만 아니라
- 2) 개인의 다양성에 의한 각기 다른 체력, 이동 및 인지능력, 일시적 불편사항 등의  
다음에 의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다.

-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길이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은 고비용의 변화와 수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최적의 실행은 이용이 예상되는 이용자의 요구 폭을 다양한 이용자와 함께 발견하고 현실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지향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1) 서울통계, stat.seoul.go.kr

2) KOSIS, 주민등록연령인구·성 · 연령5세

3) KOSIS, 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2014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이전

기존의 환경은 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되었다. 따라서 평균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여 왔다.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은 이용자의 형태에 기반한 맞춤형 디자인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 가능은 기본이고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높여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1.3 목표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의 공공환경을 이용하는 '보다 많은 이용자의 요구가 충족되어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기획자, 건축가, 디자이너, 관리자 등의 창의적 해결안 검토 및 실현이 가능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한 실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공공환경과 건축물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향하는 것
- ✓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현존 법규를 지키면서 좋은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 ✓ 서울시의 도시 환경을 접하는 모든 시민과 방문객에게 손쉬운 이용과 접근이 가능하고 안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 ✓ 누구나 삶의 최대한을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을 성취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

02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2.1 범위

-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의 3개 부문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한다.

부문	영역	세부항목	주요 내용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시설물 구역	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 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횡단보도	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속도저감 방안	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공원 · 광장	진입공간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산책로
		위생공간	화장실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휴게구역, 놀이터
공공 건축물	접근 공간	대지 출입구	위치, 안내
		보행접근로	유효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주차장	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공간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공간, 주출입문, 유도 및 안전
		로비	접수 · 안내데스크 및 유도 · 안내
	이동 공간	복도	유도폭 및 보행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계단	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에스컬레이터	구조, 승강장
		방재 및 피난시설	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위생 공간	화장실	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다목적 화장실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 샤워실, 탈의실	일반사항, 욕실, 샤워실, 탈의실

## 2.2 원칙

- 서울특별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을 필요로 한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철학은 기존의 사회적·물리적 장벽은 없애고, 그러한 장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유니버설디자인, 법적 최소한이 아닌 시민의 삶을 최대화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한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철학

“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철학을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은 '편리', '안전', '쾌적', '선택가능'으로 한다.

### 편리하다

- 연령, 지식, 능력 등에 관계없이 조작과 이용이 쉽다.
- 필요한 정보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 제공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 안전하다

-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미리 안내한다.
- 조작이나 이용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부주의한 실수에도 안전하다.
-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 쾌적하다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청결하고 정돈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선택가능하다

-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 패턴 등의 차이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수단이나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2.3 특징

- 본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준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제시하였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천만명, 방문객 1,350만명이라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분	세부명
법률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li> <li>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li>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li> <li>도로교통법 시행규칙</li> <li>건축법</li> </ul>
기준 규칙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li> <li>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li> <li>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li> </ul>
(서울시) 가이드라인 · 매뉴얼 ·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li> <li>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li> <li>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매뉴얼(공원 · 건축물)</li> <li>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li> <li>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li> <li>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li> <li>서울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li> <li>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li> </ul>

## 2.4 구성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명** ..... 3.1 국지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 **주요내용**

**추가 참고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탁수종, 고원식횡단보도  
세부기준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가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참조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는 통과교통의 수요가 적고 보행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로 선정한다. 내용출처 표기 (p262 참조)
- 보행동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폭이 좁은 (2차선 이하)도로에 적절하다. 내용출처 표기 (p262 참조)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최소화 한다. 내용출처 표기 (p262 참조)

**진입구간**

- 차량 국지도로 진입 시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출처 표기 (p262 참조)
-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횡단보도를 연석의 높이만큼 올려서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횡단보도를 만든다.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보행자 대 차량사고가 빈번한 가로나 그 밖에 고원식횡단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내용출처 표기 (p262 참조)

**바닥마감**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가 구간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해당구역 진입부에 입식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를 하고, 기존의 차도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스텝핑 등의 기법으로 도로요철 패턴으로 변화를 준다.

**세부내용 이미지화**

94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 또한, 각 세부 내용에 대하여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안내하며, 참고자료를 통해 권장, 지양, 참고로 나누어 사례를 통한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The diagram illustrates the structure of the guide across three main sections:

- I. 가로** (Road):
  - 01 적용범위
  - 02 보도
  - 03 차도** (Road Surface)
- II. 공원·광장** (Park·Plaza)
- III. 공공건축물** (Public Building)

A dotted line labeled "색인 표기" (Index Marking) connects the three main sections. A callout box labeled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Legal Criteria and Guidelines) points to the "03 차도" section. Another callout box labeled "경계부분" (Boundary Part) points to a specific area of the "03 차도" section. A callout box labeled "참고자료" (Reference Materials) points to a photograph of a paved road surface. A callout box labeled "참고" (Reference) points to a photograph of a paved plaza. A callout box labeled "지양" (Prohibited) points to a photograph of a crosswalk. A callout box labeled "권장" (Recommendation) points to a photograph of a crosswalk with red markings.

**색인 표기**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경계부분**

**참고자료**

**고원식횡단보도의 평坦한 중앙부는 차량의 앞뒤 바퀴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로 설계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색인 표기**

**적용 근거 표기**

**다양한 적용가능 사례  
'참고' 표기**

**적합하지 않은 사례  
'지양'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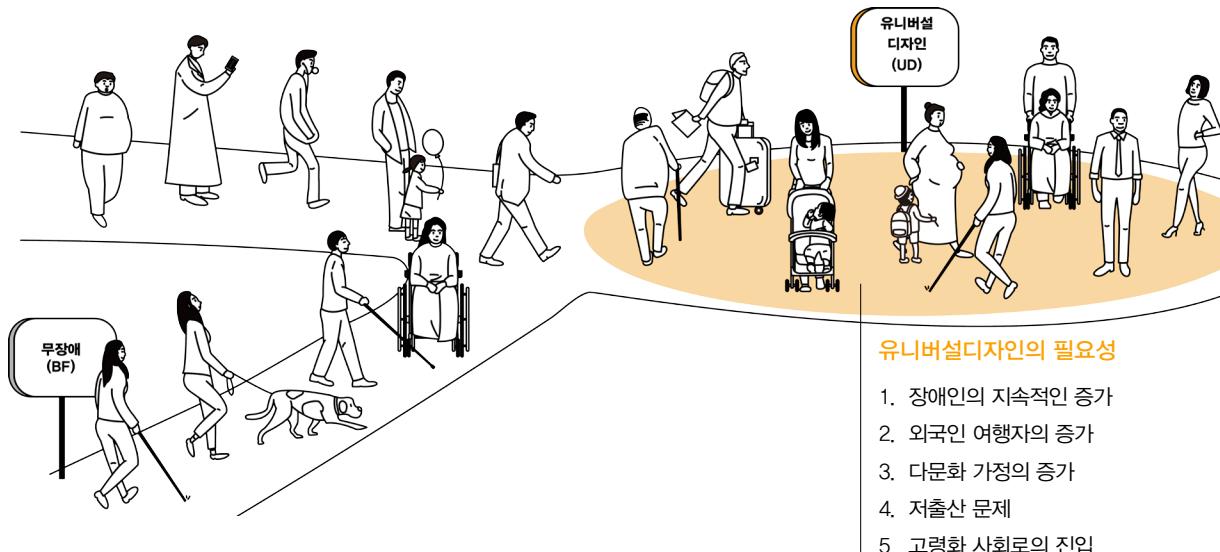
**적극 반영해야 될  
내용의 '권장' 표기**

03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 3.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는 많은 부분이 같지만 다르다.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과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또 법적기준을 넘어서는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까지 포함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디자인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두 개념 모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하면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에 따른 접근성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법적 최소한에 머물기 쉬운 무장애 환경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사용자관점의 편의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디자인적 접근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의 차이는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고민에 있다.
- 무장애는 주로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에 주목하고 있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의 행태에 따른 안전과 편의에 기반하고 있다.
-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은 법적 기준에 맞춘 기술적 해결안 이상의 사용자 참여를 통해 정서적이면서도 세심한 디자인적 해결 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구분	무장애(BF)	유니버설디자인(UD)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li> <li>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li> <li>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 · 사회적 환경 만들기</li> <li>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li> <li>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li> <li>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 설비, 정보)의 장애물 제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li> <li>건축 · 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 · 교육 · 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li> </ul>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제정)</li> <li>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 제정)</li> <li>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2010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li> <li>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2016 제정)</li> </ul>
태생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li> <li>90년대에 관련 이론이 정립되며 건축을 중심으로 Barrier-Free (무장애) 명명</li> <li>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미국의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간하여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해 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li> <li>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니버설디자인은 BF의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li> <li>1997년 North Carolina 주립대학 Ronald L. Mace가 현재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완성하고 원칙을 설정</li> <li>법적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에의 필요에서 출발</li> <li>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li> </ul>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장애(Barrier-Free)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정의하며, 물리적 공간뿐이 아닌 제품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으로 발전</li> </ul>	

## 참고자료

### 무장애(BF)

출입구 버튼



**BF**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출입구 버튼

### 유니버설디자인(UD)



**UD**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출입구 버튼  
(다양한 사용자)

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표지



**BF**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화장실 안내



**UD**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다 명확한  
안내 (디자인적 요소)

장애인 화장실과  
다목적 화장실



**BF** 법적기준을 준수한 장애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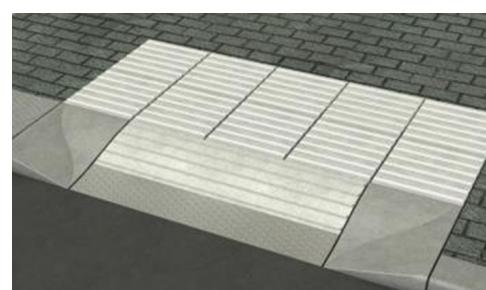


**UD** 사용성 뿐 아니라 감성적 측면까지 향상시킨  
다목적 화장실 (디자인적 요소)

보도의 턱낮춤



**BF** 일반적인 보도의 턱낮춤



**UD** 휠체어, 유모차 등의 미끄러움 방지까지  
고려한 턱낮춤 (다양한 사용자)

### 3.2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해

#### 다양성의 고려

- 사람들은 연령과 신체적 감각 및 정신적 능력의 정도가 개인마다 상이하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의 모든 과정에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기획·설계자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의 범위에서 비롯된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관련 설계 및 디자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공간 및 건축물이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계획이 되도록 디자인 과정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즉, 연령이나 신체 크기가 다르고, 또는 신체 능력 및 감각, 정신 건강, 지적 능력 등의 차이가 있는 이용자 누구라도, 특수 해결책 없이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접근·이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 환경을 확대·실현하는 것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이용자

## 신체능력의 차이

신체능력은 걷기, 균형잡기, 조작하기, 당기기, 밀기, 들기, 도달하기 등을 포함한다. 많은 활동이 여러 행위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용자가 가진 신체적 힘과 체력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보행

- 어떤 사람은 단차가 있거나 경사로에서 걷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행 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회전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목발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을 회복하거나 숨을 고르기 위해 자주 쉬어야 하기도 한다.
- 이들을 위한 디자인 고려 사항은 경사로에 안전손잡이 제공, 일정 간격마다 놓인 의자, 편리한 승하차장, 도로 횡단시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를 위한 충분한 횡단 시간이 될 수 있다.



신체적인 제약, 혹은 노면의 상태 등에 따라 보행 여건이 좌우됨

경사로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도모

교통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카드. 신호등 앞에서 카드를 대면 횡단시간을 13초까지 연장해줌

시설물 구역을 활용한 쉼터 조성

## 2)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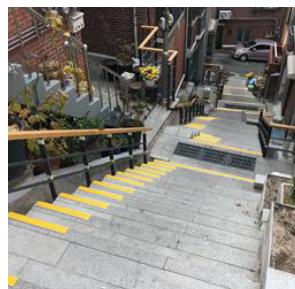
- 균형감각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보행이나 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에 영향을 받는다.
- 이들을 위한 디자인 고려 사항은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안전손잡이, 의자, 조작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발에 걸리거나 부딪혔을 때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최소화 시키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병증에 의한 균형 제한



걸려넘어짐에 의한 균형 제약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도록 도와주는 안전 손잡이



보행보조기를 활용하여 균형 도모

## 3) 조작

- 사람들 중 일부는 원손잡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손 또는 두 손이 없을 수 있다. 또는 힘의 차이나 움직임의 정교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손을 사용 하든지 한 손 또는 손이 없이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작은 주로 손을 활용한 설비 등의 작동, 이동 등을 포함한다. 조작능력, 크기와 모양, 움직임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손이 아닌 다른 신체, 손목이나 팔꿈치를 사용하거나 발 등을 사용하여 밀고 당기거나 누르는 동작을 활용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류마티즘 후유증으로 인한 조작 제약



손떨림에 의한 조작 제약



손바닥을 갖다대면 열리고 닫히는 장애인 화장실 시건 장치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발높이의 엘리베이터 버튼

#### 4) 힘과 지구력

-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사로와 계단이나 긴 이동 거리에서는 힘과 지구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한된 지구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쉴 수 있는 휴식 장소가 필수적이다.
- 또한 미는 것이 당기는 것보다 수월한 사람들이 있다. 휠체어 사용자는 여닫이 문을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동개폐문을 선호한다.



걷다 지치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조성



긴 경사로를 편하게  
오르내리도록 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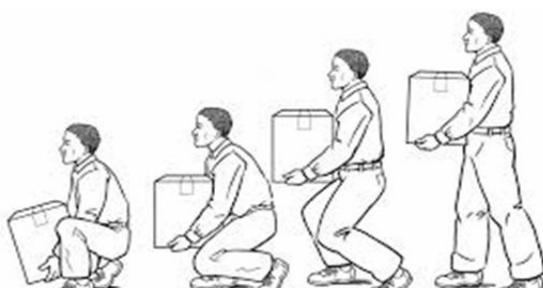
밀고 당기는 원리를 활용한  
문손잡이



휠체어 사용자의 미는 문 사용  
장면

#### 5) 리프팅

- 상하로 열리는 슬라이딩 창과 접근 게이트, 부엌 가구 등을 여닫는 활동은 최소 한의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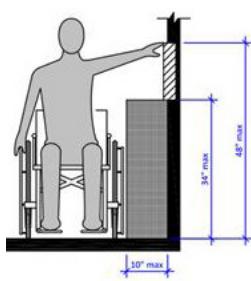
상하로 열리는 슬라이딩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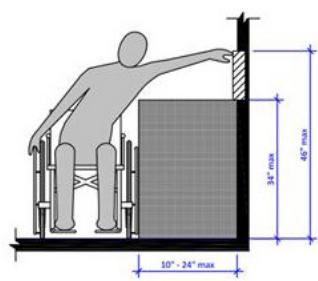
상하로 여닫는 부엌 상부장

## 6) 도달범위

- 사람들의 체격과 신체 능력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나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이동의 제한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또 도달범위는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 다르며 이를 위해 팔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체의 균형과 이동성을 함께 필요로 한다.
- '사용에 편안한 도달범위'는 빈번하고 정확한 실행이 가능하고 허리를 뻗거나 구부리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좌우방향 도달공간 범위



휠체어 사용자의 발과 무릎 공간을 고려하지 못한  
안내데스크



손씻기 위해서는 세면대 높이,  
하부공간, 수전 깊이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 감각능력의 차이

### 1) 말하기

- 문법보다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적합하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대화하는 동안 전체 의미를 찾아내는 대화 능력, 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언어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 또는 말하기 관련 질환(말하기장애)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해서는 그림이나 도구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



언어,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현상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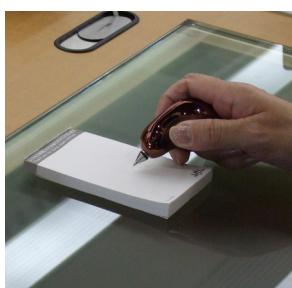
그림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보드



환자 특성에 따른 의료 및 행동규제 정보를 공유하는 픽토그램

### 2) 청각

- 소리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음이나 유전, 질병 감염, 노화 등 여러 요인으로 청력 손실이 많아지고 있다.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청력이 있더라도 소리만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聾)이라 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청력을 사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 한다.
- 소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난청자를 위한 청음이 쉬운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JAL 서포트 카운터에 마련된 메모패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비상상황을 빛으로 통보하는 장치



청각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비디오플

### 3)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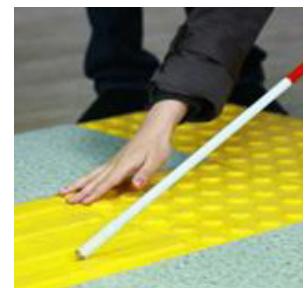
- 눈을 통해 인지하는 감각, 즉, 눈을 통해 사물의 크기와 모양, 색, 멀고 가까운 정도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각장애'는 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이 아니어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눈의 기능 장애를 말하고,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에 의한 시야 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시력(視力), 시야(視野)의 제한 정도에 따라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한다.
- 시각장애는 후천적인 사고와 질병에 의한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보다 많고 전맹 보다 약시가 더 많으므로 인지하기 쉬운 환경이 중요하다.
- 최근에는 색채와 관련한 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기 쉬운 환경이나 사인 등이 개발하고 있다.



황반변성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인지



양각문자와 점자를 동시에 사용한 층 안내판



점자와 시각장애인 지팡이 사용한 층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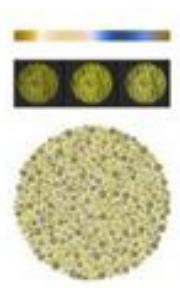
벽을 활용한 안전한 이동 유도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색채대비를 활용한 바닥마감



색약자를 고려한 네이버 지하철 지도



색약자에게 보이는 색상변화

#### 4) 촉각

- 촉각(觸覺)은 피부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의미한다.
- 신체지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느낌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체득된 인지의 한 형태이다.
- 생물학적 · 정서적 · 인지적으로 작용하고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여 행동, 사고 그리고 치유와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촉감을 통해 식별할 수 있게 한 전화기 숫자키



식품의 맛과 촉각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패키지



시간을 촉감으로 알 수 있는 브래들리 시계



만져보고 먹을 수 있는 정원 식재

#### 인지능력

인지는 정보를 이해하고 종합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보는 지식이 추상화된 것과 정리된 것, 시간인지 관련 등을 포함한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의 학습, 사물의 일반화, 음성언어와 필기 언어에 의한 자기표현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 1) 지적능력

- 지적능력은 알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힘을 의미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잡한 공간이나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속되고 명쾌하며 간단한 동선 및 알기 쉬운 공간 구성과 안내 등이 필요하다.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교차로의 멈춤을 유도하는  
바닥표시를 통해 좌우 확인 유도



명료한 남녀표시 마크 및 색상  
사용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바닥  
채색으로 통행공간 제시



지각 및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상  
피곤해지기 쉬운 사용자를  
배려하여 쉼터 마련

## 2) 기억

- 기억은 정보를 기록,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지적기능이다.
- 기억장애는 사람들의 사물을 생각해 내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일관된 정보 및 규칙을 가진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기억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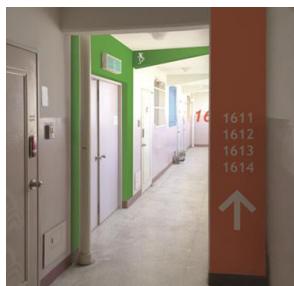
알기 쉬운 출입구 조성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운행 층 별  
다른 색상 사용



오감으로 기억을 지원하는 정원  
쉼터 조성



대피로와 층수, 호수를 알려주는  
사인 제공

## 나이와 신체 사이즈

유니버설디자인은 성장하는 아이부터 노화하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애별 변화를 포용하는 생애디자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서는 사람의 성장과 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 1) 성장하는 아이를 포용

- 아동에게는 눈높이를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또한 낮은 위치에서 인지하고 조작해야 하므로 높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어린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의 경우가 많으므로 동반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수유실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영유아 동반의 경우, 유모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아동 눈높이의 안전한 환경 제공



키가 작은 아동의 눈높이 고려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제공



유모차사용에 대한 대응 필요

### 2) 노화하는 노인을 포용

나이듦에 따른 근력저하로 이동이 느려지고 곤란해지거나 인지성 저하로 기기를 조작하는데 실수를 하는 등의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신체 기능저하로 인한 이동  
보조 기구 사용



신체변화에 따른 근력저하 및  
시야 축소



시야 및 시력 감퇴에 따른  
오작동 증가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로  
이동편의제공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 3) 다양한 신체 사이즈와 문화적 다양성

-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라고 해도 키나 몸무게 등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른 신체 사이즈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 또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신체 사이즈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언어와 알기쉬운  
픽토그램으로 언어장벽 해소



연령, 체격에 맞게 다양한 휠체어  
구비 : 나리타국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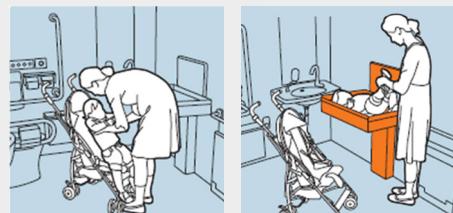
## 참고자료 행태에 대한 이해

**좋은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이용자와 행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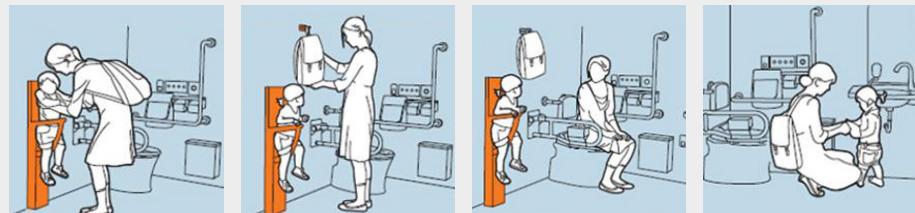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의 시작은 이용자가 공간, 기기, 서비스를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여가는데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용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의 이용자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화장실의 법적 기준의 충족을 넘어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다목적 화장실로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여러 이용자가 공공화장실을 다양한 행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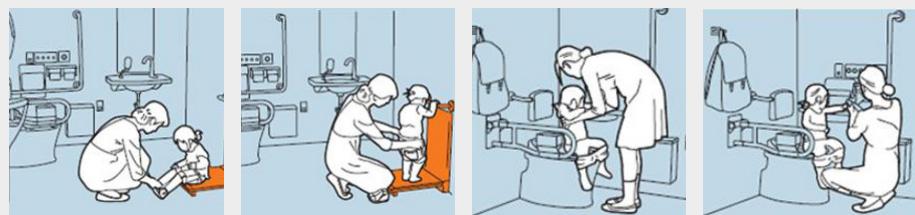
### 아동 유모차 및 기저귀 교환



### 아동동반 (부모 용변)



### 아동동반 (팬티형 기저귀)



### 지팡이 사용자 (노인)



## I. 개요

01 도입 02 가이드라인 03 이해

### 지팡이 사용자 (편마비/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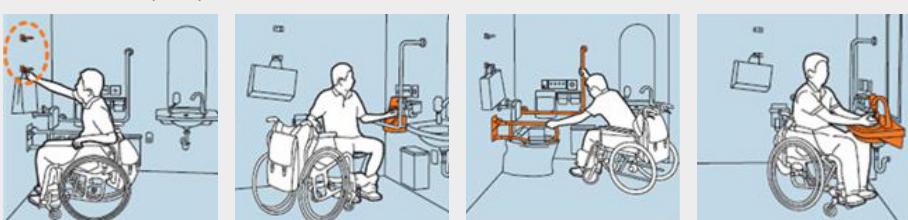
출처 : TOTO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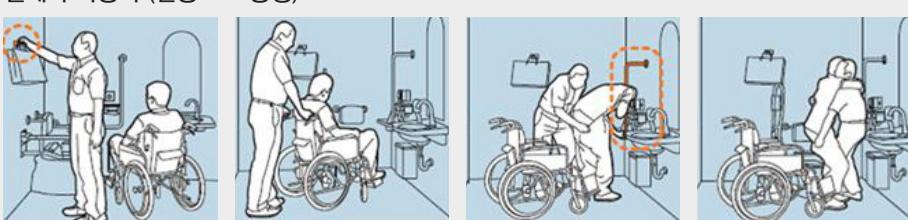
### 시각장애 (전맹)



### 휠체어 사용자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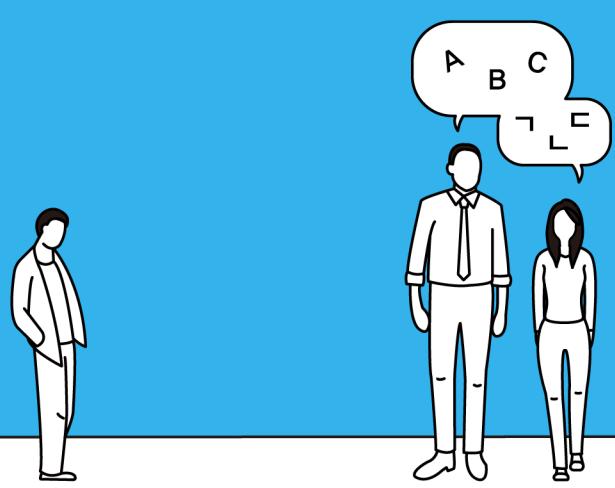


### 휠체어 사용자 (활동보조 동행)



### 휠체어 사용자 (자가 기저귀 교환)





2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2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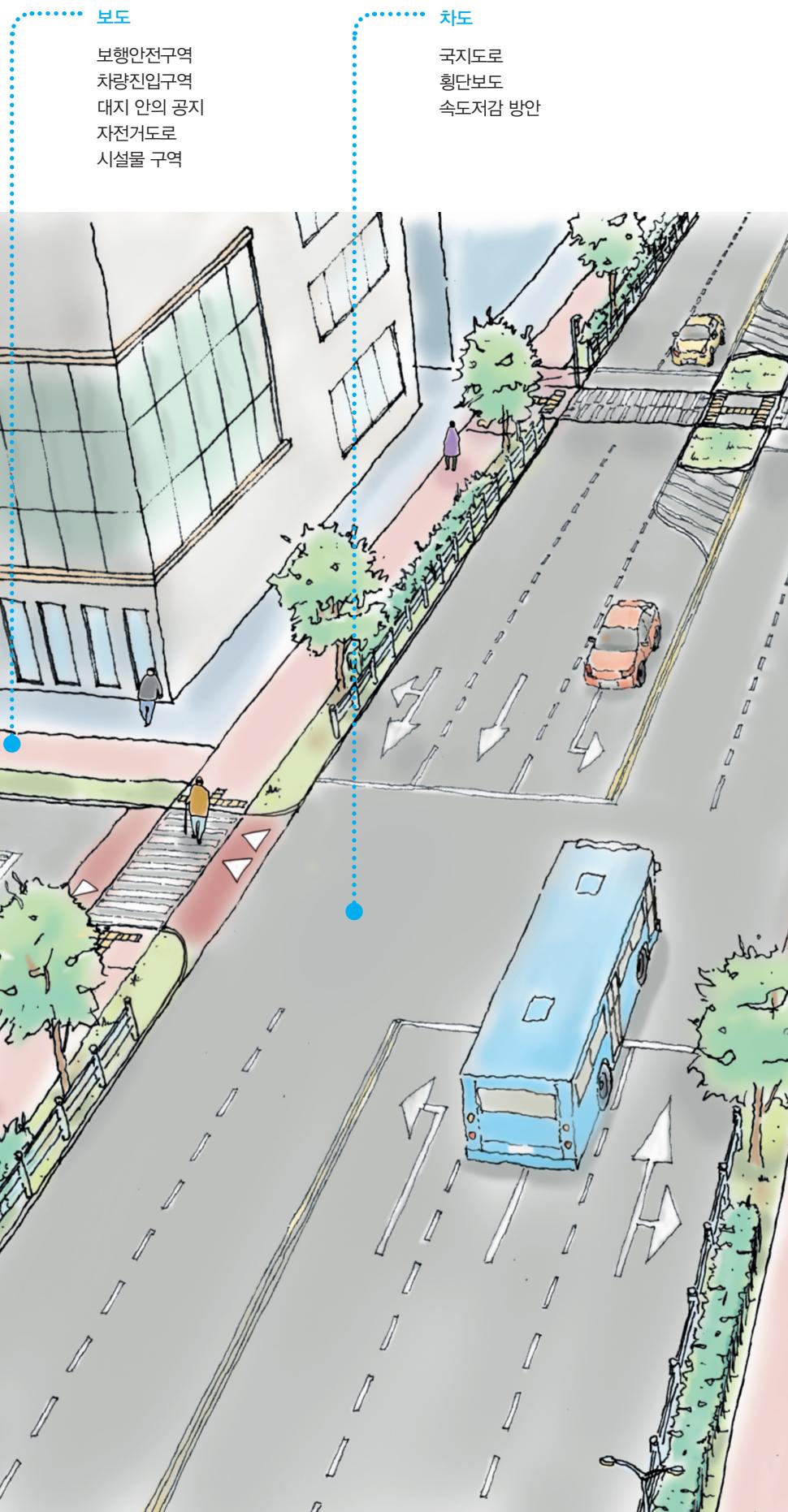
---

<b>I 가로</b>	<b>01 적용범위</b>	36
	<b>02 보도</b>	39
	2.1    보행안전구역	39
	2.2    차량진입구역	51
	2.3    대지 안의 공지	55
	2.4    자전거도로	61
	2.5    시설물 구역	73
	<b>03 차도</b>	93
	3.1    국지도로	93
	3.2    횡단보도	99
	3.3    속도저감 방안	109

---

01

## 적용범위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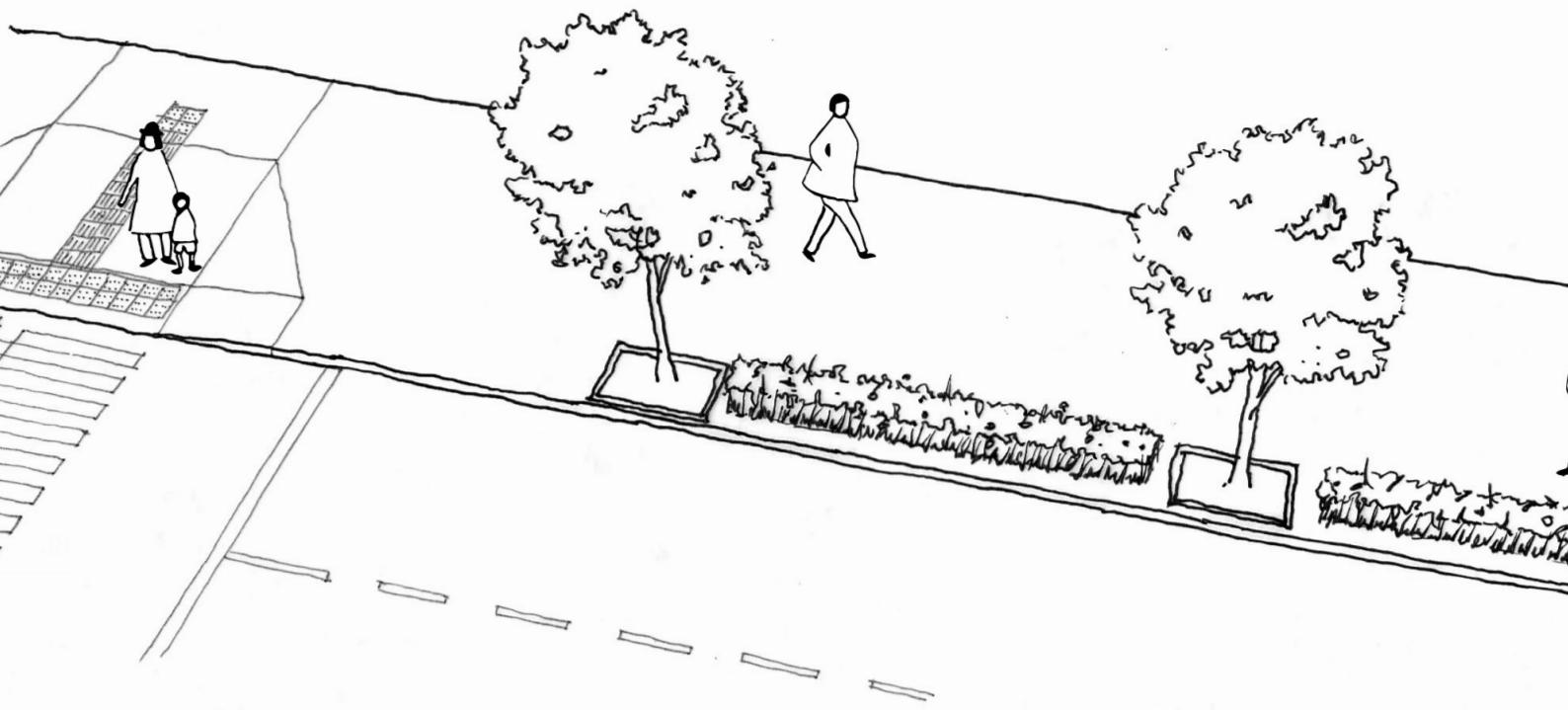
## III. 공공건축물

신규로 가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가로를 재정비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지정하는 가로는 차량 통행이 위주인 고속도로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보도 폭이나 기울기 등 설계지침을 지형상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일부 기존 도로는 예외로 하지만,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02**

## 보도

### 2.1 보행안전구역 > 기본지침

**01**

어린이, 유모차,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

**02**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의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침범 금지

**03**

보도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단차가 없고 횡단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는 연속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04**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05**

투수성 재료나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

**06**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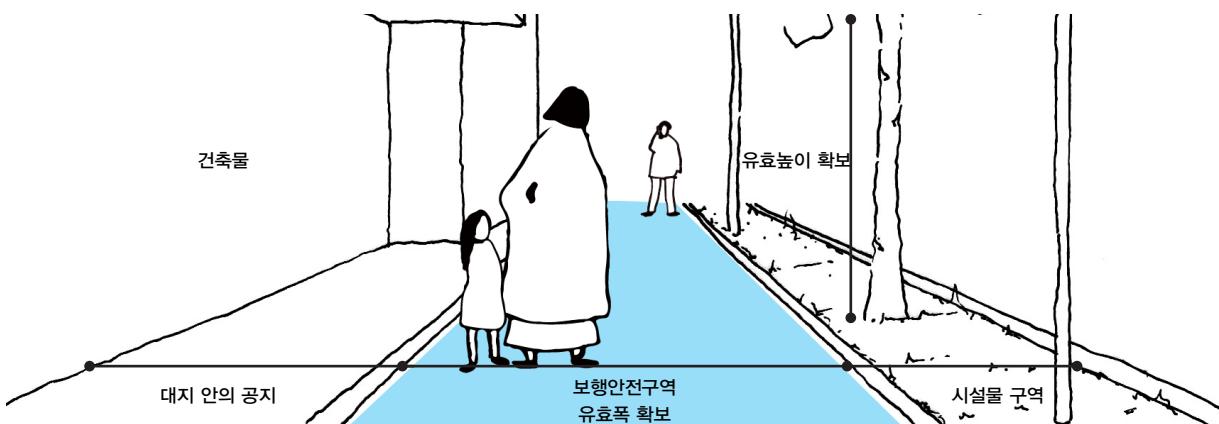
## 2.1 보행안전구역 > 보행공간

### 유효폭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정기준 유효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여행용 가방이나 짐을 운반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걷거나 어떤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도 고려한다.
- 비, 눈이 오는 상황 등의 기후조건도 고려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일반적인 보행, 교행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다.
- 유효폭은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른 통행량도 고려한다.
- 유효폭은 가로수 및 시설물을 제외하고 2.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도로
- 최소 유효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행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시설물 설치 및 식재를 계획한다.
-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1.5m 미만의 구역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가로

### 유효안전높이

- 전방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보행할 때에도 안전에 위협이 없는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유효높이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할 경우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므로 법적기준 2.1m 보다 상향된 유효높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이동
- 유효높이는 보행안전구역 뿐만이 아닌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설치구역) 까지 적용한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유효폭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3m 이상, 집산도로 2,25 m 이상 확보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교행구역 50m 이내 폭 1.5m x 1.5m 이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유효폭 2.0m 이상 확보, 부득이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 1.5m 이상 확보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높이 2.1m의 유효높이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유효안전높이

### 참고자료



#### 지양

충분한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재 및 가로 시설물 설치로 보행장애 발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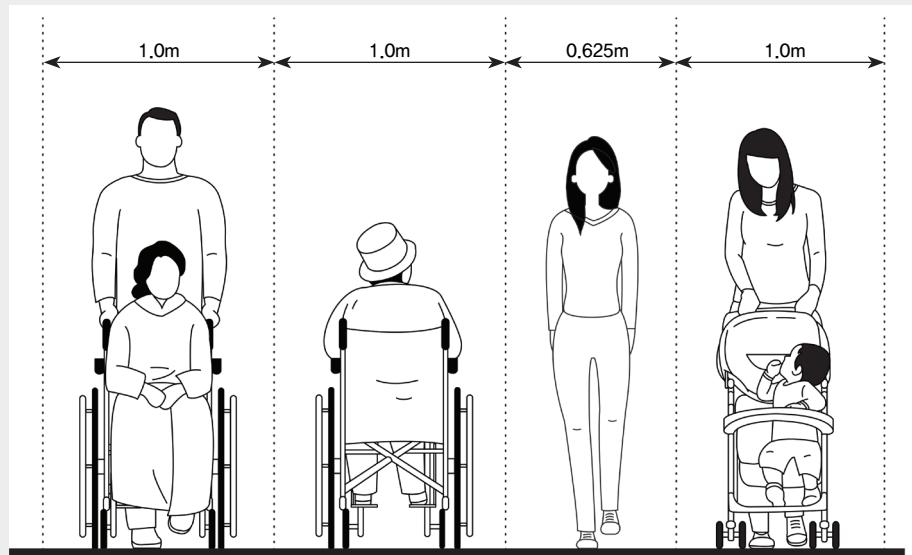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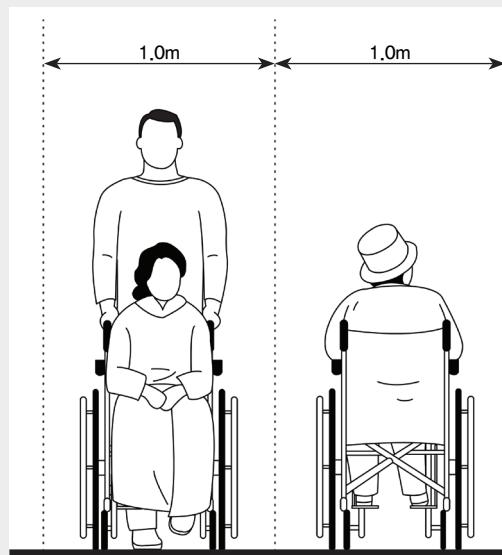
다양한 이용자들이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유효폭 및 유효높이 확보

### 참고자료

보행자별 통행 유효폭



보행안전구역 3.6m 설정시 동시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들



보행안전구역 2.0m 설정시 동시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들

## 참고자료

가로 유형별 유효폭

출처 :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 다양한 보행자 유형



부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 유모차를 사용하는 여성



## 휠체어 이용자

## 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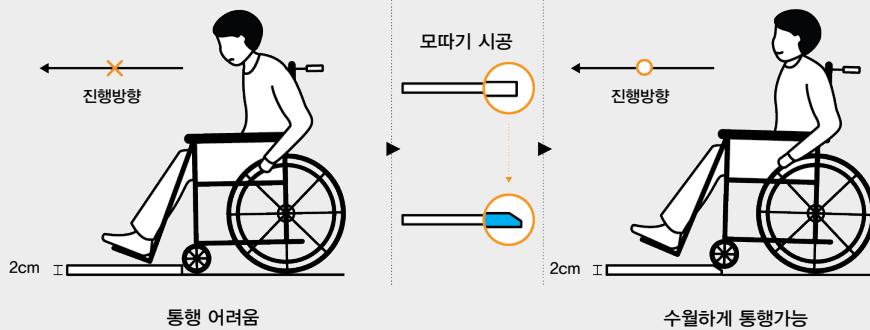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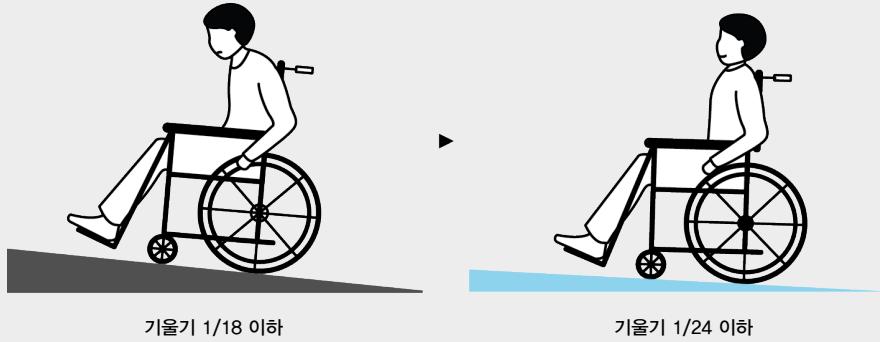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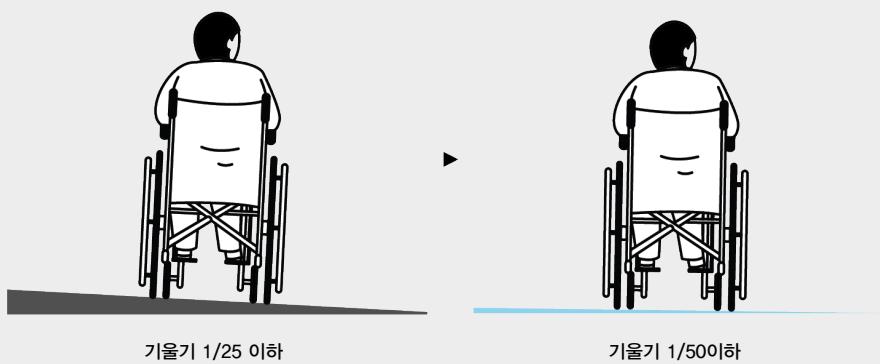
-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마감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방향 모따기 가공으로 훨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기울기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 · 횡단 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한다.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 높이와 보행안전구역의 높이에서 경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영역에서 경사를 보완한다.
- 진행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지물상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한다. 도로
- 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4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1/18 이하는 50m마다 1/12은 30m마다 1.5m x 1.5m의 수평 휴식침을 설치한다. BF
- 경사로 전체에 대한 구배 안내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BF
- 경사가 연속되는 지역의 평坦한 구간을 활용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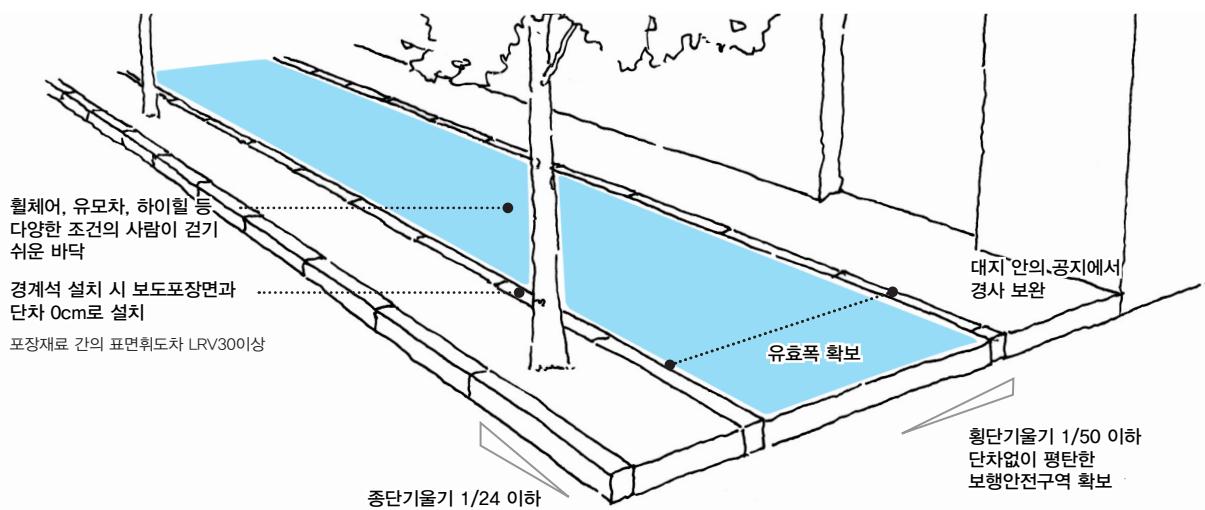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기울기**

- 횡단기울기 1/50 이하,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이하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안전구역의 좌우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한 경우 혹은 배수 등을 위한 경우에는 1/50 이하 유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최우수 BF인증기준 : 종단기울기 1/24 이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폭 0.3m 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 띠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유도방식****참고자료****단차 모따기 시공****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

## 마감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바닥은 미끄럼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설치한다.
- 휠체어나 유모차,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바닥 재의 종류 및 시공방법을 선택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 맨홀뚜껑 등의 시설물은 바닥 표면과 평탄하게 연속되도록 마감한다.
- 재료의 명도 및 질감 등을 활용하여 보행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저시력인의 시·지각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을 지양한다.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채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가진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야간 보행 시의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색상, 재질 등을 선택한다.
-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연석과 경계석은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미끄럼사고를 예방한다.
- 저시력인의 시지각적 인지를 위한 포장 재료간의 표면회도는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을 권장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마감

- BPN 미끄럼 저항기준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 평지 기울기 1/50 이하 : 40BPN 이상
  - 완경사 기울기 1/50~1/10 : 45BPN 이상
  - 급경사 기울기 1/10 이상 : 50BPN 이상

대비

- 표면휘도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  
(Housing for People with Sight Loss: A Thomas Pocklington Trust Design Guide)

**참고자료**

마감

**지양**

보도의 파손 및 융기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 관리가 중요

**권장**

이음새 틈이 없고 규격이 일정한 저채도의 투수성 미끄럼 방지 보도

**권장**

평탄하면서도 패턴을 활용하여 인근 대지내 상황을 알려주는 마감의 보도

**점자블록****지양**

연속되지 못하며 정확하지 않은 설치로 인해 심각한 위험 초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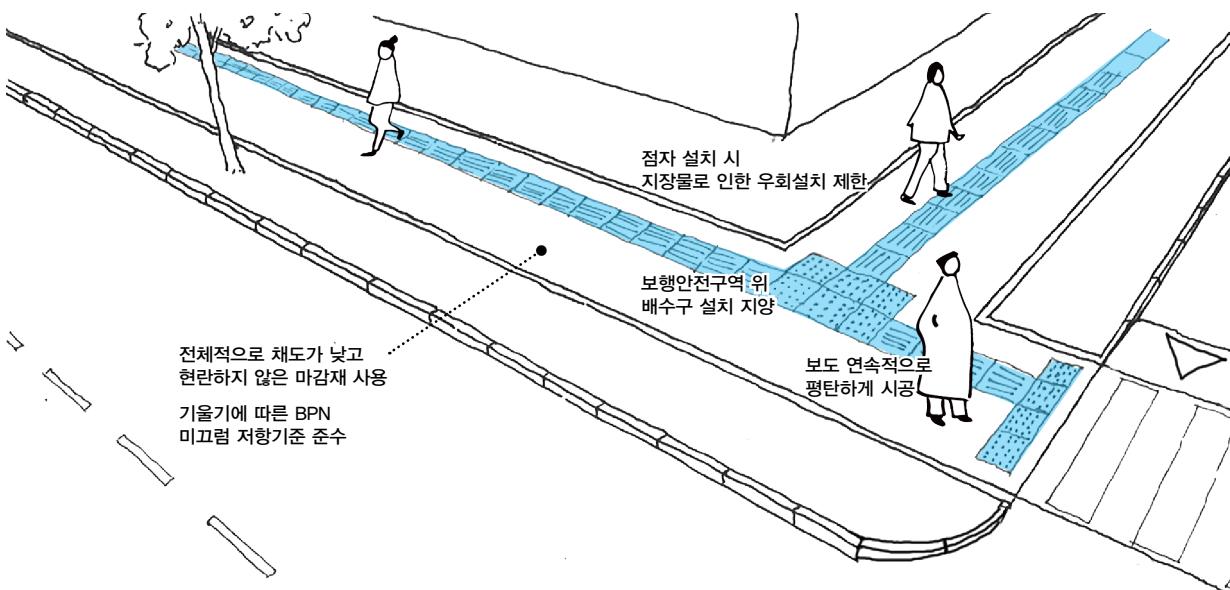
지역 특유의 석재를 활용하여 명도차로 유도하는 유도 : 노르웨이 사례

## 배수

- 보행안전구역 내 배수구 설치는 지양한다.
- 배수구 덮개는 보도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이음새 간격을 좁혀 통행이 없도록 한다.
- 덮개의 격자구멍이나 틈새는 1cm 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하고 보행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도로**
- 보행자의 동선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배수구는 불순물이 걸려 배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 간격을 여유 있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 및 다른 보행자와의 동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행안전구역 대지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하여 설치한다. **도로** **이동**
-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1을 따른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배수

-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1cm 이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점자블록

- 대지내 공지쪽 기준선에서 0.6m 이격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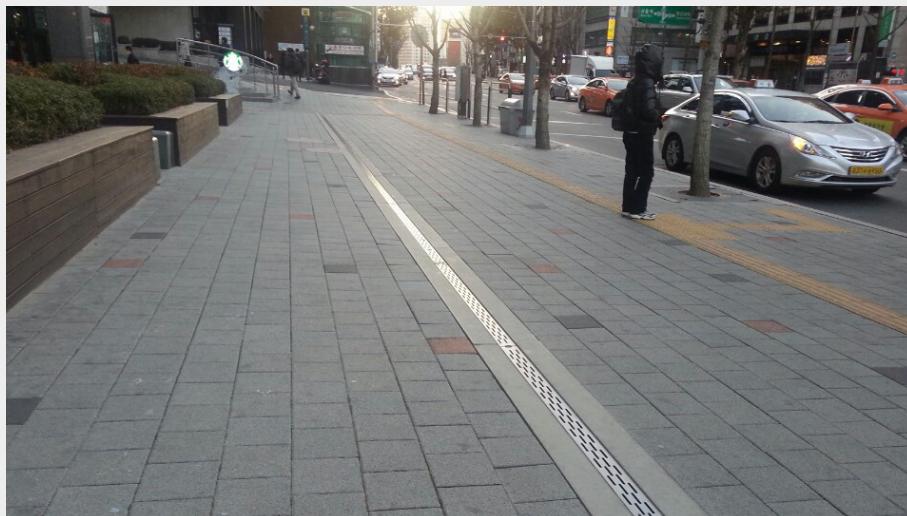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참고자료



### 참고

대지경계선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우천 시 대지내 공간에서 보도로 빗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지.  
배수구 위에 쌓이는 이물질 등은 주기적 관리가 필요.



## 참고자료

### 지형에 의한 연속경사지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

경사지 전 구간의 경사도와 인근의 이용기능한 우회로 및  
공공교통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정보를 연속으로 제공한다.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경사지의 주거지역에는 사행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경사면 이송시스템 등의 도입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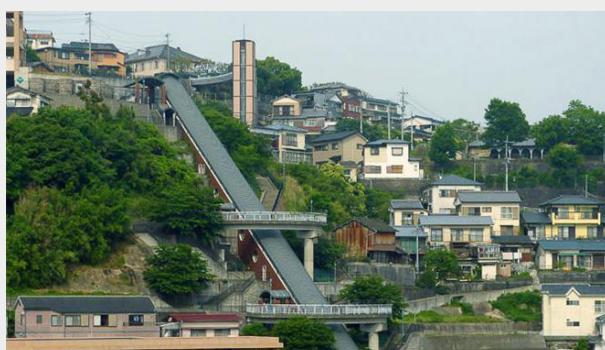
**참고** 경사가 지속되는 경사길에는 서로 도와주는 취지의  
사인 설치

**참고** 경사로를 따라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호



**참고** 이어지는 경사로 참에 휴게시설 설치

**참고** 경사지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참고** 경사지에 설치된 사행 엘리베이터



**참고** 경사지에 설치된 현수형 경사면 이송시스템

## 2.2 차량진입구역 > 기본지침

### 01

보행자와 상충되는 차량진입구역은 보행안전구역이 진행방향으로 평탄하게 연속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영역 확보

### 02

공공보도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자의 혼란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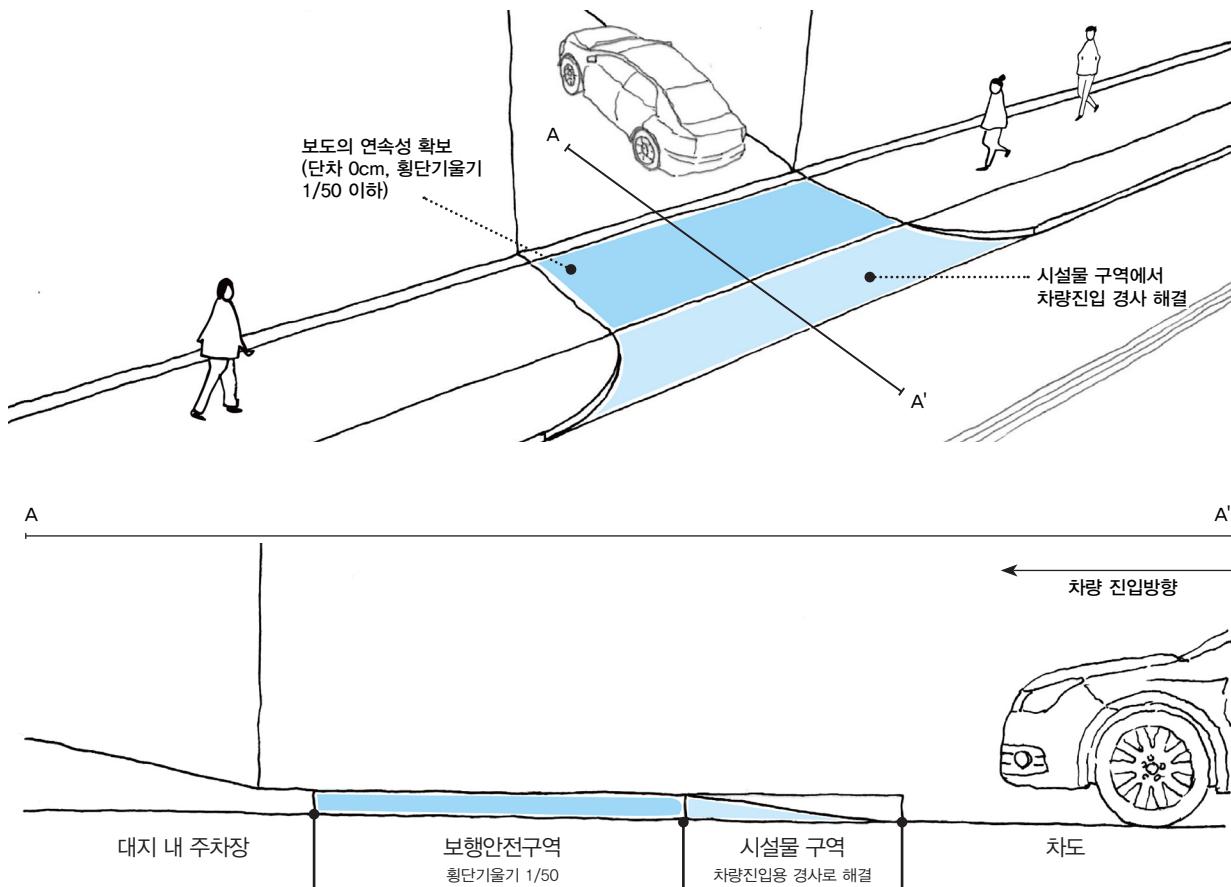
### 03

보행자를 위해 보도는 설치 높이를 유지하는 고원식횡단보도나 보도 턱낮춤 등의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최소한의 보행안전구역을 안전하게 유지

## 2.2 차량진입구역 > 대지내 주차장 진입구역

### 설치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은 보행자의 진행방향으로 단절없이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진행방향의 횡단경사는 1/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적어도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이동 가로]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재료 · 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가로]
- 주차장 진입구간이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설치지침

- 간선도로의 보도에는 가급적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진출입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차량은 이면가로를 통해 진출입하도록 설치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 참고자료



#### 지양

차량 진출입을 위한 경사만 고려되어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과 평탄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



#### 권장

시설물 구역과 대지내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경사를 해결하여 보행안전구역은 완만하게 설치



#### 권장

시설물 구역과 대지내 주차장 진출입구로 인한 경사를 해결하여 보행안전구역의 평탄성 유지

## 참고자료

### 보행공간과 차량진입구역 및 시설물 구역의 경계부 단차 해소 사례



#### 참고

보도의 지하철 환기구를  
평탄하게 마감



#### 권장

차도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보도를 평탄하게 마감



#### 권장

출입문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트랜치를 평탄하게 마감

## 2.3 대지 안의 공지 > 기본지침

### 01

연접한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

### 02

건축주 자의로 건축선 후퇴시에도 연접한 보행안전구역과 연속성 유지

### 03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보행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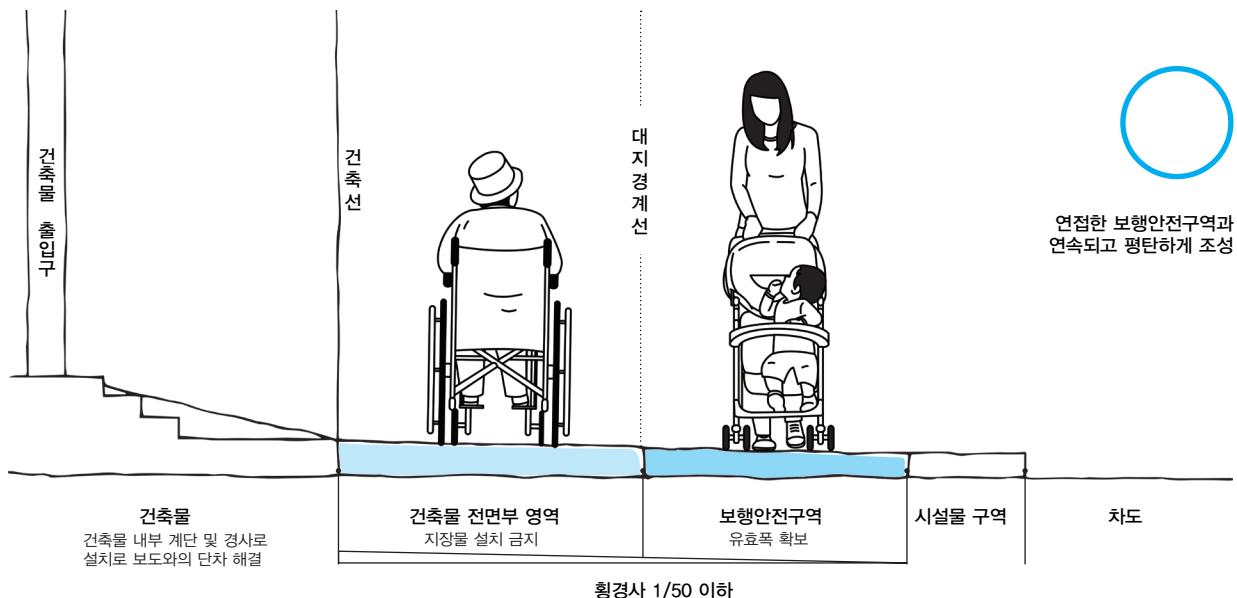
공개공지는 인접 보도와 단차 없는 수평형태로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조성

## 2.3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물 전면부 영역

###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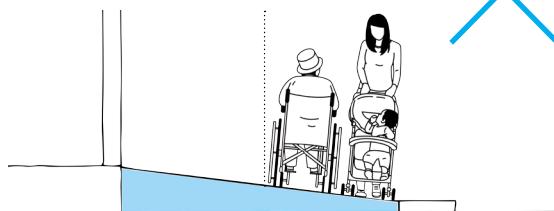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전면부 영역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pp.94~95 참조

- 보행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연접한 보행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한다.
- 건축주의 자의로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보행 편의를 위해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 완만한 경사로 조성을 위해 보도를 침범하는 조성방법은 불허한다.
- 연접한 보행안전구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화단 등 지장물의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다. 도시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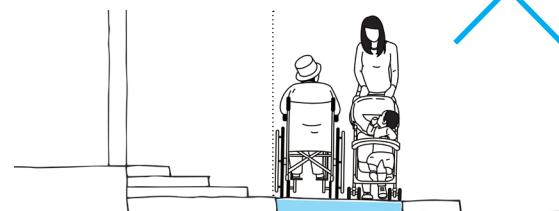


횡경사 1/50 이하

단차 해결을 위해  
조성된 급격한 횡경사



단차 해결을 위해  
조성된 계단 등의 지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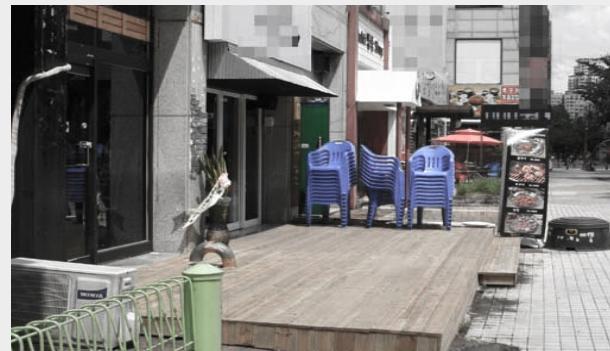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설치기준**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격 (건축법)
- 미관지구 내 전면부 영역 건축선 후퇴거리는 3m이며, 해당 구 조례를 참조
-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 담장 · 계단 · 주차장 · 화단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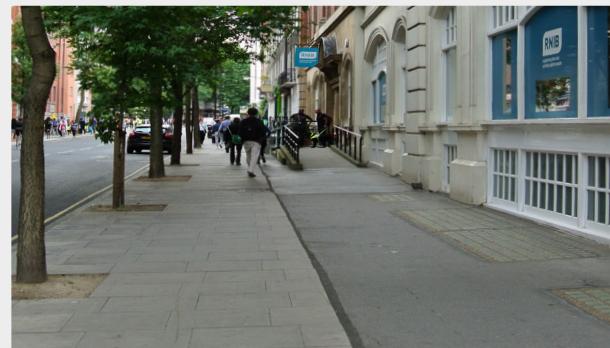
**권장** 보행안전구역 확보 및 건축물의 입구를 후퇴시켜 출입단차 해소



**지양** 건축물 전면부 영역에 데크 설치로 보도와의 단차 발생



**권장** 보행안전구역 확보 및 건축물의 입구를 후퇴시켜 출입단차 해소



**권장** 건축물 전면부 영역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도의 평탄성을 유지

## 2.3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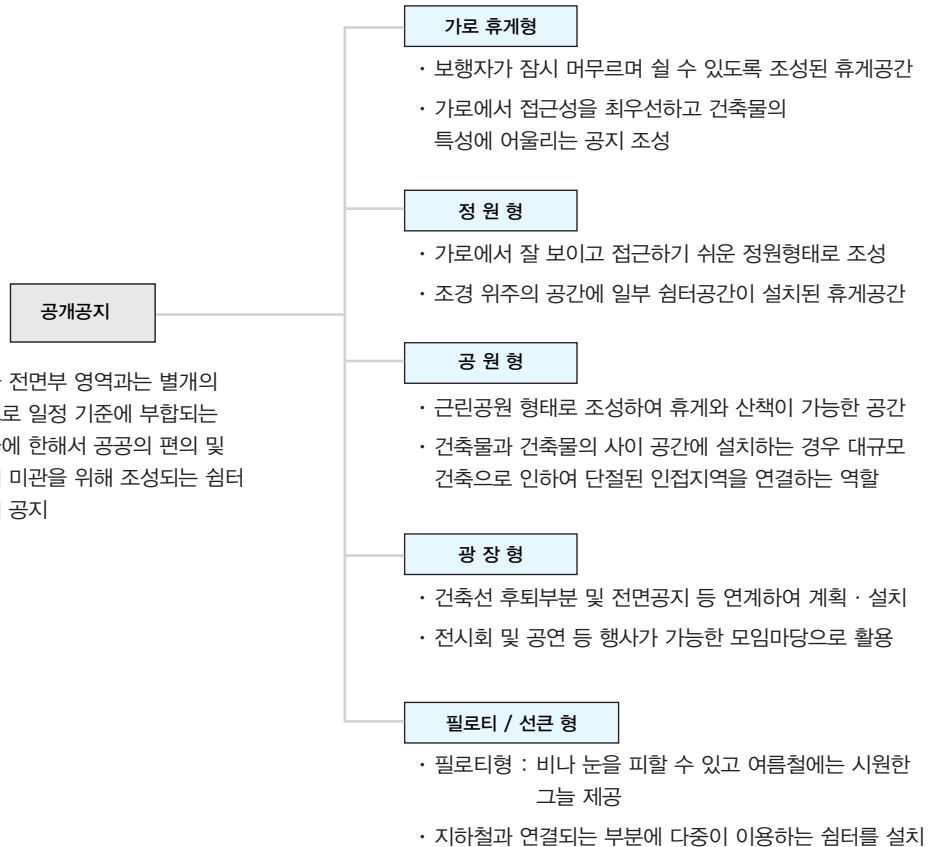
### 설치

자세한 사항은  
공개공지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p.91 ~ 93 참조

- 공개공지는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행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가로]
- 지속 관리하여 각종 장애물로 인한 보행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도와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
- 주요 보행안전구역에 면하는 소공원 및 소광장 형태로 설치하되, 다른 인접 공공 공간이나 타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도시]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행동선 유지와 교통약자(휠체어 등)의 접근을 편리하게 한다.
- 주차장으로의 전용을 금지한다.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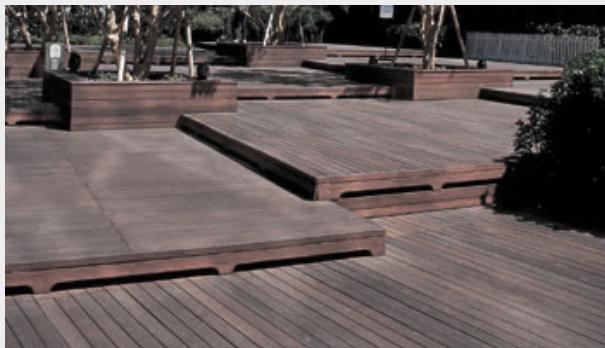
### 유형

자세한 사항은 공개공지  
유형별 세부기준: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참조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치를 별도로 정하여 설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조경 · 벤치 · 파고라 · 시계탑 · 분수 · 야외무대 · 소규모 공중화장실 (33제곱 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참고자료**

**지양**      공개공지 내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단차 조성



**지양**      불법 가판 및 상품 진열로 인한 통행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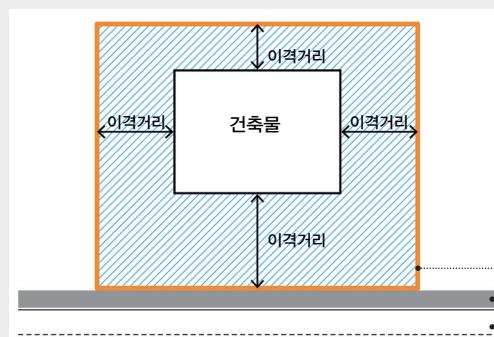
**권장**      영역성을 확보하며 보행접근로는 단차없는 수평형태로 조성하여 사용자의 쾌적한 이용이 가능



**권장**      친수공간 및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쾌적한 쉼터 제공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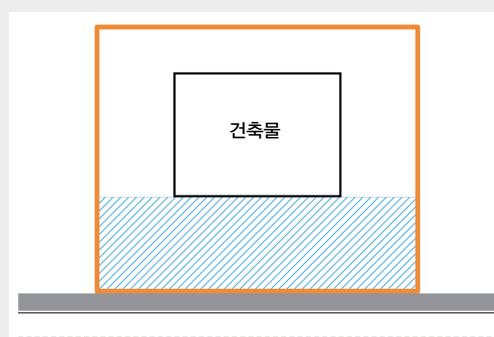
대지 안의 공지



-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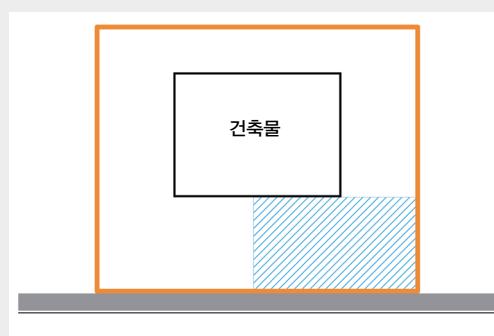
대지경계선  
보도  
차도

건축물 전면부 영역



-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공간을 의미

공개공지



- 『건축법 제 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6조』 기준에 해당되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대지 안의 공지 중 일정 부분 쉼터 형태로 조성하는 공간을 의미

건축물 전면부 영역 범위



## 2.4 자전거도로 > 기본지침

0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 및 이용 특성, 지역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02

자전거도로는 설치되는 위치별로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03

자전거도로는 보행안전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높이형의 설치를 우선 권장

0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하며, 특히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공간에 비해 보행량이 많을 경우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05

자전거도로는 지역 간의 연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06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표충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충되는 구간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으로 통일

07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 매뉴얼' 준수

## 2.4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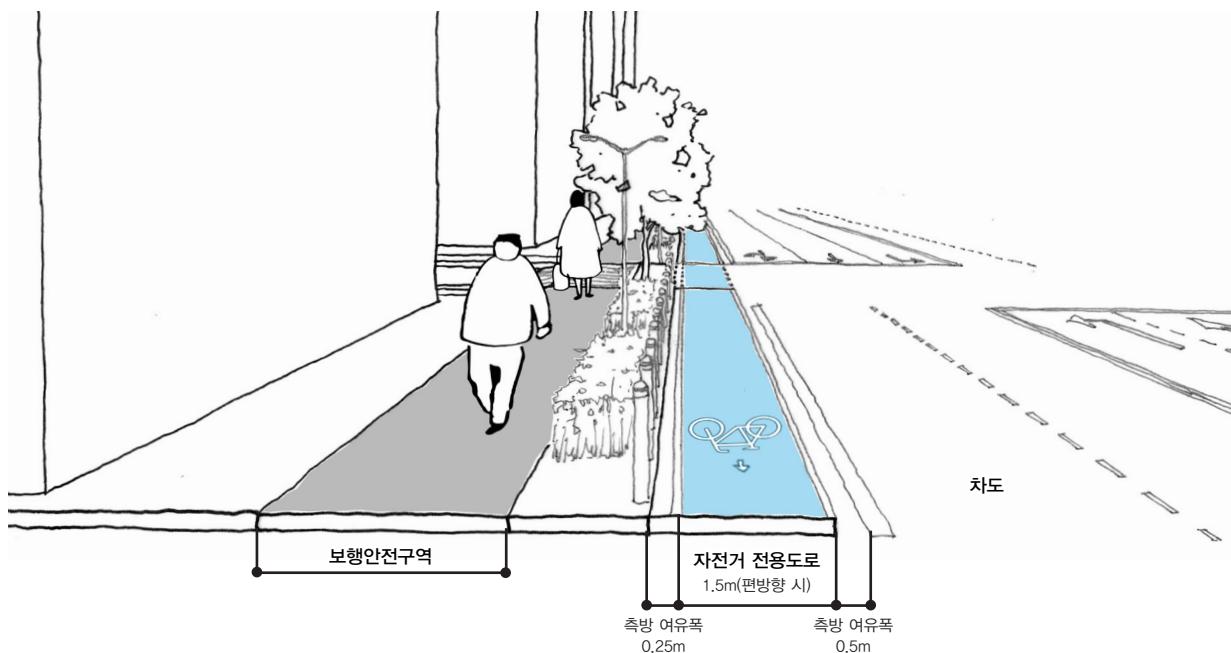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도로 설치 세부기준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3장  
자전거도로 참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보행자안전구역 및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구분한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높이형'을 우선 권장한다.
- 보도높이형은 보도 또는 차도의 일부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보도와 같은 높이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 보도에 식수대, 화단, 펜스 등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야간 시인성 저하 등 필요 시 차도 바깥쪽 차선에 시인성을 확보를 위하여 표지 병을 설치할 수 있다.
- 독립형과 차도높이형의 설치는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을 따른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설치지침**

- 자전거도로 유효폭 1.5m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편측 최소 0.25m의 측방여유폭 확보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분리공간 차량속도 60km/h 이하 0.5m(복선) 적용, 60km/h 초과 1.0m(복선) 적용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고자료****지양**

보도와 같은 바닥높이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 하였으나  
보도폭을 충분히 확보 못한  
사례

**권장**

차도 및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분리된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 2.4 자전거도로 > 자전거 · 보행자 겸용 도로

### 분리형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전체적 공간은 겸용하되,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형태이다.
- 자전거도로 설치 후 보행 유효폭을 2m이상 확보 가능할 때 설치한다. 자전거
- 보도부에 설치하고,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하천변 등 주변여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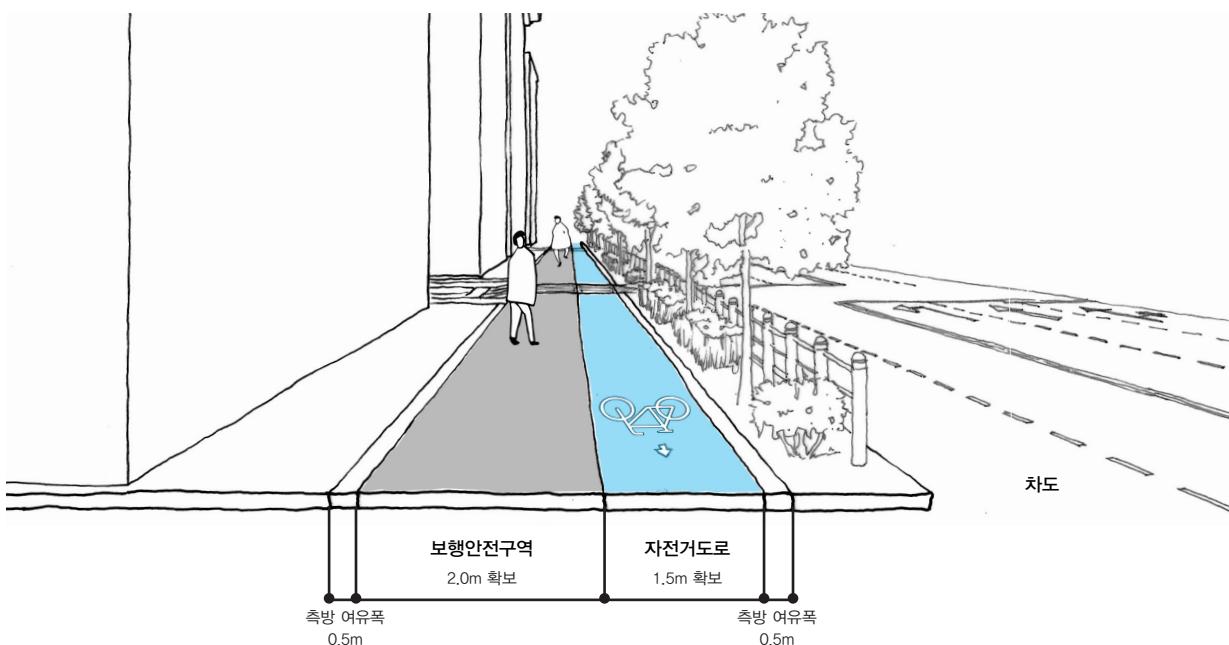


겸용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비분리형

-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 시설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보도를 의미하며, 보행 유효폭 3m이상을 확보한 경우 설치한다. 자전거
-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분리형과

비분리형

- 자전거도로 유효폭 1.5m 이상,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편측 최소 0.25m의 측방여유폭 확보  
(서울형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참고자료



#### 지양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별도 노면 표시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보행로  
3m 유효폭도 미확보



#### 지양

자전거도로로 인하여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성 단절,  
자전거도로는 시설물 구역  
측에 설치 필요



#### 권장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차도는 물론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확보

## 2.4 자전거도로 > 상충구간

### 설치

- 교차 및 상충구간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과의 상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교차 및 상충구간에서 통행방향, 자전거도로의 구조, 안전표시 등은 일반 가로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하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교차로 통과 방안을 마련한다.
- 자전거 통행안전을 위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 포장 적용대상 범위는 자전거와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이 발생하고 사고위험 요인이 있는 구간(상충구간 포함)으로 전후방 10m(총 20m)를 암적색으로 포장한다. 여전에 따라 자전거횡단도 및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

### 입체교차시설

- 입체교차시설은 자전거 경사로와 자전거 연결로로 구분할 수 있다.
- 자전거 교통량, 보행자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한다.
- 지하철, 육교,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는 구간, 지점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계단 양측이나 중앙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한다.
- 자전거 연결로는 이용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 주행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시 효율적이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포장**

- 사고위험 요인이 있는 구간 (상충구간 포함) 으로 전후방 10m(총 20m)를 암적색으로 포장한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고자료**

**지양** 보도와의 단차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에 암적색 포장의 자전거의 횡단로 마련



**권장** 내리막길 끝의 횡단보도 위치를 알려주는 자전거도로의 암적색 포장



**참고** 자전거와 차량이 만나는 지점의 속도 저감 및 차량 진입 방지를 안내 : 네덜란드



**참고** 횡단보도 주변을 알려주는 자전거 노면포장: 스페인 사례



**권장** 자전거의 안전한 횡단을 위한 완만한 경사형의 육교



**권장** 계단옆에 마련된 자전거 경사로

## 2.4 자전거도로 > 안전시설

### 설치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에는 난간, 화단, 야간안전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보도 턱낮춤 등이 있다.
- 안전시설은 자전거도로 상에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그 주변의 연결 도로지역 상에 설치한다.

### 난간

-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전거 이용자가 전도될 시에 난간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를 감안하며 최상단 횡단보의 경우 이용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00mm, 1경간의 길이는 1500~ 2000mm의 범위에서 디자인 한다. 자전거

### 진입방지시설

- 볼라드는 자전거도로 시점부, 종점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볼라드는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볼라드는 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 개수를 최소화한다.

### 야간안전시설

- 자전거 이용자와의 안전표지 등의 시선 유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특별히 야간에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에 설치한다.
- 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시선유도시설

-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함으로써 야간, 악천후 시에 차량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 시선유도시설에는 표지병과 시선유도봉 등이 있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난간높이**

- 난간의 높이는 1,200mm, 1경간의 길이는 1500~ 2000mm의 범위에서 디자인한다.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고자료**

**권장** 안전한 주행을 위해 난간 및 화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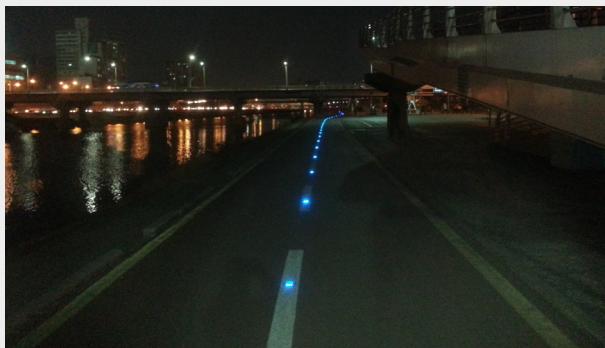
**참고** 잡고 멈춰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난간 : 덴마크



**권장** 안전확보를 위해 화단으로 분리하고 적절한 안내 제공



**권장** 자전거도로 내 자량 진입을 방지하는 블라드 및 안내 설치



**권장** 야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바닥표시병 설치



**참고** 횡단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팔호형의 조명 설치

## 2.4 자전거도로 > 이용편의시설

### 설치

-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차시설, 수리센터, 화장실, 대여소, 공기 주입기, 휴게소, 벤치, 편의점,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하여 말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야간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이나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주차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보관을 위한 시설물로 자전거의 도난예방을 위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은 차도 상 설치가 일반적이나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은 간단하고 용이하게 설치하며 보행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시 이용 안내문, 위치 안내도,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한다.

### 수리시설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시 이용수요, 유지관리비용, 주변 자전거 수리업체 유무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장소는 무인수리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주입기나 이용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참고자료



**권장**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가로변 전용주차장 확보



**권장**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가로변 전용주차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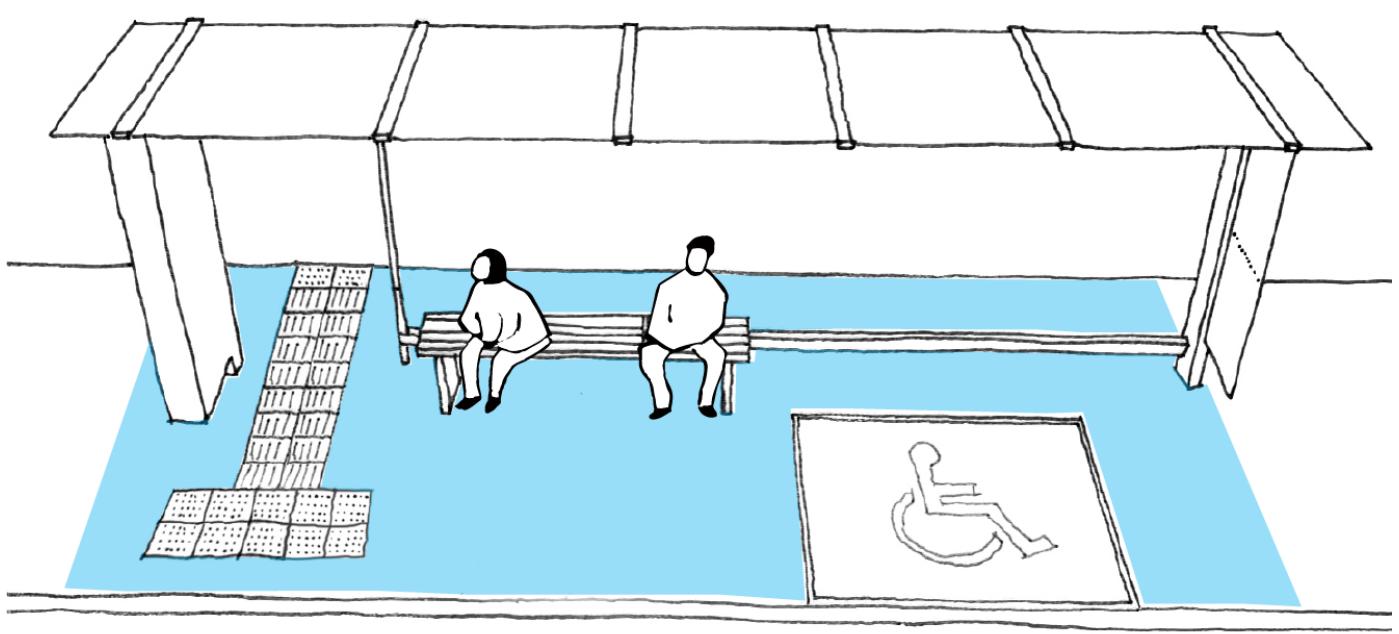
**권장**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지하 자전거 주차장 연결  
통로의 자전거 에스컬레이터 : 일본



**권장**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장의 확보



**권장**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한 공기 주입기 설치



## 2.5 시설물 구역 › 기본지침

### 01

시설물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구역의 의미

### 02

시설물은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배치하거나, 이설 및 지중화 등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에 의한 가로 점유 최소화

### 0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위협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이설하는 등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아동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눈높이가 낮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및 녹지대 조성

### 04

보행안전구역을 침범하거나 보행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시설물은 최대한 철거하거나 최소화 · 통합해 시설물 구역 내에 설치하여 시설물 영역 외에 시설물 설치 금지

### 05

보도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의 폭은 보행안전구역을 우선 확보한 후 설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은 보도녹지대 내에 배치

### 06

안전성과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도시열섬효과를 방지하고 우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시설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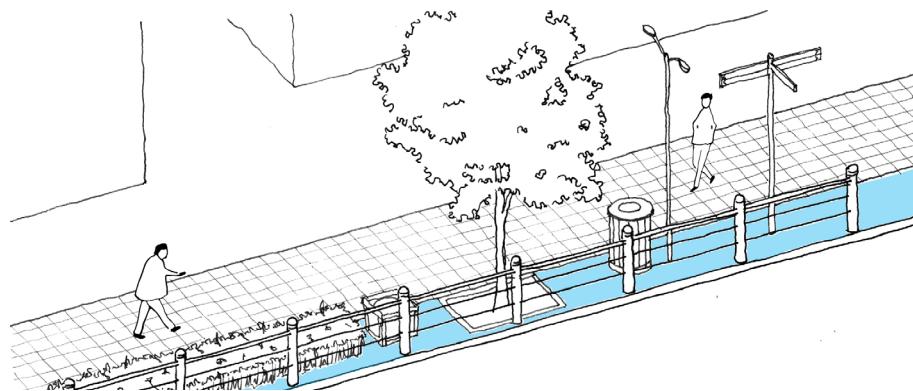
## 2.5 시설물 구역 > 보도 폭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

### 보도 폭 2.0m 이상

- 통행영역을 침범하는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는 자제한다. 도시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의 보행안전구역상 전면 노출을 지양하며, 보도녹지대, 자투리 공간 등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시
- 장시간 보행이 힘든 고령자를 위하여 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보도 폭 2.0m 이상

상상조형물 및 가로가판대 외  
시설물 설치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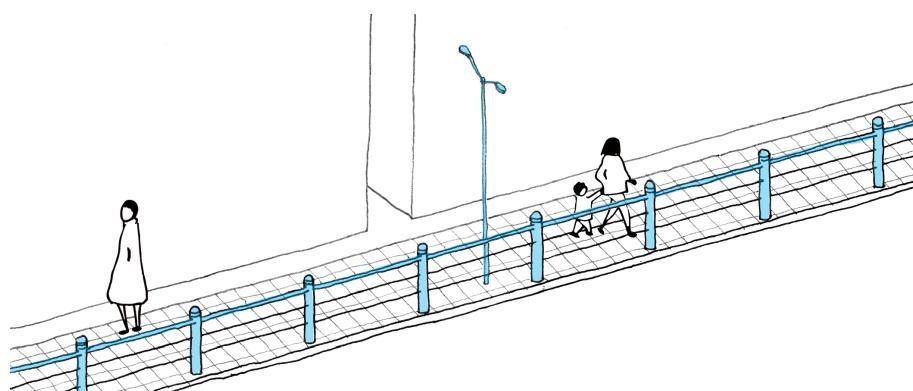


### 보도 폭 2.0m 이하

-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내에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시
- 필요 시설물은 인접한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완충녹지, 옹벽 등과 통합하여 보행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도시
- 불필요한 교통섬의 보도 편입을 통한 보행 영역 확보를 권장한다. 도시

### 보도 폭 2.0m 이하

가로등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외 설치 제한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참고자료



#### 지양

시설물 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보행성을 악화시키는 시설물



#### 지양

보도 폭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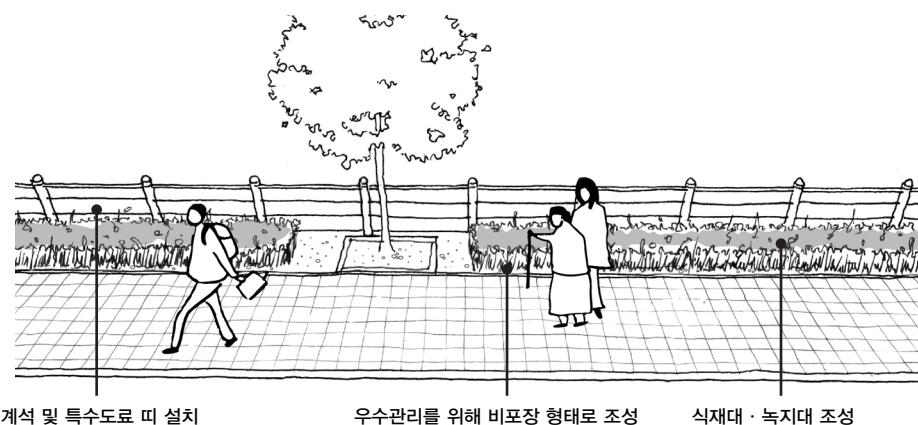
보행안전구역 확보 후 친환경 마감의 시설물 구역 설치

## 2.5 시설물 구역 > 보도 폭에 따른 포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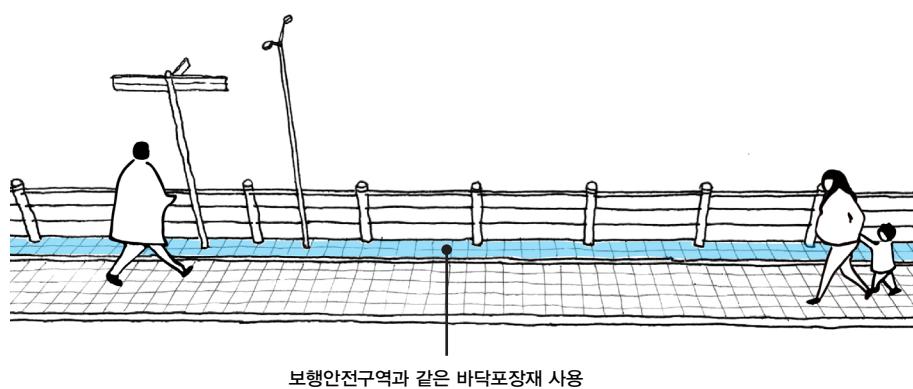
### 포장

- 시설물 구역은 보행안전구역과 밝기 및 질감이 대비되도록 하며, 투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도시**
- 시설물 구역이 경계석으로 구분되거나, 바닥포장재의 색상이나 특수도료로 칠한 띠 등으로 보행안전구역과 구분되도록 마감한다. **BF**
- 보행유효폭 2.0m 이상이 확보되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은 식재대·녹지대로 활용하고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포장하지 않는다. 단 벤치 등 휴식공간을 설치할 경우 부분적으로 포장한다.
- 시설물 구역은 식재대·녹지대 등으로 활용하여 보도의 미관 증진 및 보행자의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BF 도로**
- 전체 보도폭에서 시설물 구역으로 인해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2.0m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 구역의 바닥 포장을 보행안전구역과 같은 재질로 마감하여 유사시 보행자가 시설물 구역을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시설물 구역 조성  
가능 구역



시설물 구역 조성  
불가 구역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보도폭별  
공공시설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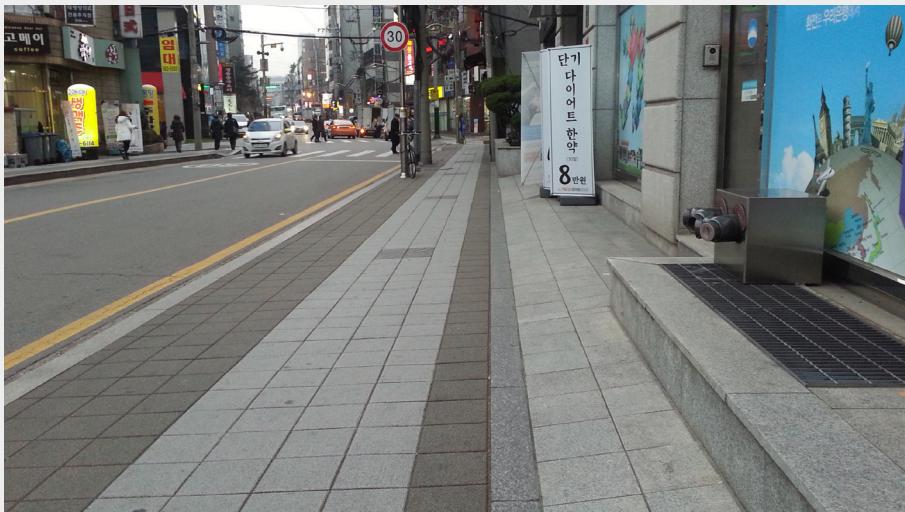
- 보도 폭 2m 이하는 성인 2명의 보행이 가능할 정도의 유효 보도폭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배치한다.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참고자료



#### 권장

시설물 구역 녹지대 조성  
및 비포장으로 우수관리를  
도모하고 영역성 확보



#### 권장

보도 폭이 좁은 경우  
불필요한 경계표시를 지양  
하고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와 함께 보행안전구역의  
연속으로 포장

## 2.5 시설물 구역 > 시설물

### 시설물 통합 설치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  
세부기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82~83 참조

-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연계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점유면적을 최소화시켜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도시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 한다. 도시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 색채를 적용 한다. 도시
-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교통약자 등의 배려를 위해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도시
- 가로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들도 통합 설치를 권장하고, 그 외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가로수 등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 구역 내에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 가로
- 조경시설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꼭 필요한 시설물도 있으나 우체통이나 공중전화 등 사람들의 행태와 사회적 여건이 변하여 효용가치가 떨어진 시설물을 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통합 또는 제거한다. 가로

### 가로수 식재

자세한 사항은  
가로수 정비 및 설치  
세부기준 :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60~61 참조 및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조성  
및 관리」 참조

- 가로수는 공기오염 완화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가로
- 보행안전구역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주변 반경 5m 이내에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가로
- 교차로의 각각부는 운전자의 시야(승용차 눈높이 110cm 내외, 상용차 210cm)를 가리지 않도록 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한다. 가로
- 횡단보도의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의 보행권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가로
- 가로수의 식재 간격 및 가지치기 등 설치 기준은 「서울시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 조성 및 관리」를 준용하되, 주변의 경관적 특성에 따라 조절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가로수 식재**

- 가로수 식재 시 보행안전구역 최소 1.5m 확보 식재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참고자료****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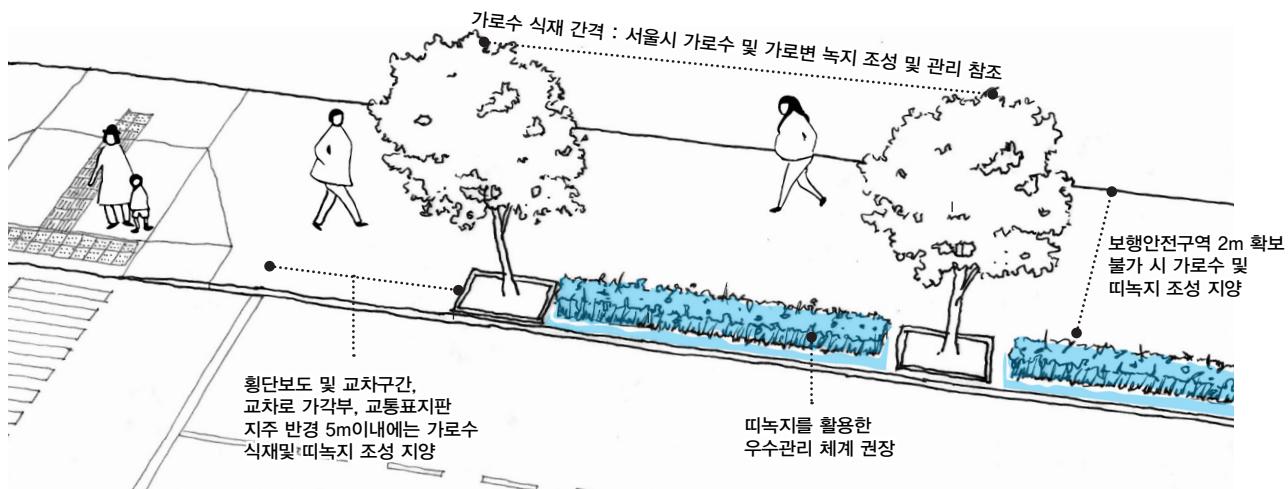
개별적으로 설치된 신호등,  
안내표시 등으로 인해 정보  
전달 혼란 및 도시미관 저하

**권장**

통합 설치를 통한 정보전달  
효율성 상승 및 도시미관  
증진

## 띠녹지

- 보행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에는 띠녹지 형태의 조경을 권장한다. [\[가로\]](#)
- 우기 시 보도 표면 위로 흐르는 우수량을 줄여 홍수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체계를 권장한다. [\[가로\]](#)
- 장소별로 다양한 제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가로\]](#)



## 2.5 시설물 구역 > 안내시설

### 설치

자세한 사항은  
안내시설 세부기준 :  
『2016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참조

-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안내체계 개발방향인 인지성, 기능성, 상징성 및 조화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 길찾기 과정에서 혼돈을 야기하거나 추측, 오해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상황, 장소 등 맥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 지식의 정도나 이해의 차이, 연령, 신체능력이 다른 다양한 이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급 및 행정 중심에서의 정보가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 다국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인도 길찾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시\]](#)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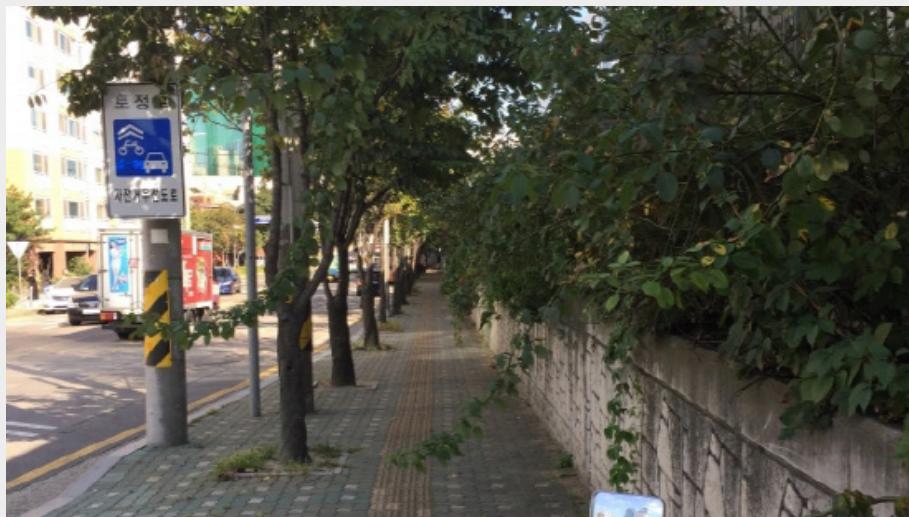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안내

- 국제(국가) 표준 픽토그램 적용과 다국어 표기 체계 정립으로 국제성을 높인다.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참고자료



#### 지양

보도를 침범한 수목으로 인해  
보행성 저하



#### 권장

띠녹지와 가로수를  
유기적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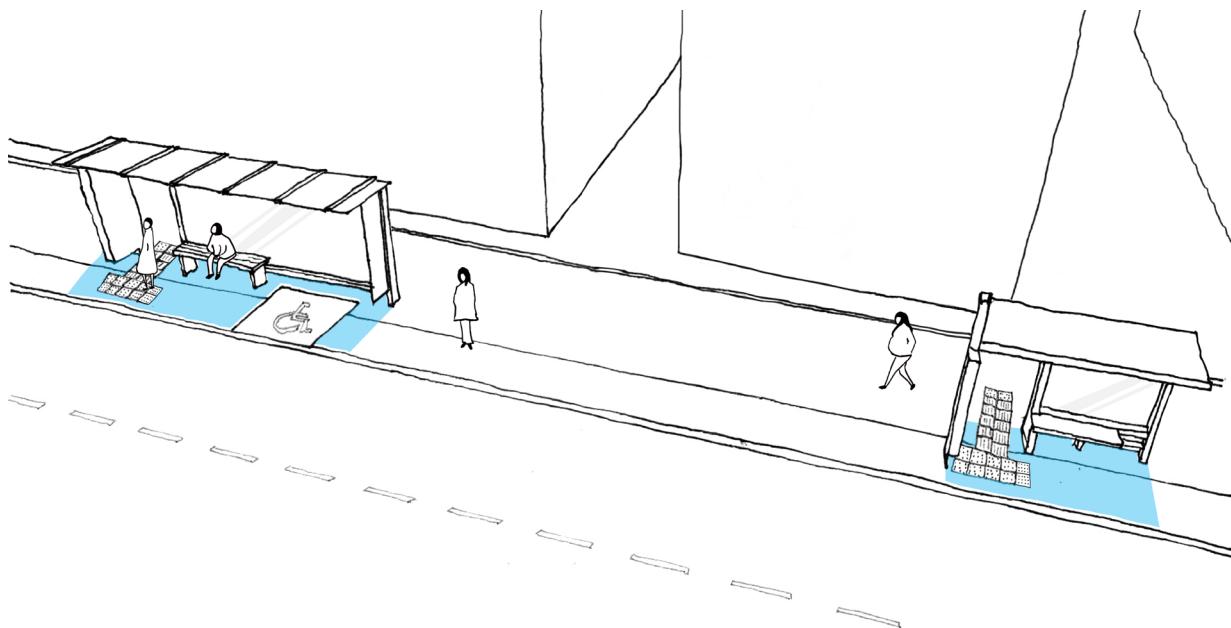
### 우회정보

- 가로 내 모든 통행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급격한 경사로,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길 등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사전 정보 제공과 함께 우회정보를 제시한다.
- 관광안내판 등 지도로 안내하는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이동설비 여부를 표기하여 이용자들의 사전 선택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5 시설물 구역 > 여객시설 정류장

### 설치

-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가로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한 승차대 공간이 되도록 한다.
- 지하철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한다. 편의
-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F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참고자료



등급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이용 권장 대상	장애인, 임산부 등 바퀴달린 보행 수단 (휠체어, 유 모자 등)	어린이, 노령자 등	등산 경험자	등산 숙련자	등산 숙련자
픽토 그램					
경사 도	아주평탄	평탄	약간의 경사	심한경사	아주 심한 경사
노면 상태	단단하고 매끈 한 포장	흙길	대부분 흙으로 이루어진 길	대부분 돌로 이 루어진 길	돌로 이루어진 길
필요 물품	-	운동화	경등산화, 배낭, 물 등 가벼운 등산장비	등산화, 배낭, 물, 스틱 등 등 산장비	중등산화, 배낭, 물, 스틱 등 등 산장비



## III. 공공건축물

### 권장

출구에 인접설치하고  
안내사인 주변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가독성 최대화

### 권장

화장실(장애인 전용 화장실),  
영유아 위생시설, 계단 등  
주요시설 및 접근성 정보  
표시

### 참고

길을 경사도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류한 후, 이용 권장  
대상별 적절한 탐방로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 공원  
탐방로 등급제

### 참고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 된  
등급별 안내사인

## 버스정류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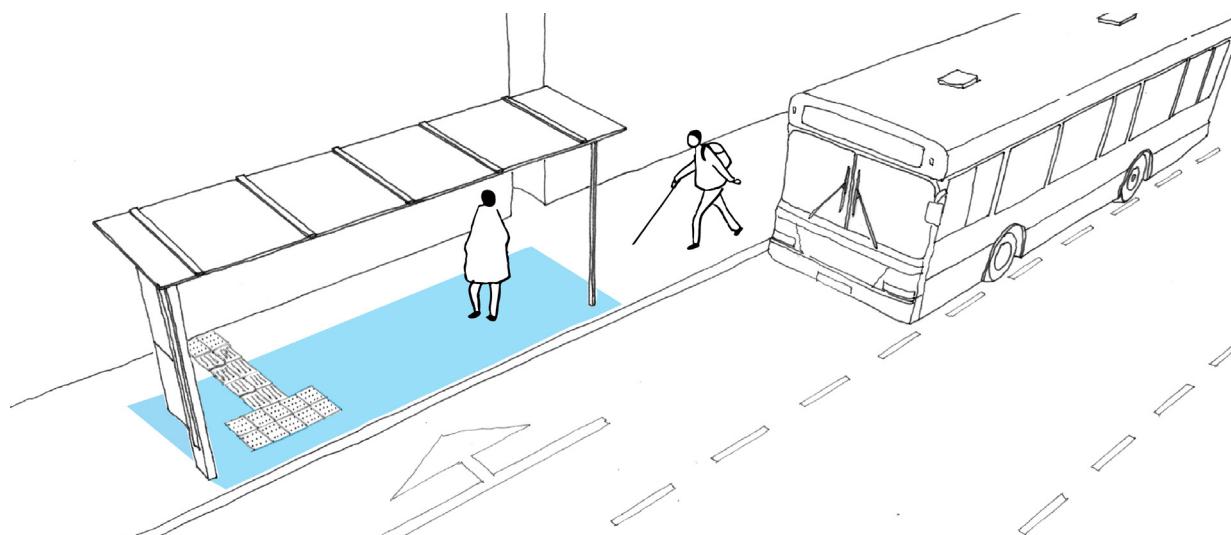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류장 설치 세부기준 :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3, 4, 7장 참조

자세한 사항은

보도 폭에 따른유형별  
버스정류장 설치 세부기준 :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17  
참조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부담이 적은 정류소를 조성한다.
- 버스정류소는 주변 여건(수요), 가로 여건 및 교통상황, 보행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인접 마을 및 공항버스정류소와의 상충,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상충이 최소화되고 적절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의 가로수나 시설물들로 인해 접근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며 특히 가로수 설치는 제외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류장 쉼터는 보도폭 및 이용환경에 따라 보도중간형, 역상형, 보도후퇴형의 승차대를 설치한다. (도시)
-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역상형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과 보도를 공용하여 사용 한다.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서울 시내버스 승차대(가로변) 표준형디자인’ 을 적용하며, 기타 시티투어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장애인 · 노인 무료 셔틀버스 등의 승차대도 각각의 서울시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한다.
- 충분한 보행자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공간을 축소하는 버스 베이 형태의 버스 정류장은 지양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경계부분**

- 보도폭이 협소하여 승차대 대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에 접한 버스 대기공간 2.0m x 2.0m 이상 확보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 운영 지침)
- 버스 대기공간 가로 7m 이상, 세로 최소 1.5m 최대 2m 이상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 휠체어 회전반경에 근거하여 가로수, 휴지통 등 시설물은 버스 대기공간 영역에서 최소한 1.5m이격 후 설치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참고자료****참고**

서울시 유형별 버스쉼터  
표준형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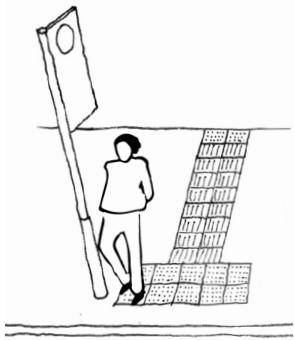
**A-type 승차대**  
( ' 자형 승차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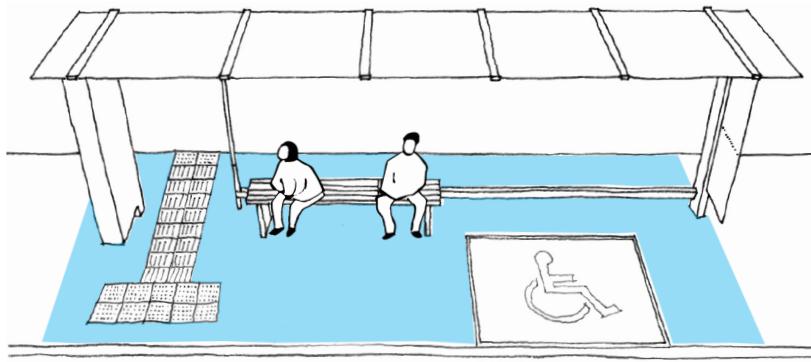
**B-type 승차대**  
( - '자형 승차대 )

- 무장애 정류소는 일반인 대기공간과 휠체어 대기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승강장 위치를 표시한다.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 무장애 정류소 설치는 '서울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

버스정류소 유도 예시 1)



버스정류소 유도 예시 2)



### 버스정류소 유도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류장 점자 설치  
세부기준 :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32 참조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버스**
- 장애인의 이동 및 승하차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버스**
-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를록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의 보도 폭이 넓은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보도폭이 좁은 때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 야간에 버스운전자가 정류소 대기자를 보지 못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을 설치한다.

### 버스정류소 안내

-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유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일체형, 독립형, 표지판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정보표출 화면의 양/단면형은 대기수요 및 정류소 혼잡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정류소 접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면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한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유도 및 안내

- 대기공간 내부에 입식표지판을 이용한 안내시설 설치 시 높이 1.5m 이하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참고자료



#### 참고

역상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례



#### 참고

승하차를 정위치에서  
승하차가 가능하게 유도하는  
안전펜스



#### 참고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안내 표지판

#### 참고

천장 조명을 통해 정류소  
야간인식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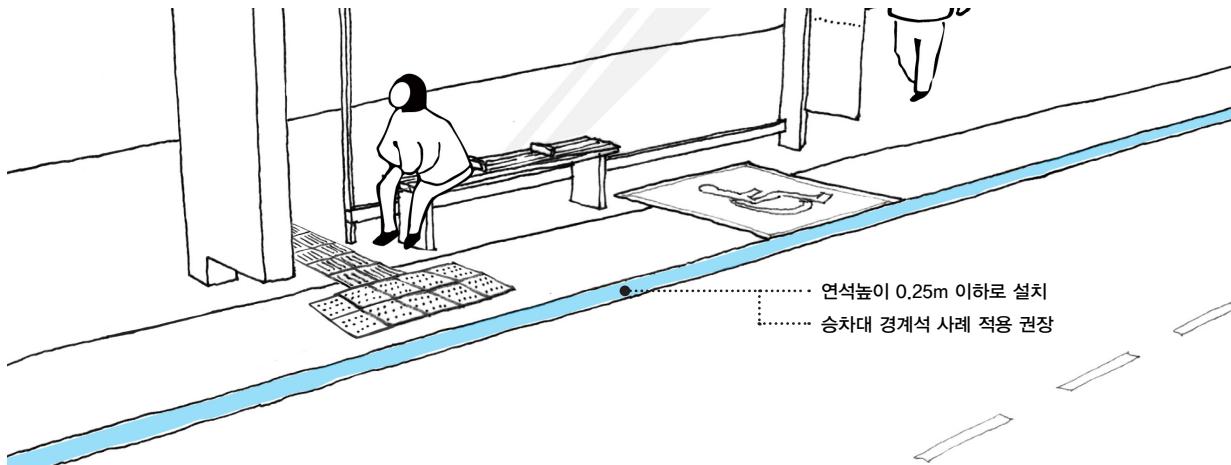
- 입식표지판을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1.2m 이하로 설치하고,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도착 시 음성으로 안내한다. **BF**
- 안내시설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며(고딕체 등), 영어 등 다국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치한다.

## 경계부분

자세한 사항은

경계부분 세부기준 :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p.07~08 참조

- 연석높이는 저상 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하며, 높이 0.25m 이하로 설치한다. **BF**
- 승강장과 차량간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형 가로경계석을 사용한다. **버스**
- 대기공간과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다른 재질로 설치한다. **BF**
-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에 경고블록을 사용하여 대기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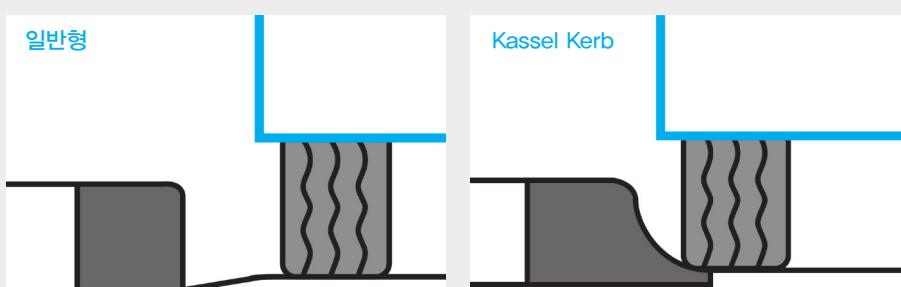
-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 유효폭 0.9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의 대기공간 1.5m×1.5m 이상을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경계부분

- 연석높이 0.25m 이하 설치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자료****참고**

저상버스의 근접 정차를 위한 오목형의 도로경계석으로, 독일의 Kassel시에서 처음으로 적용. 최소경계석 높이 180mm이며, 승강장과 버스바닥면의 최소간격은 80mm로 제시

**참고**

저상버스로의 휠체어 탑승장면. 위치표시는 보도경계마감 활용 : 영국

## 지하철 출입구 설치

자세한 사항은

지하철 출입구 세부기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3.4.2 (종량전철),  
6.4.2 (경량전철) 참조

-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계단 위치를 결정한다. **철도**
- 외부계단은 기존의 보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 및 공원 등에 설치하며,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 **철도**
-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보차선을 조정하거나 도로법면을 조정하여 잔여 보행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보도상의 잔여 보행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 조정, 건축물의 후퇴선 활용, 인접한 대형 건축물의 출구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점용하여 보도폭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도시**
- 지하철출입구캐노피와 지상노출승강기는 시설물 이용자와 보행안전구역 통과 동선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한다. **도시 가로**

##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자세한 사항은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세부기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3.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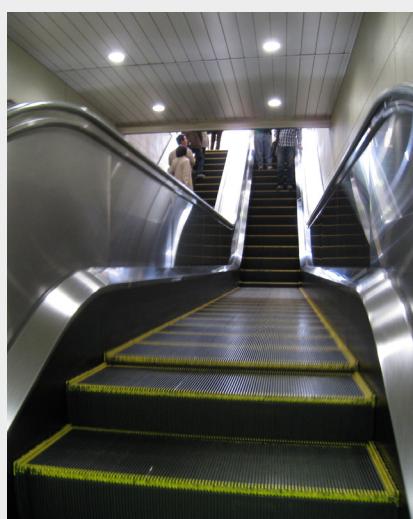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는 주변 보도 여건 및 승객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동**
- 내부 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야 한다.
- 물리적 공간 불충분으로 인해 한 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에는 주 이용자, 시간대별 이용을 고려하여 상하행 운행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이동**
- 여객시설 주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유도 및 안내**

- 디딤판 유효폭 0.8m 이상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에스컬레이터 이동속도 분당 30m 이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양쪽 진입부 끝부분에는 에스컬레이터 이동 손잡이가 수평으로 연속되게 1.2m 이상으로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에스컬레이터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 1m 이상의 별도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후 층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안전성, 시간적 여유 등이 확보되도록 핸드레일 끝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을 확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 편의시설 설계 지침)
  - 에스컬레이터 ~ 에스컬레이터 : 12m
  - 에스컬레이터 ~ 통로 : 6m
  - 에스컬레이터 ~ 집 · 개표구 : 8m
  - 에스컬레이터 ~ 지상도로 : 6m
  -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병렬로 연결하기 위한 층에서는 벽체 · 기둥 등의 구조물까지 6m의 전면 최소 여유공간을 확보

**참고자료****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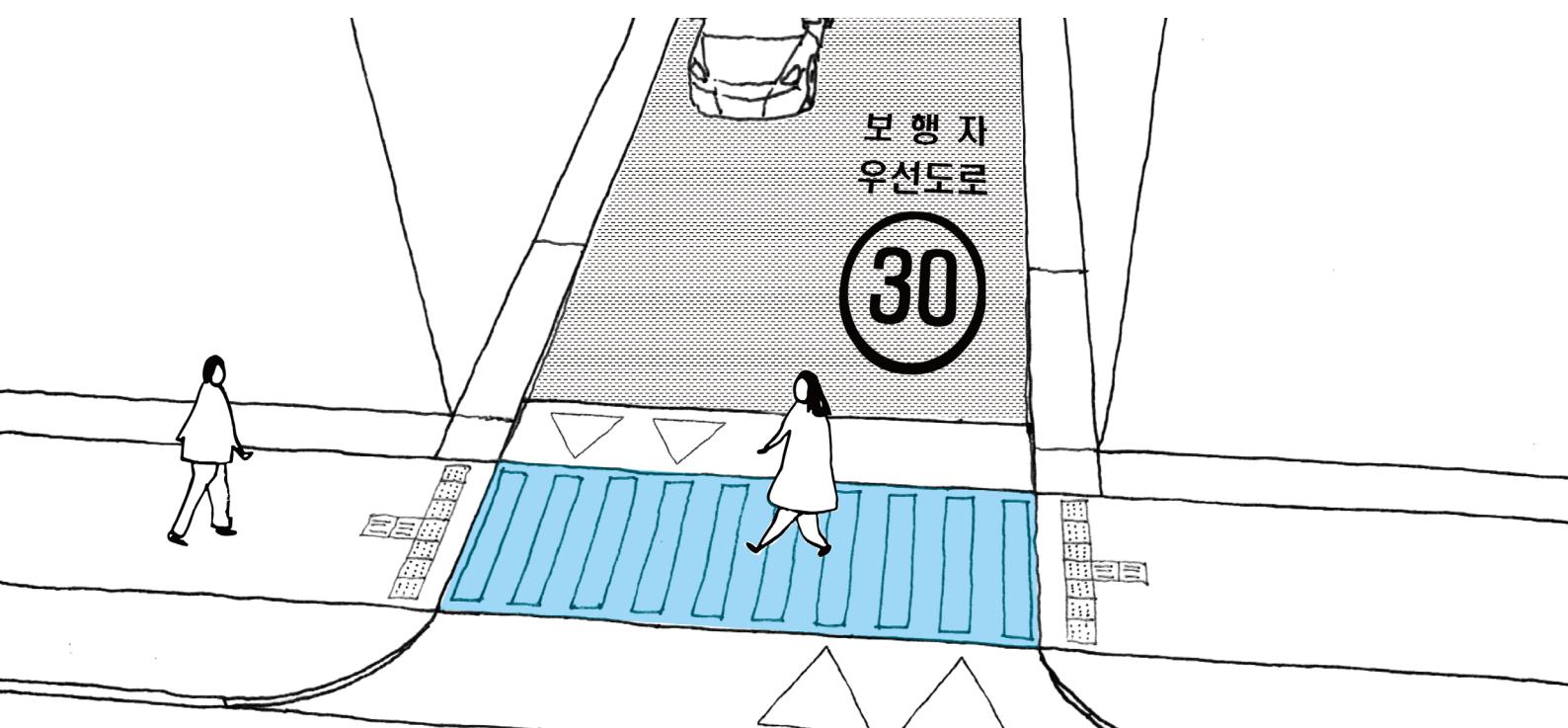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표준형  
디자인

**참고**

높이가 높은 경우 중간  
대기수평부 설치 : 일본

**참고**

방향 전환 운행시 승차위치  
표시 : 영국



**03**

## 차도

### 3.1 국지도로 > 기본지침

**01**

가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

**02**

가시성이 높아서 시각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가로로 조성

**03**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력적이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가로 조성

**04**

주변의 시설이나 건출물의 규모, 통행량, 인접공간의 너비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우선도로 계획

### 3.1 국지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자세한 사항은  
턱낫춤, 고원식횡단보도  
세부기준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가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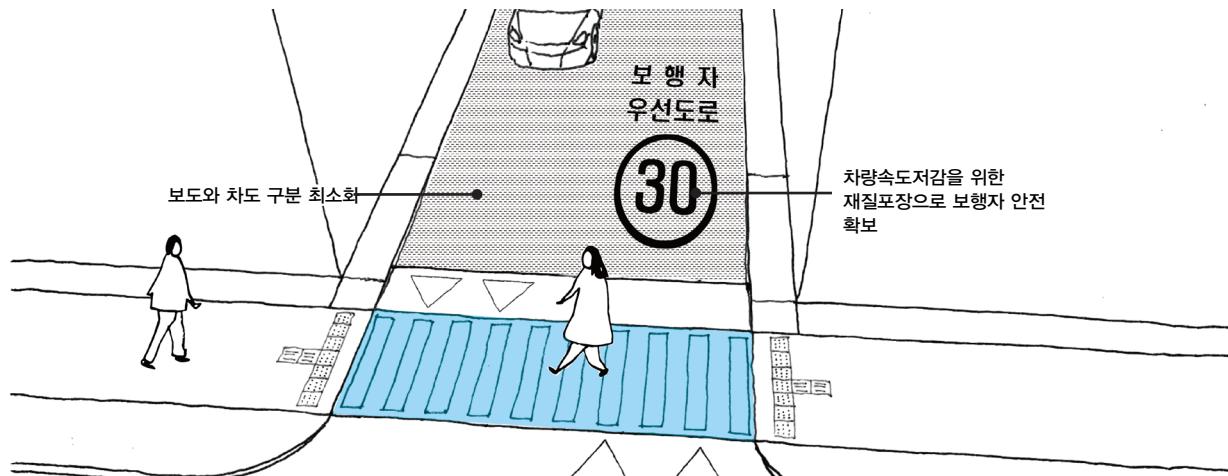
-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는 통과교통의 수요가 적고 보행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로 선정한다. [가로](#)
- 보행동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폭이 좁은 (2차선 이하)도로에 적절하다. [가로](#)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최소화 한다. [가로](#)

#### 진입구간

- 차량 국지도로 진입 시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 [가로](#)
- 보행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횡단보도를 연석의 높이만큼 올려서 보도와 단차가 없는 고원식횡단보도를 만든다.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고원식횡단보도를 설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자 대 차량사고가 빈번한 가로나 그 밖에 고원식횡단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가로](#)

#### 바닥마감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가 구간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해당구역 진입부에 입식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를 하고, 기존의 차도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스탬핑 등의 기법으로 도로요철 패턴으로 변화를 준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경계부분**

- 고원식횡단보도의 평탄한 중앙부는 차량의 앞뒤 바퀴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로 설계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참고자료****참고**

일반 차도와 달리 보도와 비슷한 재질 포장 및 연석 낚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보행자 안전 확보

**지양**

보행안전구역의 단절 및 종 · 횡경사 발생

**권장**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안전구역 연결 및 안전성 확보

- 차량이 저속 운행 하도록 가로 표면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거친 질감의 재료 또는 요철을 두어 차량의 속도 경감을 유도한다. **가로**
- 보차도 혼용가로나 차량 운행을 금지한 보행 전용거리에서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가로**

### 안내시설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 주요시설물, 1.2 킬로미터 이내 여객시설 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동**
-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우선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이동**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이동**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가이드를 병설한다.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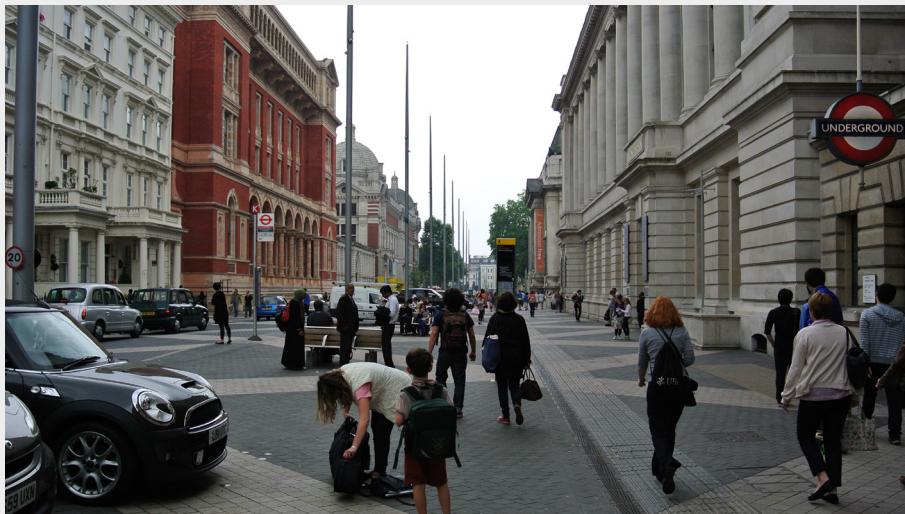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참고자료



### 참고

켄싱턴앤드첼시  
로열보로의 엑시비션거리,  
사우스 켄싱턴역에서  
하이드파크까지 820m에  
이르는 직선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 자동차 공존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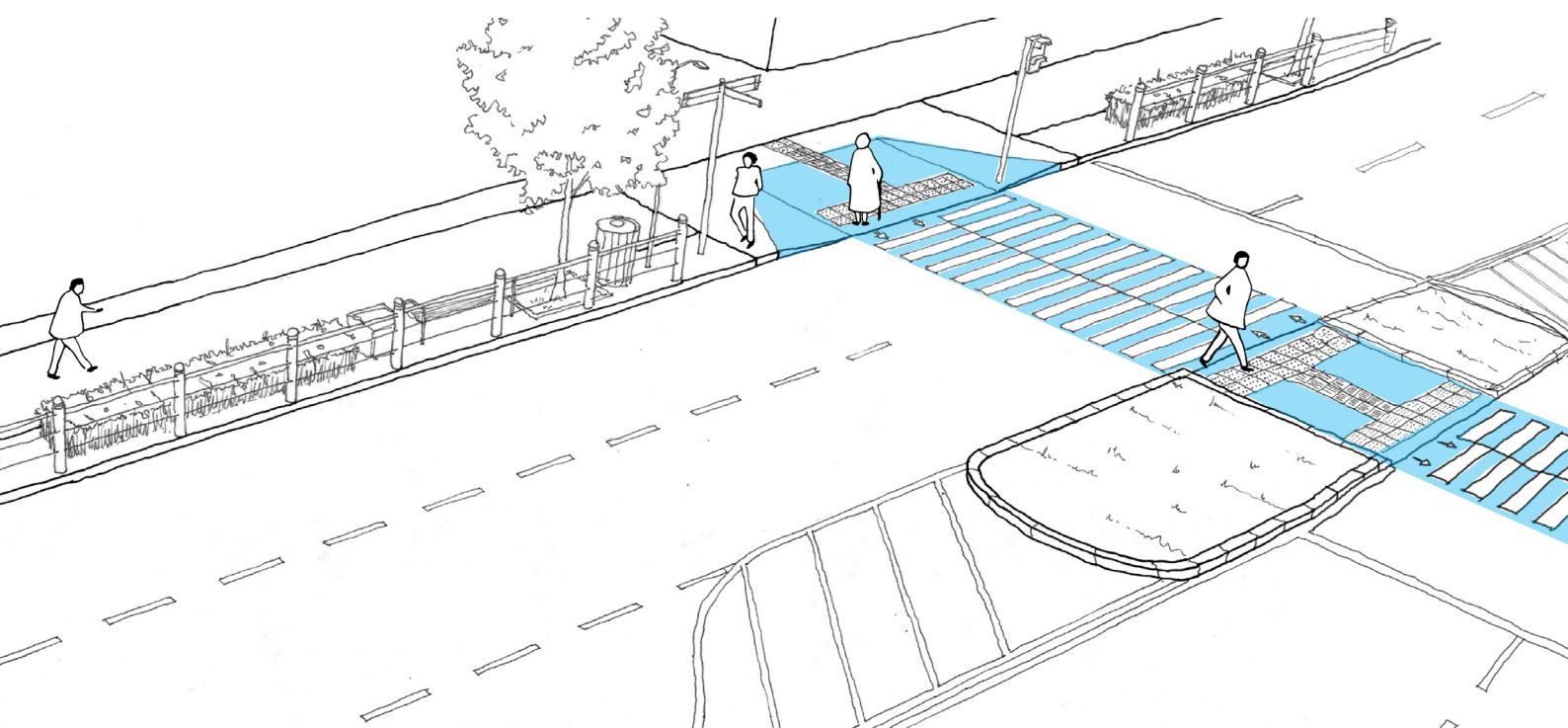
### 지양

보행자 불편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차도 및  
주차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 권장

노면의 색상을 달리하고,  
교차로 형태를 바닥에 표시한  
이면도로



### 3.2 횡단보도 > 기본지침

#### 01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가 짧은 교차로 계획

#### 02

보행장애인, 노인,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조성

#### 03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 높이에 맞추어 계획



### 3.2 횡단보도 > 설치

#### 바닥

자세한 사항은  
교차로 여건에 따른  
횡단보도 형태 세부기준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참조

횡단보도의 규격과 이에  
수반하는 정지선 위치 등의  
세부기준 :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규칙」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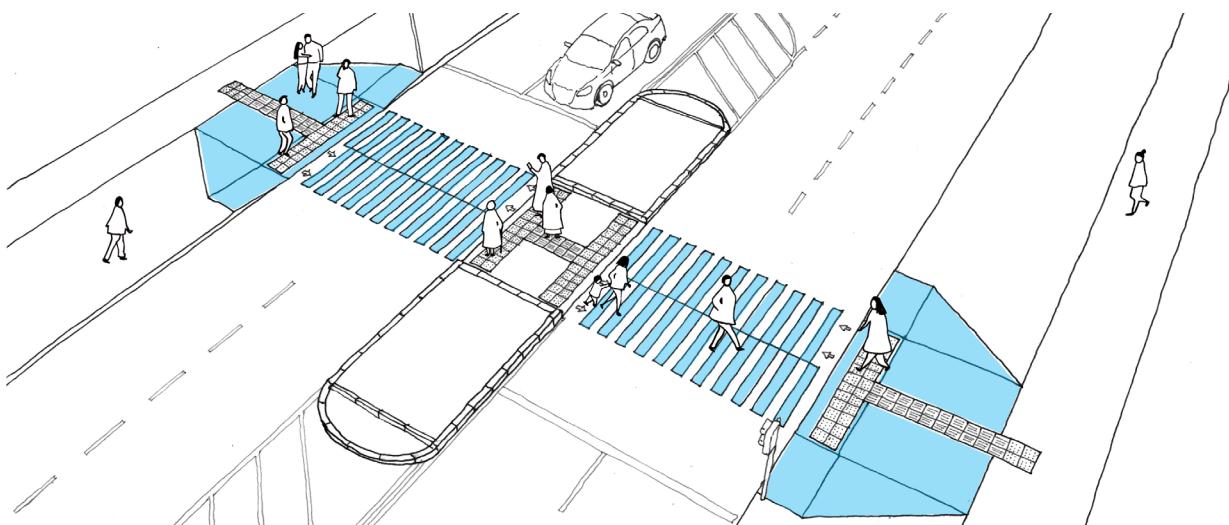
-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는 인접 보도와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도시
- 시각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게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BF 가로

#### 시설물

- 횡단보도 상에는 우수 트렌치 및 맨홀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시
- 가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잔여 횡단 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제거나 이설시에는 기 설치된 점자블록과 턱낮춤을 제거한다. 가로

#### 위치

- 횡단보도는 육교 ·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도로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횡단보도**

- 횡단보도에 접한 보행안전구역에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횡단보도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 횡단보도표시를 설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참고자료****참고**

차량이 진입하는 우측을  
주시할 수 있도록 경고 표기  
: 런던

**참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스코트존(점자안내) 병설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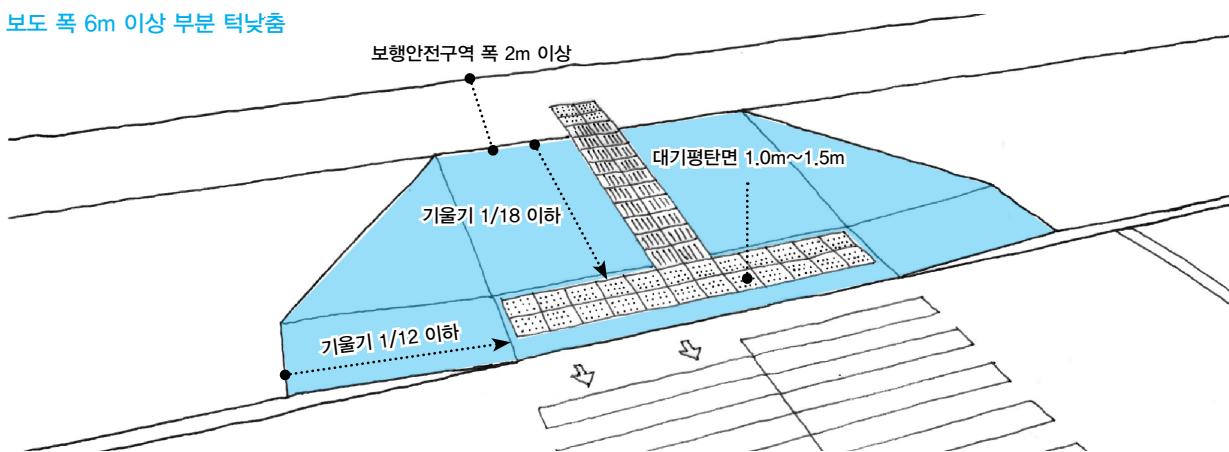
### 3.2 횡단보도 > 진입부

#### 단차 및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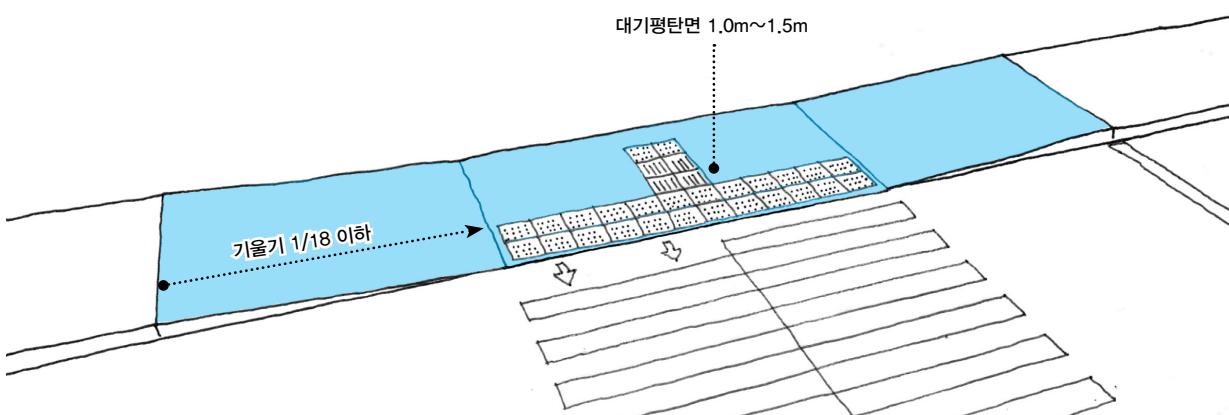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횡단보도 진입부 세부기준  
: 「가로설계매뉴얼」  
pp. 160~161 참조

- 보행편의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진입부는 전체턱낫춤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도시 가로
- 횡단보도 진입부의 수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시
- 접하는 보도의 대기수평부 폭은 횡단보도의 폭과 같게 설치한다.
-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턱낫추기를 하고, 턱낫춤부 경계석(낫춤석) 상단을 곡선처리(모따기)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노면과의 단차를 0cm로 한다.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의 구조는 1.2m 이상의 보행·대기 수평부, 기울기 1/18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한다.

보도 폭 6m 이상 부분 턱낫춤



보도 폭 3m 미만 전체턱낫춤



##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횡단보도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 부분은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차도 경계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인 차도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점자블록 배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설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참고자료



#### 권장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횡단보도진입부의 전체탁낮춤 사례



#### 참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안전을 위하여 기준 조도보다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 주변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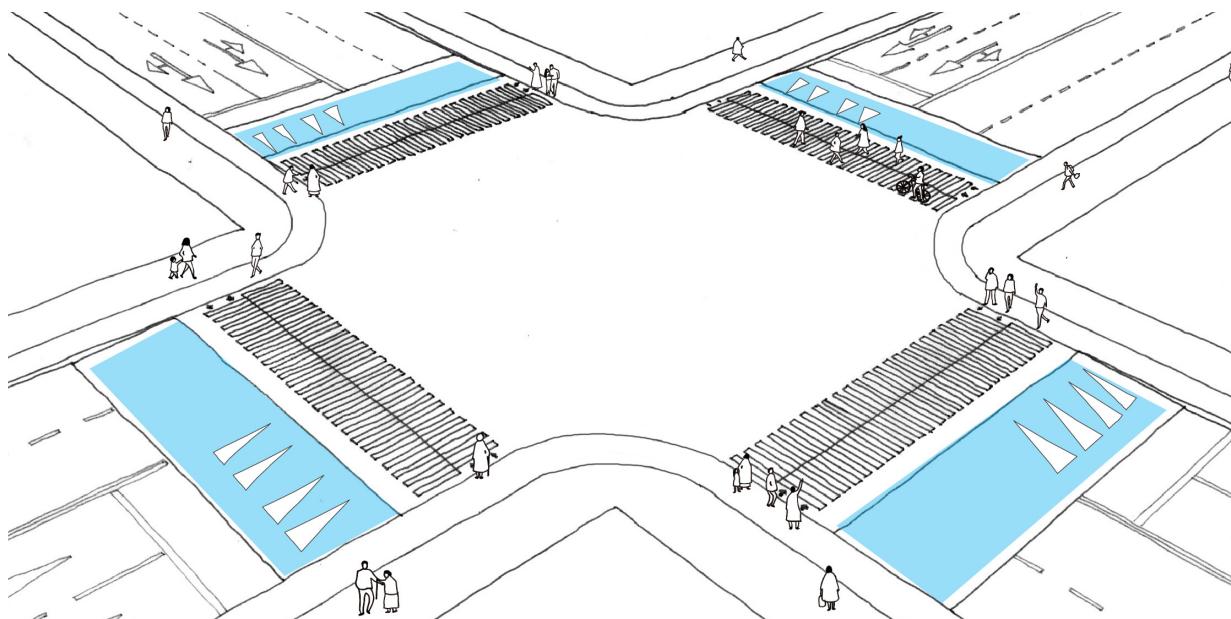
### 3.2 횡단보도 > 고원식 교차로

#### 설치

자세한 사항은

고원식 교차로 세부기준 :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 158~159 참조

- 교통약자의 교차로 횡단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횡단보도를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를 제거한다. [\[가로\]](#)
- 높여진 교차로의 면 전체를 주변도로와 구분되는 보도포장재를 적용하여 높여진 면을 강조한다. [\[가로\]](#)
-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광로나 대로, 또는 오르막길과 경사가 심한 도로, 화물차나 응급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가로\]](#)
- 교차로 진입부에서 경사가 생기므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적절히 배수될 수 있도록 측구 등 주변 배수 체계도 함께 고려한다. [\[가로\]](#)



**참고자료****권장**

보행로와의 단차 제거 및  
이동편의성 증대를 위해  
설치된 고원식 교차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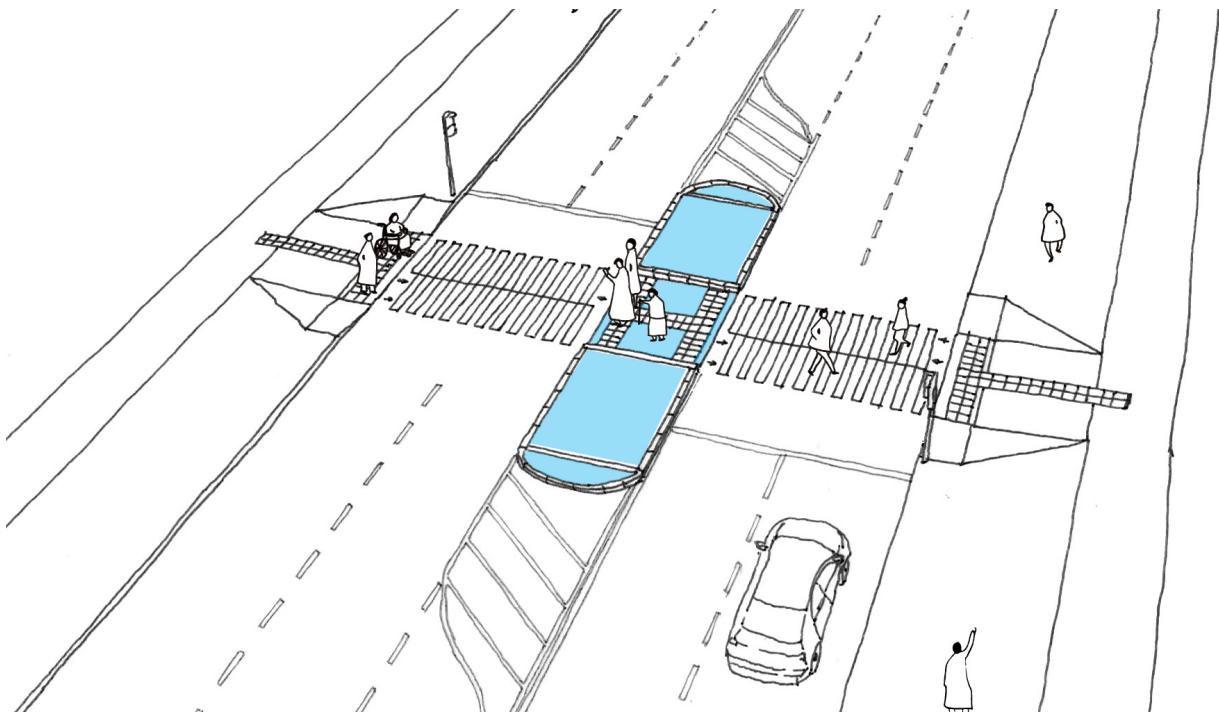
보행로와의 단차를 제거 및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설치된 고원식 교차로

### 3.2 횡단보도 > 교통섬

####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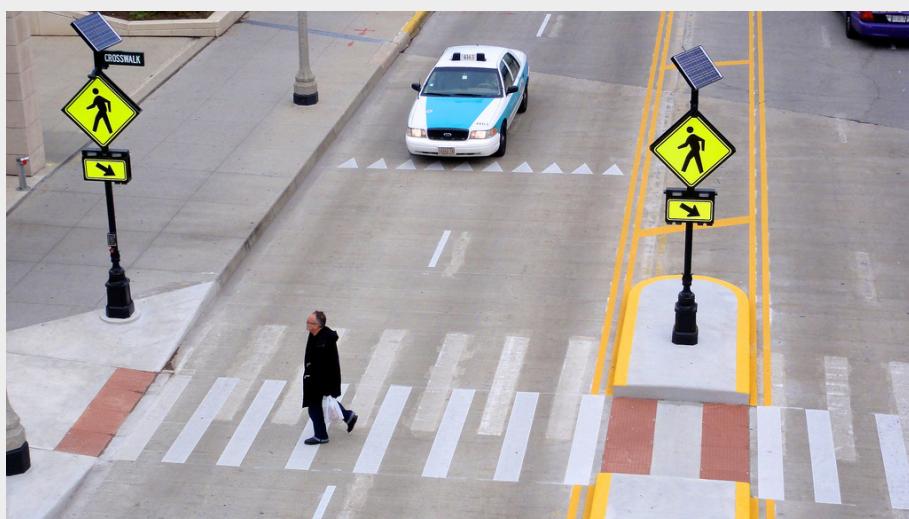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교통섬 세부기준 :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pp. 116~117 참조

- 신호주기 이내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의 대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한다. [\[가로\]](#)
-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섬 중 횡단보도와 연속되는 부분은 도로와 단차를 두지않고, 조경을 설치하는 부분의 연석높이를 올려 설계한다. [\[가로\]](#)
- 차도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최소 1.5m 폭으로 설치한다. [\[가로\]](#)
- 교통섬이 차량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보도에 흔히 사용하는 블록과 다른 사양의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가로\]](#)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단차 및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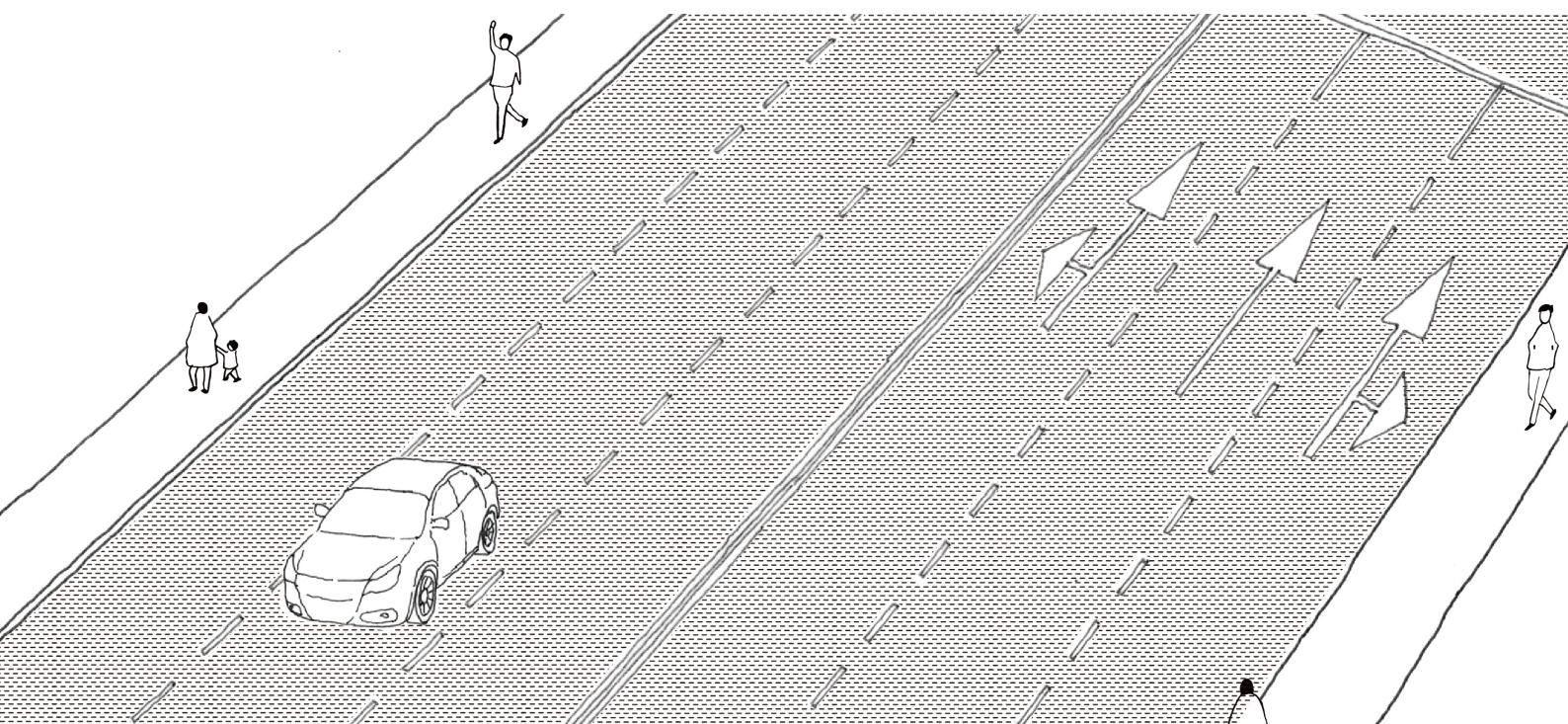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 부분은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차도 경계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인 차도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점자블록 배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참고자료****권장**

도로와 단차없이 횡단 가능하지만 안전하게 계획된 교통섬

**참고**

교통섬 설치 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통행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시



### 3.3 속도저감 방안 > 기본지침

#### 01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국지도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 노유자 시설이나 병원 주변 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어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속도저감시설 설치

#### 02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시설 설치

#### 03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부분에는 운전자가 속도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 시행

#### 04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 등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 3.3 속도저감 방안 > 차도 폭 좁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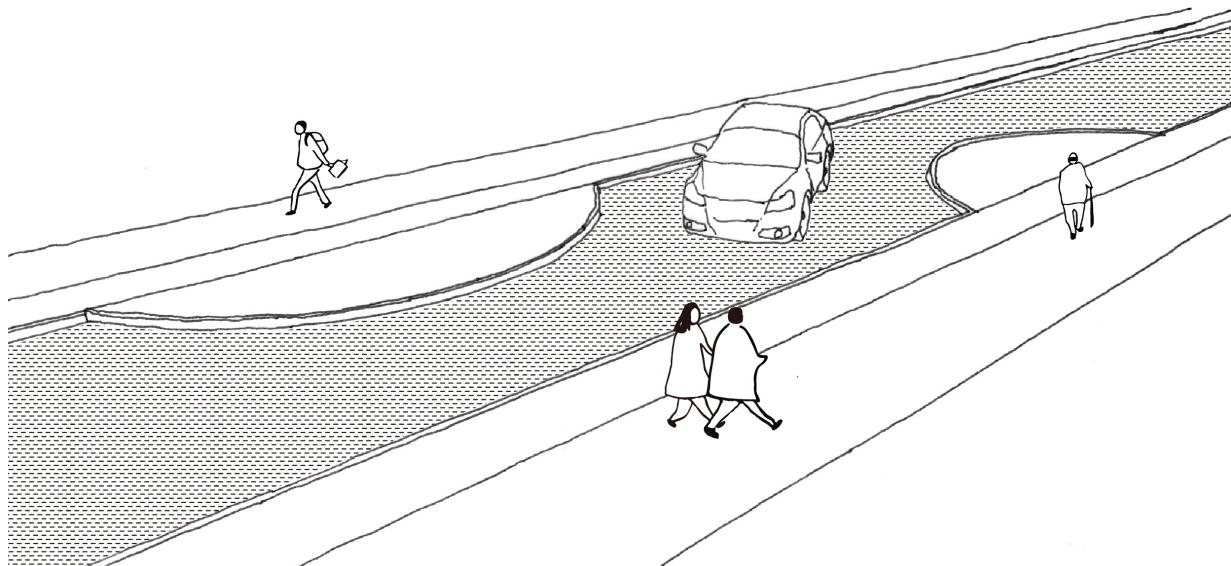
#### 설치

자세한 사항은

차도 폭 좁힘 세부기준 :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pp. 114~115 참조

-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굴절 및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볼라드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동 도시
- 단,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은 보행안전통로가 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보도 유효폭 확보가 가능한 가로에 설치한다. BF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설치한다. 이동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BF
-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보도공간 확장의 효과를 내면서 커브를 조성한다. 가로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발색 도료 등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BF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을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차도 폭 좁힘**

-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에는 차도 폭을 좁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을 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참고자료****참고**

주민의 안전과 차량의 속도저감을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계획한 영국의 훔존 사례

**참고**

주민의 안전과 차량의 속도저감을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계획한 사례

**참고**

이면도로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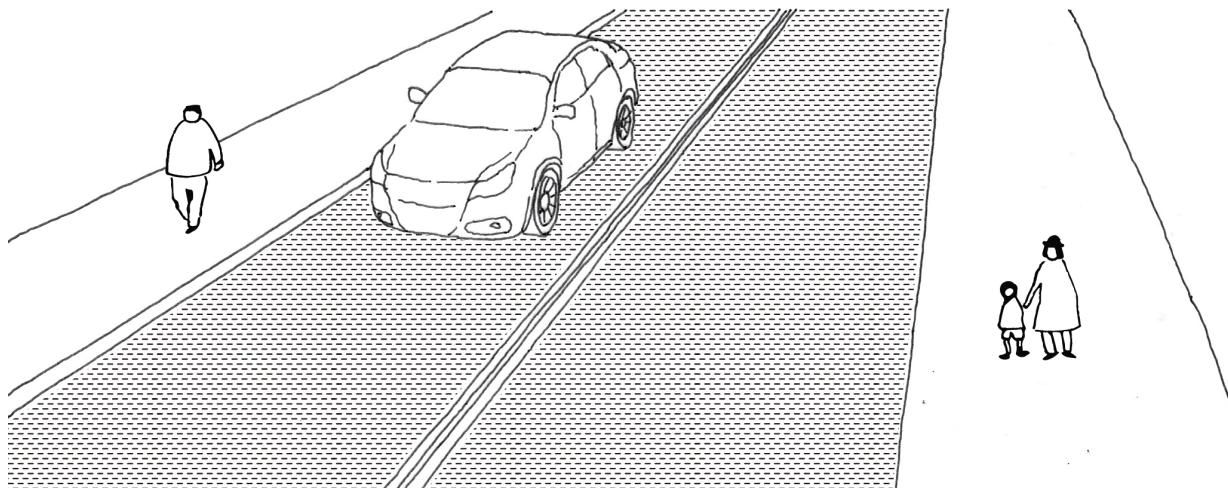
### 3.3 속도저감 방안 > 도로포장 변화

#### 설치

자세한 사항은

도로포장 변화 세부기준 :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pp. 118~119 참조

- 국지도로와 같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혼선이 빈번한 곳은 차도면의 포장 재료를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한다.
- 포장재료를 선정할 때는 가로유형, 보행량, 교통량을 고려해야 하며, 내구성, 유지 관리 용이성, 투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로
- 각각 재료의 시공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준용한다. 가로
- 횡단보도 부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구역은 단절없이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진행방향으로 횡단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적어도 보행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이동 가로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재료 · 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가로
- 주차장 진입구간이 길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가로

01 적용범위 02 보도 03 차도

II. 공원 · 광장

III. 공공건축물

참고자료



권장

색상, 재질 등의 변화로  
공간분류 및 속도저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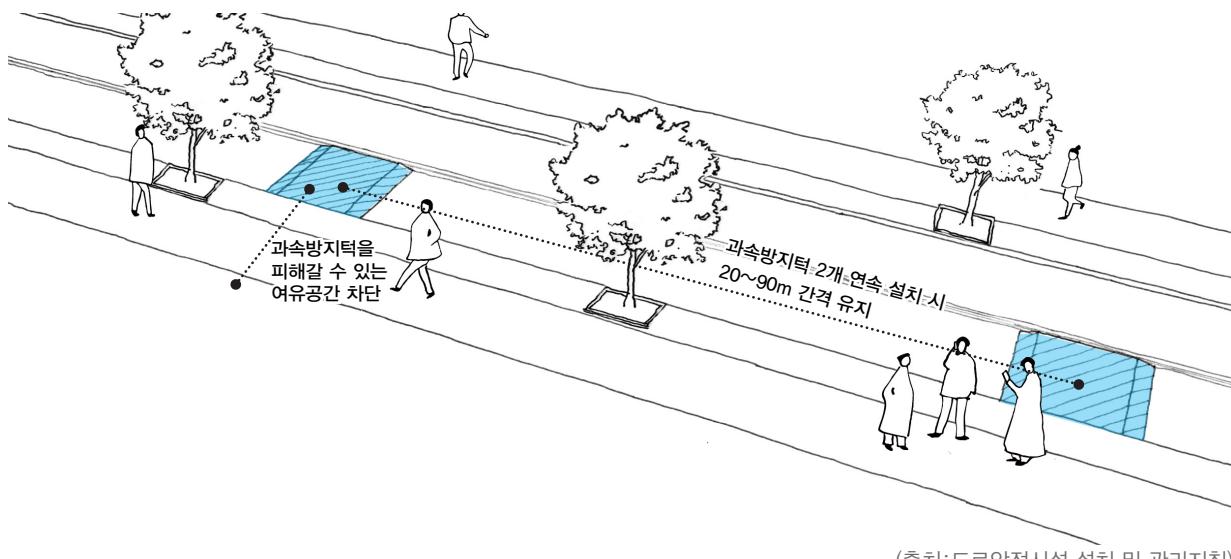
권장

색상, 재질 등의 변화로  
공간구분 및 속도저감 가능

### 3.3 속도저감 방안 > 과속방지턱

#### 설치

-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이동]**
-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이동]**
-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형태로 차도 폭의 여유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BF]**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BF]**
- 과속방지턱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을 지나면 차량은 과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속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 **[기로]**
- 한 개 이상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을 준수한다. **[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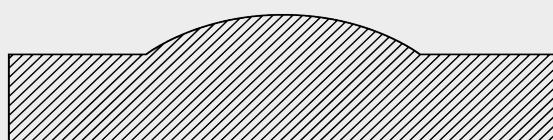


**참고자료****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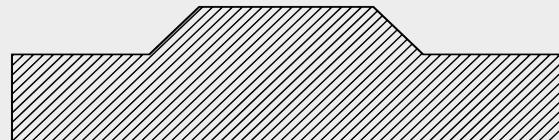
차량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피해 운전할 수 있게 즐게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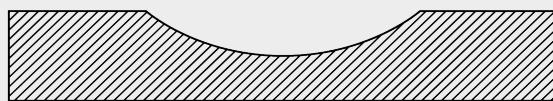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의 속도저감을 위해 연속 설치된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유형 (단면)**

(a) 볼록 원호형 과속방지턱



(b)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c) 오목 원호형 과속방지턱



(d) 오목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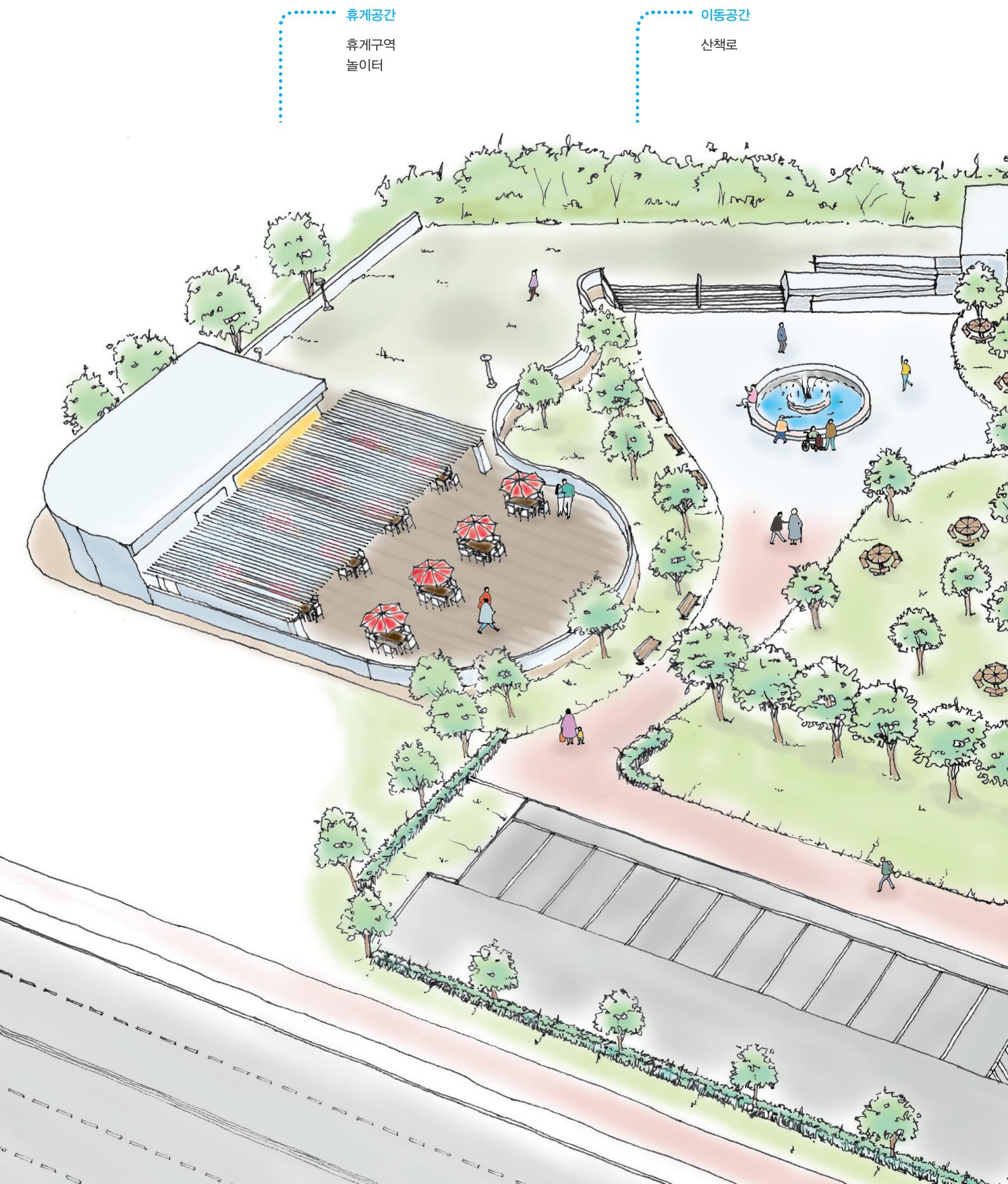


---

<b>II 공원 · 광장</b>	
01 적용범위	118
02 진입공간	120
2.1 접근로	120
2.2 주출입구	122
2.3 주차장	124
03 이동공간	126
3.1 산책로	126
04 위생공간	128
4.1 화장실	128
05 편의공간	130
5.1 편의시설	130
5.2 안내시설	132
06 휴게공간	134
6.1 휴게구역	134
6.2 놀이터	136

---

## 적용범위



### I. 가로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진입공간 03 이동공간 04 위생공간 05 편의공간 06 휴게공간



02

## 진입공간

### 2.1 접근로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접근로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28~30  
참조

- 대중교통,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최단거리의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쉬운 곳에 입구의 위치를 지정한다.
- 공원으로 향하는 보도는 보행안전구역으로 조성하고, 유모차·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유효폭을 유지한다.
- 공원시설의 접근로 중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포장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접근로는 공원 내 보행안전구역과 일체감을 주어 별도의 안내표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주접근로와 공원 내 통행동선에서는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坦하게 계획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완만한 경사로 및 승강기와 관련된 안내사인 등을 설치한다. 도시
- 보행진입로의 바닥은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보행안전구역과의 경계부에는 담장이나 보도용 방호울타리보다 녹지와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도시
- 무분별한 점자블록 설치 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공원
- 적절한 조도를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우범화되지 않도록 한다. 도시
- 동선 및 볼거리 등의 종합정보를 담은 통합적인 안내 체계를 확립한다.
- 시각장애인의 충돌, 추락 또는 가시 등에 찔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제한, 방향유도 등을 할 수 있는 난간, 보호대 등을 설치하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낮은 볼라드나 화분 등 보행장애 요소는 제거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접근로**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는 계획 단계부터 동선을 완전히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참고자료****권장**

단차를 완만한 경사로로  
해결한 공원 접근로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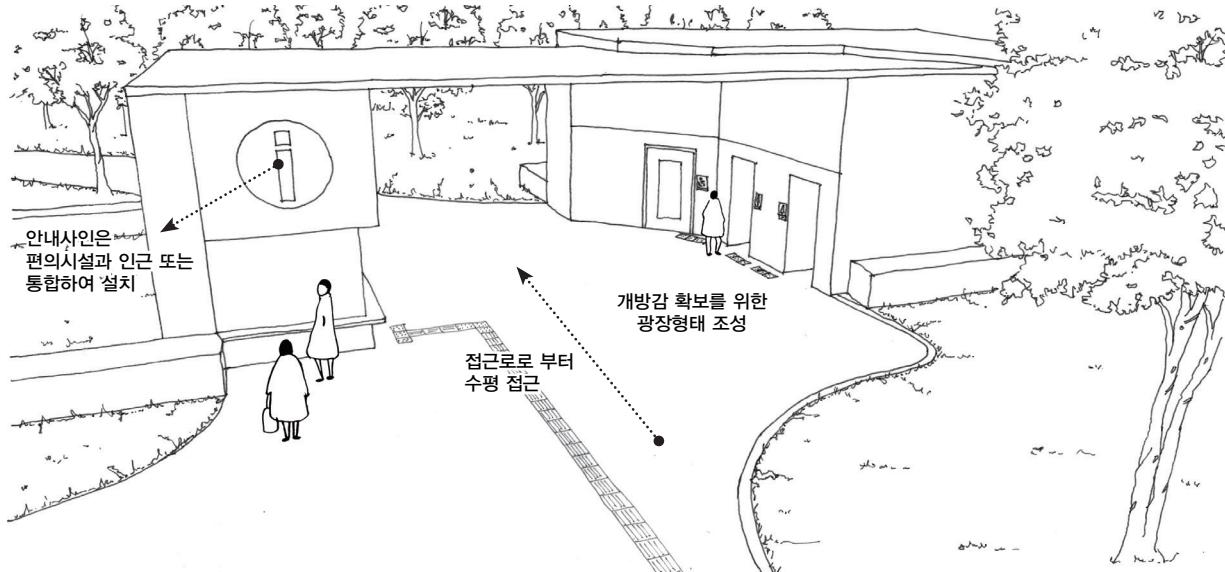
기존 단차있는 보행접근로의  
단차를 개선한 사례

## 2.2 주출입구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주출입구  
세부기준 :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35~36 참조

-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즐겨 방문하는 곳이므로 출입구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객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공원**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주출입구, 휴게공간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이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과 훨체어 사용자의 이용환경을 우선 고려한다.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편의 공원**
- 공원 주출입구는 매표시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가까운 곳을 설치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으로 계획한다.
- 주출입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광장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와 수평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편의 공원**



**참고자료****지양**

주출입구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라드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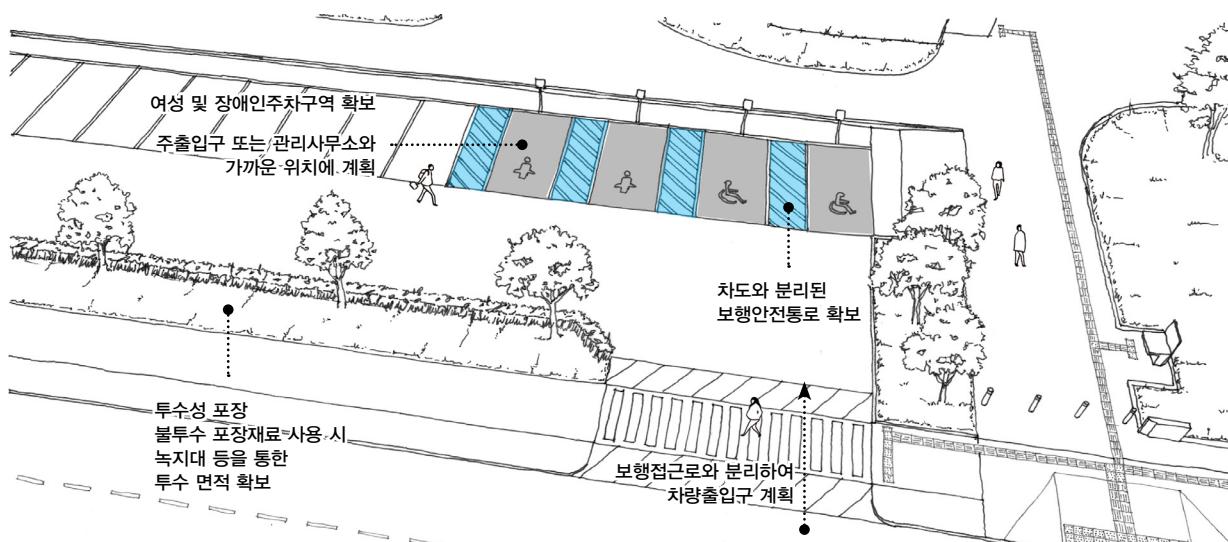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성 고려

## 2.3 주차장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주차장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31~33  
참조

-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 차량 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 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도시
- 주차장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
- 주차구역은 공원 주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건축
-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공원으로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주차장출입구에 주차표지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안내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지를 명확히 한다. 도시 자전거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한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도시
-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불가로 인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공원 접근로에 대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함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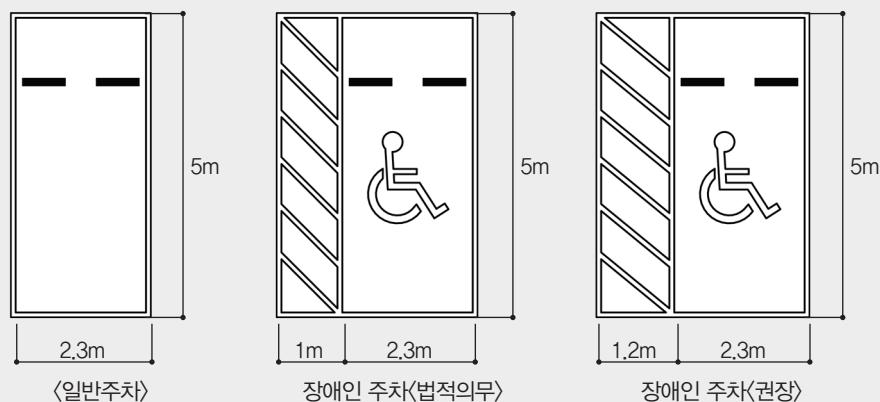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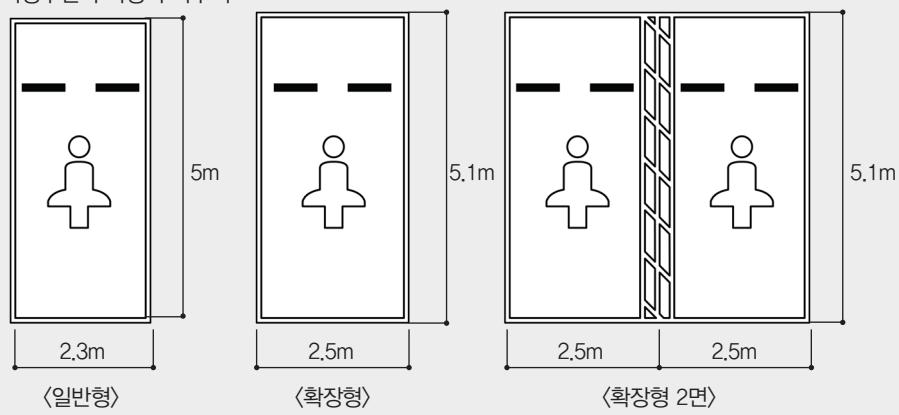
**권장**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구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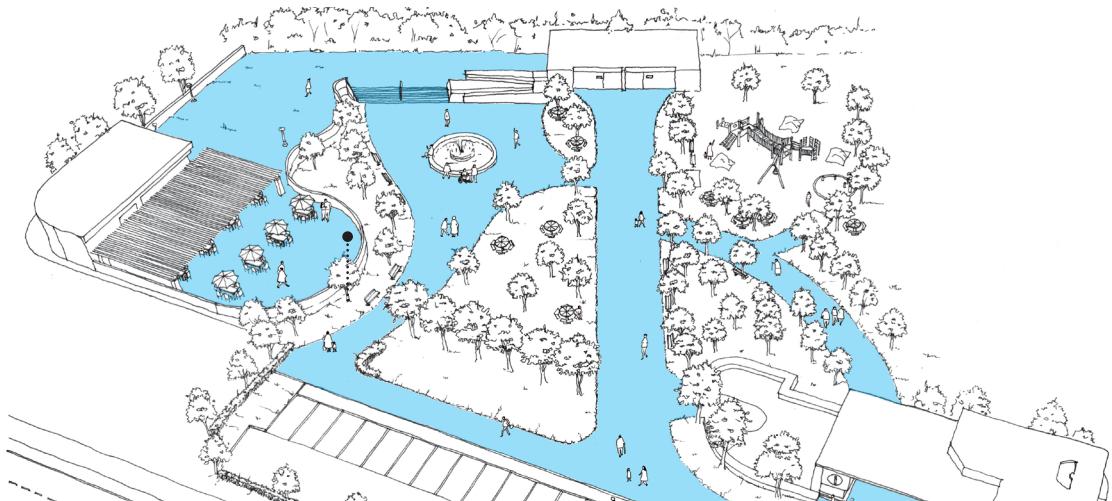
## 이동공간

### 3.1 산책로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산책로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 42~46 참조

- 모든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주요 산책로에는 공원의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어떠한 종류의 보행장애물도 없도록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공원산책로는 노인, 어린이, 장애유무,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연속된 산책로 구조를 확보한다. **공원**
- 차도와 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포장재료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변화시켜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지형상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며, 경사로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 등에게 불리하므로 계단과 병행 설치한다. **공원**
- 계단은 휠체어로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는 물론, 특히 임산부, 목발 이용자, 보행장애인 등에게는 매우 위험하므로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공원**
- 가로와 연결되는 공원 내 보행안전구역에는 점자를록을 대신하여 바닥재질, 색상, 질감 등에 차이를 두어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 산책로 주변에는 식재, 휴게공간,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시설물을 최소화 및 통합화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자양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도시**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산책로

-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보행안전 구역으로 계획하고, 유도 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기준)

**참고자료****권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및 평坦한 산책로 조성

**권장**

단차 발생 시 완만한 경사로 설치로 대체

04

## 위생공간

### 4.1 화장실

#### 조성

자세한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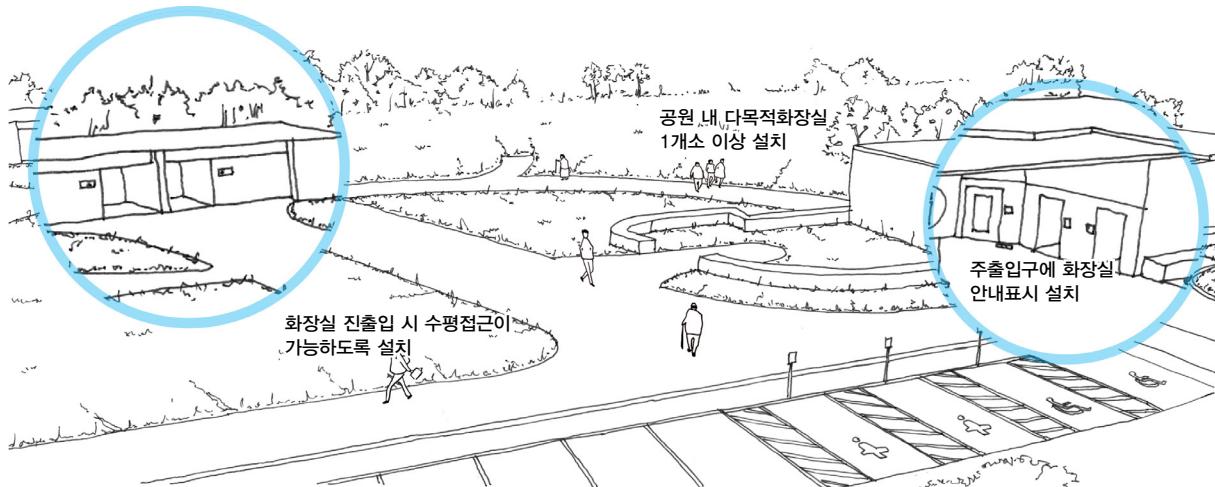
공원 · 광장 화장실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6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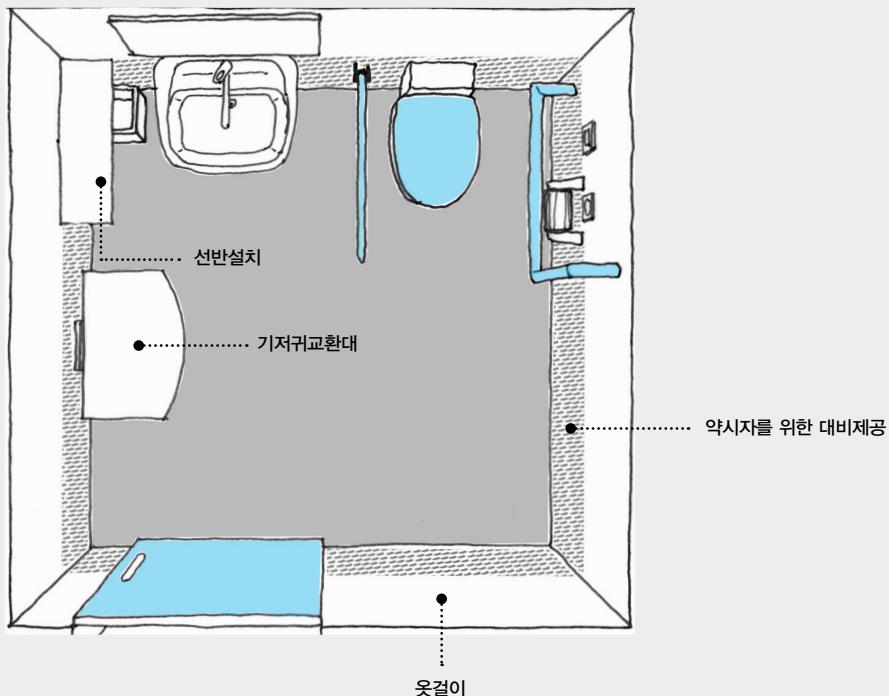
참조

- 공원 어디서나 접근하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공원**
- 장애인전용 화장실 대신 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공원 내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화장실内外부에서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접근,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공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일반 남녀화장실 모두 영유아용거치대와 기저귀 갈이대 등 영유아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다. **공원**
-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수유나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으며, 임산부 등이 휴식할 수 있는 수유실을 공원 · 광장 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며, 24시간 방범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한다.
- 공중화장실 진입로와 출입구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도시**
- 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며,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도심 미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에는 설치는 제한한다. **도시**



### 참고자료

다목적 화장실 평면예시



### 권장

다목적 화장실의 주요 시설물과 배경 간의 색상 차이를 주어 인지성 확보

### 권장

어디서나 접근하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

05

# 편의공간

## 5.1 편의시설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편의시설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61~62  
참조

- 방문자센터, 매점 등 이용객을 위한 공원 내 건축물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원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고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공원
-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 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 이용정보를 얻거나 음성안내기기, 휠체어, 유모차 등 편의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가이드센터 역할을 병행한다. ※공원
-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절감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관리사무소에는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원 보행안전구역,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과 연락이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인근 파출소와도 연결되도록 한다.
- 매표소와 매표기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매표기에는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를 병기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편의시설**

-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공원 사용자들 모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통합 시설로서의 공중전화,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 시 되도록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인근 거리에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역 등을 지정
  -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은 위험지역의 난간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도록 설치
  - 시설의 이용에 있어 손쉬운 접근 및 이동(수직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
  -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는 경우 보행안전구역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며, 기관적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표시를 설치
  - 매표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 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매표기를 어린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 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참고**

반려동물 보호시설 및 보호 구역

**권장**

공원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제공

## 5.2 안내시설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안내시설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37~41,  
『2013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도시공원  
안내체계』 참조

-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표시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다양한 안내 정보 전달방법을 고려한다.
- 공원 내 지형상 가파른 경사로 등이 조성되어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 애완견 동반 출입 등이 제한되는 공간은 입구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안내판은 대상 공원과 연계 가능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보행자 출구 주변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설치한다. ※공원
- 공원 내에서는 공원 입구, 보행안전구역의 분기점, 주차장, 주요 시설 주변 등에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도시
- 공원안내표지나 공원시설안내도 등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가로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한다. 도시
- 인터넷이 가능한 무인정보검색대(무인키오스크)를 관리사무소 또는 공원 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도시
- 안내표지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알아보기 쉬운 명료한 서체와 크기, 색상을 사용하고 서울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 안내판에는 야간에도 문자 등 안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한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도시
- 관광객의 편의를 돋도록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설치를 권장하며, 이질적인 재료의 혼용은 지양한다. 도시
- 관광안내소는 지역 정보물의 제공이 용이하면서 규모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간결하고 개방적인 구조와 형태를 권장한다. 도시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안내시설**

- 점자안내판, 측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등을 알기 쉬운 표기내용과 방법 및 사용하기 쉬운 형상으로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

**지역** 빛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로로 인해 정보인지가 낮고, 설치 위치가 높아 정보접근성이 미흡



**권장** 점자 및 현 위치표시, 사용자를 위해 기울어져 읽기 편하도록 안내시설을 설치 : 일본



**권장** 문자와 점자, 안내도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 : 일본

06

## 휴게공간

### 6.1 휴게구역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 · 광장 휴게시설  
세부기준 :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46~59 참조

- 체력소모가 심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보호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 비공원
- 공원 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나 공원 보행안전구역 주변 등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도시
- 보행 동선의 주요 교차점, 대중교통 주 출입부, 주요 건축물의 전면, 중앙공간 등 보행자가 쉽게 접근하여 머무는 일이 잦은 장소는 광장화한다.
- 휴게공간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키낮은 수목을 식재하여 안정감을 주고, 접근, 식별이 쉬운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공원보행안전 구역에 인접한 경우 보행안전구역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 등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 및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소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휴게시설에는 벤치, 탁자 등을 적절히 설치하며, 자동판매기,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는 자연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 휴게시설 계획 시 테마에 어울리며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 형태로 디자인한다.
-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린다. 특히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노거수나 보호수는 보존 한다. 도시
- 사계절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한다.
- 가급적 직접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채소류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식물 식재를 고려한다.
- 수변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의 주변 여건과 잘 연계되도록 한다.
-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참고자료****권장**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단차 발생 시 완만한 경사로와 계단을 병설하여 누구나 접근이 쉽게 가능한 휴게구역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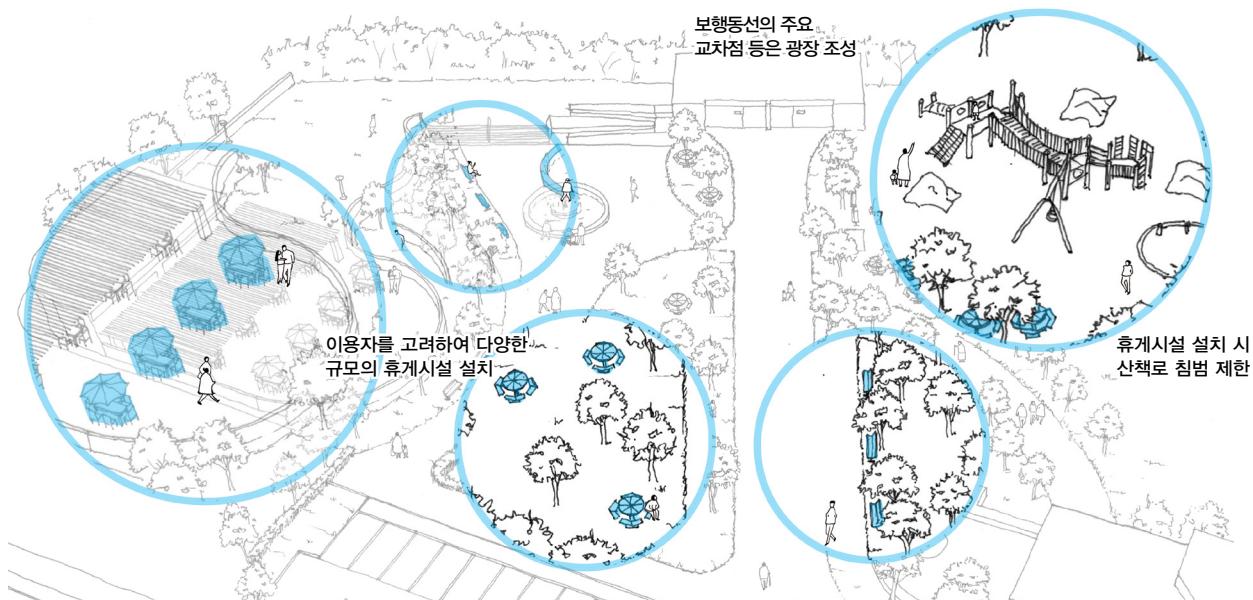
전면 여유공간 확보와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힘이 약한 노인 및 어린이도 체중을 지탱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물

## 6.2 놀이터

### 조성

자세한 사항은  
공원·광장 놀이터 세부기준  
: 「무장애친화공원  
가이드라인」 pp. 52~53  
참조

-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며 장애에 대한 바른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 한다. ※공원
-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가급적 놀이시설을 통합 시설로 설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보행안전구역과 가까운 놀이터 일부공간에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공원
-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강한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함께 설치한다. ※공원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운동공간을 고려한다. ※공원
- 놀이 후 식수공급과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음수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공원
- 기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와 치유를 돋는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



## 참고자료



## 참고

장애 친화 놀이터  
Canberra Park in  
Sembawang & Bishan-  
Ang Mo Kio Park,  
Singapore

-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접근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설
- 휠체어 이용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활용



-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종소리와 북소리를 설치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네 제작

## 참고자료

### 참고

모든 아이들을 놀게 하자  
EISENHOWER PARK,  
NEWYORK



- 장애물 없이 시각, 촉각, 청각 등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공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놀이터
- 경사로와 손잡이가 설치된 다양한 높이의 미끄럼틀 등 어린 아동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아동, 장애 아동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
-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마당



- 놀이기구 주변 넓은 공간 확보 및 장애물 제거로 어린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도 모두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계획
- 놀이영역별로 분리하고 길로 연결하여 다양한 동선을 계획하여 스스로 놀이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 잔디, 고무블록 등 안전한 재료로 마감하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바닥재와 딱딱한 바닥재를 적절하게 사용

**참고자료****참고**

각 각을 더하여 함께 놀다  
Melis Stoke Park



- 통합 놀이시설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른 아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공간들로 조성
- 그물그네,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경사로형태의 통로, 높이가 있는 모래놀이대 등으로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영역으로 계획
- 넓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함께 어울리도록 계획



---

<b>III 공공건축물</b>	
<b>01 적용범위</b>	142
<b>02 진입공간</b>	143
2.1 대지 출입구	143
2.2 보행접근로	149
2.3 주차장	157
<b>03 진입공간</b>	165
3.1 주출입구	165
3.2 로비	173
<b>04 이동공간</b>	177
4.1 복도	177
4.2 실내출입문	187
4.3 경사로	193
4.4 계단	199
4.5 엘리베이터	207
4.6 에스컬레이터	217
4.7 방재 및 피난시설	223
<b>05 위생공간</b>	229
5.1 화장실	229
5.2 다목적 화장실	243
5.3 수유실	249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255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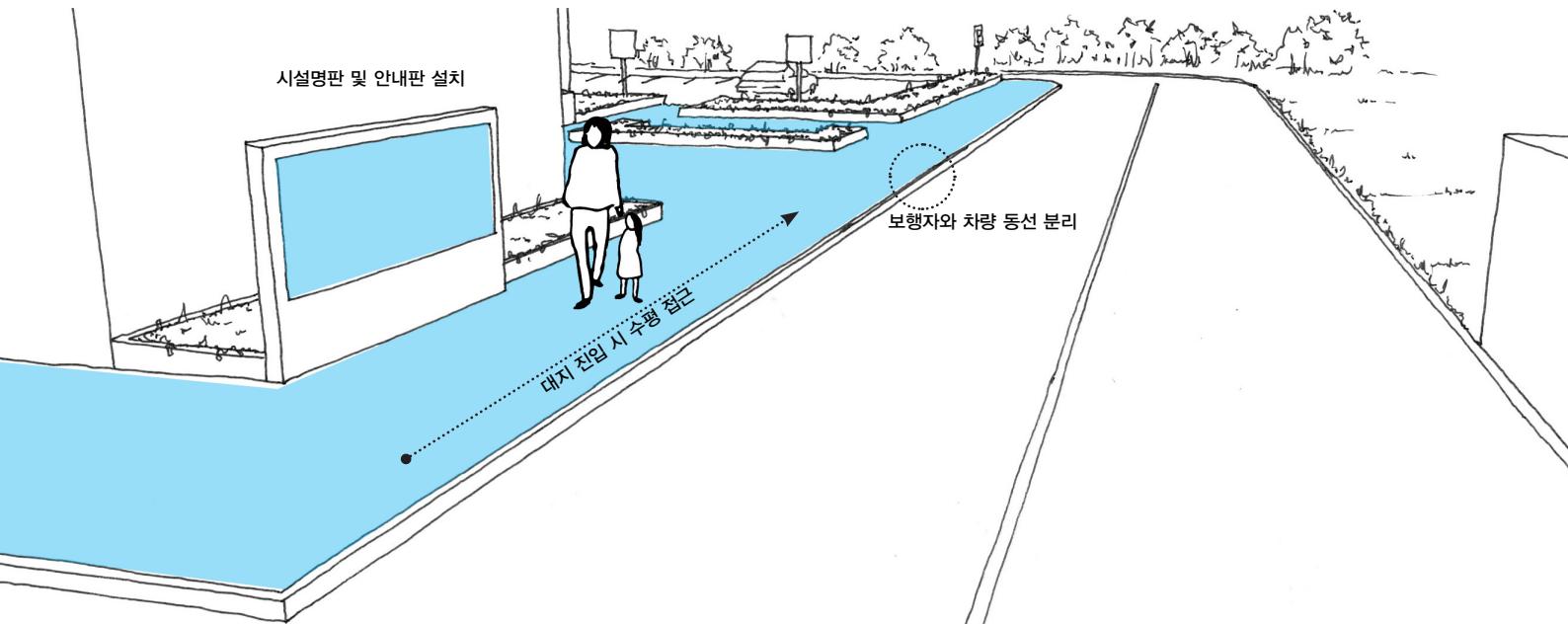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하도록 한다.
- 향후 모든 시민을 비롯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 적용공간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공간은 공공건축물을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공간으로 접근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을 그 정비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간별 기본지침과 세부 설치기준을 수립한다.
- 접근공간은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가로에서 출입구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대지 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 진입공간은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여 이용되는 공간으로 주출입구, 로비를 대상으로 한다.
- 이동공간은 로비에서 목적공간에 다다르기 위해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재 및 피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위생공간은 건축물 위생적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수유실, 욕실 · 샤워실을 대상으로 한다.



02  
접근공간

## 2.1 대지 출입구 > 기본지침

### 01

공공건축물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보행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지 출입구의 위치 선정

### 02

이용자가 도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대지 내 · 외부에 시설명판, 안내도, 출입구 사인 등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제공하는 연속성 있는 정보체계 설치

### 03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건축물은 폐쇄적인 담장이나 울타리 대신 식재 등을 이용하여 개방감 있고 친근함을 주는 옥외공간으로 디자인

### 04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한 대지 출입구 계획

### 05

보도와 대지 출입구와의 경계부분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 확보



## 2.1 대지 출입구 > 위치

### 알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

-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대지 출입구의 위치를 결정한다.
- 대지 출입구는 개방감이 있고 도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 체계와 연계한다.
- 대지 출입구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나 매표소 등의 위치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정문까지 이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후문 등 부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접근로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 가로와의 관계

- 인접 보도와 대지내 보행접근로와의 경계부분에는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
- 차량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접 보도에 높이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와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담장과 펜스의 설치를 지양하며, 안전 및 관리상 필요시에는 투시형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가 협소하더라도 주요도로나 보행로에 면하는 대지 외곽부분에는 시민들을 위한 쌈지공원, 친수공간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가로와 연계되는 계획을 권장한다.

I. 가로

II. 공원 · 광장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접근공간 03 진입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 참고자료



권장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된  
대지 출입구



권장

보도와 대지내 보행  
접근로와의 단차없는 경계

## 2.1 대지 출입구 > 안내

### 안내 및 유도

- 가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주변 환경과 독립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이나 대지 입구에는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는 시설 명판, 출입구 사인 등을 설치한다.
- 안내도에는 건축물까지의 거리나 소요시간을 표시하여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시설안내표지판의 설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주차장과 건축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 건축물까지의 접근경로 위에 대지전체 배치를 이해할 수 있는 안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차장출입구 등 진입을 위한 주요 장소나 사인의 설치만으로는 혼란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인적 서비스도 고려한다.
- 시설을 방문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하도록 한다.

I. 가로

II. 공원 · 광장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접근공간 03 진입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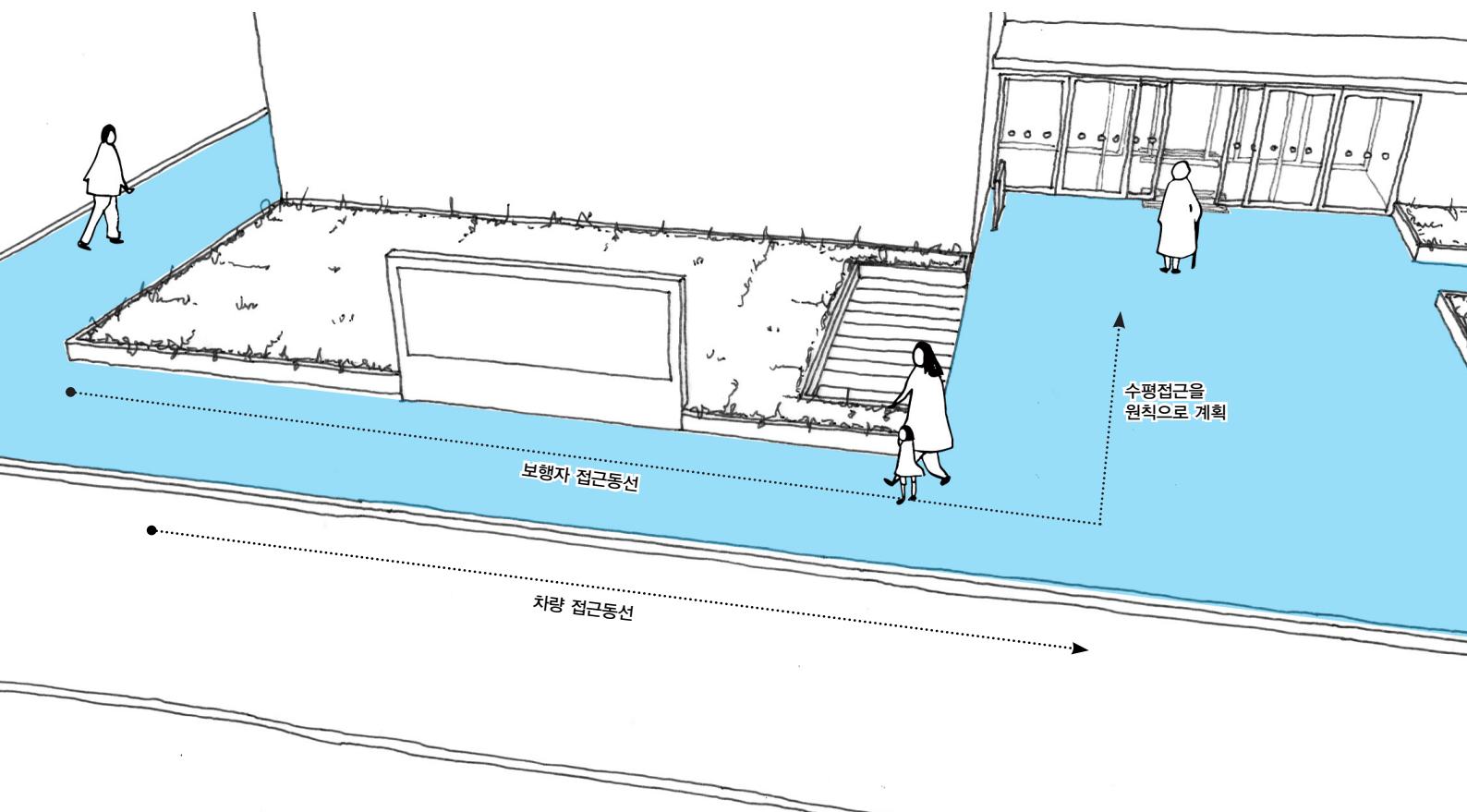
### 참고자료



광장

멀리서도 쉽게 인식되는  
독창성 있는 디자인의 시설  
명판





## 2.2 보행접근로 > 기본지침

### 01

비, 눈 등 악천후 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이동경로에 계단이나 경사로는 물론 작은 단차도 없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로 유효폭과 바닥 마감 등에 유의

### 02

보행접근로에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어 계단,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손잡이, 주의환기용 접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

### 03

건축물의 주출입구로 이어지는 보행접근로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자들이 이용하므로 차량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통로 확보

### 04

보행접근로에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을 설치하며, 에너지소비가 적은 LED 조명을 적극 활용

### 05

보행접근로 및 대지내 통로는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전한 피난통로가 되도록 계획



## 2.2 보행접근로 > 유효폭과 높이

### 유효폭

자세한 사항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보행안전구역의  
유효안전 높이의 최우수 기준  
2.5m 제시 참조

-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에 이르는 주요 보행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로 전체 구간에 걸쳐 유효폭을 2.5m 이상 확보한다. 편의
- 주요 보행접근로 이외의 대지내 통로는 유모차 동반자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해 다른 보행자가 비켜설 수 있도록 최소 1.2m 이상으로 하되, 휠체어의 방향 전환이 자유로운  $1.5m \times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내에는 가로등, 전주, 간판, 이동식 화분, 식재, 안내사인 등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편의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양측 가장자리는 시각장애인의 감지할 수 있도록 0.3m 이상의 색상, 질감 차이를 이용한 경고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건축

### 유효높이

- 우천시 등 우산을 쓰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행접근로의 상부에는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 가로수 나뭇가지나 안내사인 등의 상부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2.2 보행접근로 > 바닥마감

### 단차없는 접근로

-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부주의할 경우 작은 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접근로는 단차 없이 평坦하게 설치한다.
- 인터로킹 블록 등을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재 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유효폭**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8m 이상

- 법적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높이**

- 법적기준 : 최소 유효높이 2.1m 이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최우수 BF인증기준 : 보행안전구역 유효안전높이 2.5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참고자료****지양**

보행접근로의 불명확한 경계

**권장**

보행장애물이 없는 여유 있는 폭의 보행접근로

## 완만한 기울기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상하 기울기 1/24 이하, 좌우 기울기 1/50 이하로 설치한다. [편의]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30m마다 안전 및 휴식을 위해 1.5m × 1.5m 이상의 휴게참을 설치한다. [편의]

## 바닥포장재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한다.
-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은 무채색으로 한다.
- 보행접근로와 대지 내 차도의 바닥포장재는 질감과 색채를 달리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마감재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편의]
- 침수 및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보행접근로에는 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
- 인터로킹 블록 등 이음새가 있는 바닥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그 이음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줄눈간격은 0.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BF]

## 배수

-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
-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에 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배수로 덮개는 격자구멍 등의 틈새가 없는 것을 사용하며, [BF] 그 덮개의 마감재는 보행접근로와 동일한 재료를 권장한다.
- 배수로 덮개의 표면과 보행접근로 마감면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높이로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 [BF]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단차없는  
접근로

- 최우수 BF인증기준 :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 법적기준 : 단차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완만한 기울기

- 최우수 BF인증기준 : 기울기 1/24 이하

- 법적기준 : 기울기 1/18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포장재

- 최우수 BF인증기준 : 줄눈 간격 0.5cm 이하

배수

- 최우수 BF인증기준 : 구멍이 없는 배수로 덮개

- 법적기준 :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

**지양** 2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보행접근로



**권장** 단차가 전혀 없는 평탄한 보행접근로



**지양** 격자 간격 2cm 이상의 배수로 덮개



**권장** 간격이 좁고 바닥마감재와 높이가 동일한 배수로 덮개

## 2.2 보행접근로 > 보차분리

### 보차분리

- 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 보행접근로에 인접하여 대지내 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현의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 2.2 보행접근로 > 유도 및 안내

### 점자블록

자세한 사항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16.점자블록 항목 참조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점자블록 대신에 바닥포장재의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건축
- 계단 또는 경사로 등 바닥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과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에는 바닥재의 색상 또는 질감 차이 등을 이용한 경고장치를 설치한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제–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13 참조

- 사용자가 승강시설 및 이동시설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하여 이동을 위한 2차 경로안내를 표시한다.
- 건축물 내 이용가능한 이동설비를 진입부에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건축물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쉽도록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 필요에 따라 대지 출입구 부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승차대 등 대중교통수단의 위치를 알리는 주변안내도를 설치한다.

## I. 가로

## II. 공원 · 광장

##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접근공간 03 진입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보차분리

· 최우수 BF인증기준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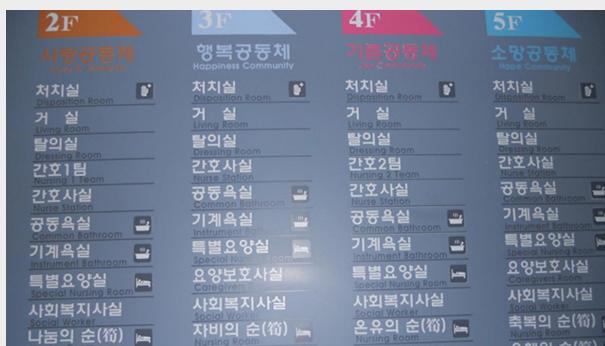
#### 권장

인접한 대지내 차로와 분리된 보행접근로



#### 권장

차량동선과 완전히 분리된 보행접근로



#### 지역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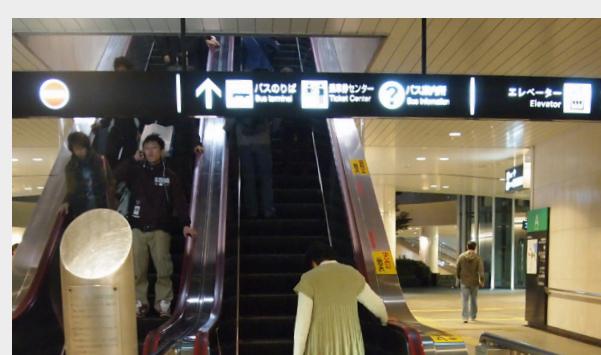
#### 권장

대지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인지하기 쉬운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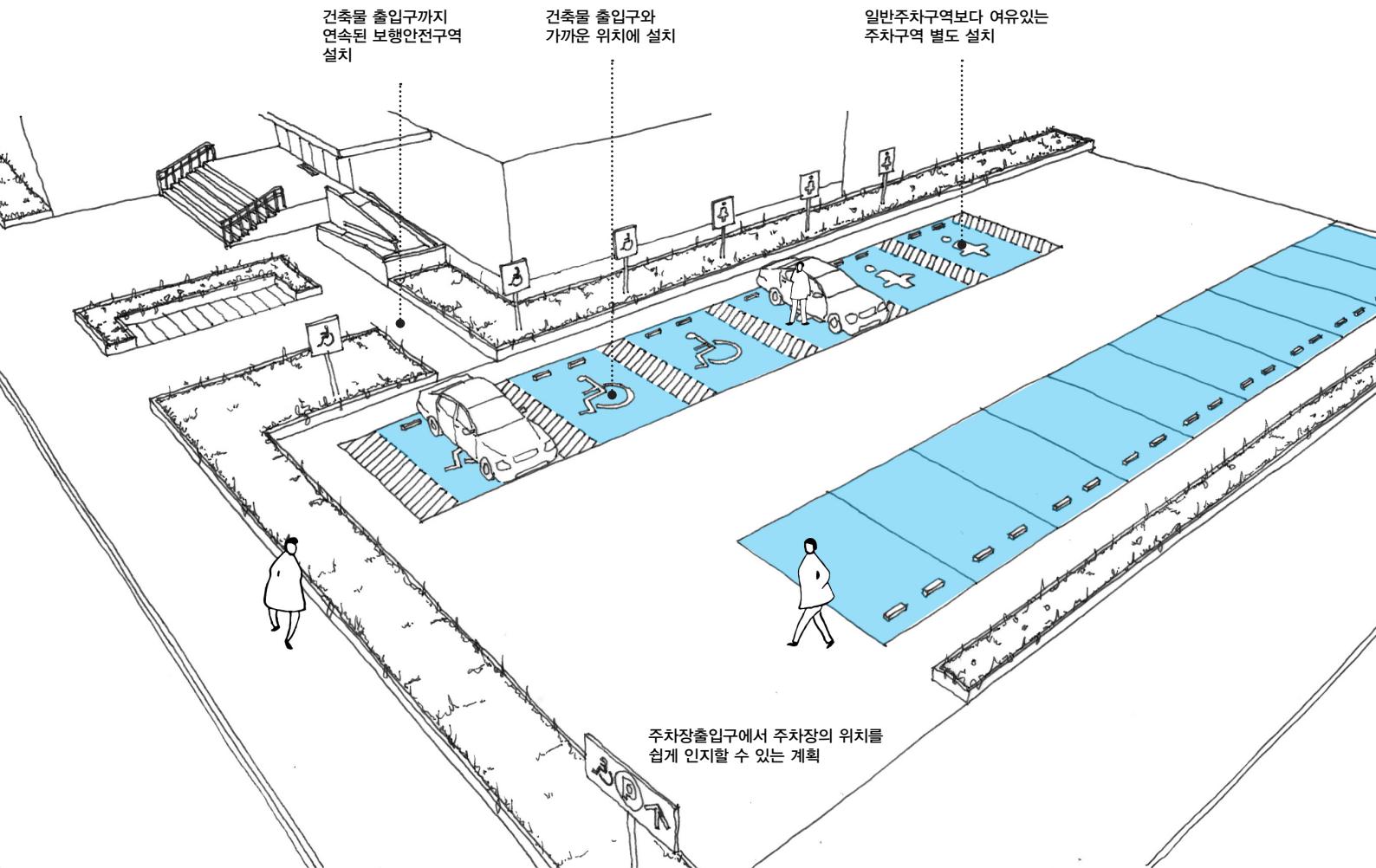
#### 권장

구조 및 각 공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눈높이 안내사인



#### 권장

에스컬레이터 진입부분에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표시



## 2.3 주차장 > 기본지침

### 01

주차장출입구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 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외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노인 등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일반주차구역보다 여유 있는 폭을 가진 주차구역을 가급적 별도 설치

### 03

주차장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보행안전통로 확보

### 04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이나 캐노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 05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 수립

### 06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2.3 주차장 > 위치

### 주차장출입구

-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의 대지 출입구 등 보행자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교통량 등 주변의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며, 가급적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주차장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눈에 띄어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보행자 및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진출 이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차단하는 식재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주차장 위치

- 외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가급적 건축물 전면부를 피하고, 보행접근로와 건축물 주출입구의 사이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급적 지하주차장 으로 계획한다.
- 주차장출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는 명쾌한 동선으로 차도를 계획하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표시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에 가깝게 설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도록 계획한다. 편의 건축
-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건축물 출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건축
- 설치된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방문객용, 직원용, 하역용 등의 주차장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방문객용 주차장은 건축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한다.

I. 가로

II. 공원 · 광장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접근공간 03 진입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 참고자료



권장

차도와 분리된 보행접근로



권장

인지하기 쉬운  
주차장출입구의 안내사인

## 2.3 주차장 > 주차구역

### 설치규격

- 일반주차구역은 최근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승, 하차할 수 있도록 폭 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편의
- 임산부, 영유아 등반자, 일시적인 부상자 등을 배려한 별도의 주차구역을 마련할 경우에는 차량 측면에 임산부나 유모차 등의 통행과 승하차를 위해 폭 0.8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차 구역의 크기는 폭 3.0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한다. 편의

### 바닥

-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 보행안전통로로 연결되는 경계부분은 단차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1/12 이하로 턱낮추기를 한다. 건축

## 2.3 주차장 > 유도 및 안내

### 유도 및 안내

- 장애물의 간섭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며 보행안전통로의 좌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0.3m 이상의 유도존을 설치한다. 건축
- 유도존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근에 턱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표현하며 보행장애물(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은 장애물존에 설치하여 보행안전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건축
- 필요에 따라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설치규격**

- 법적기준 : 폭 2.3m, 길이 5.0m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바닥**

- 법적기준 : 바닥면 기울기 1/50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권장**

여유있는 주차장 폭 확보

**권장**

알기 쉬운 지하주차장의 사인 및 색채계획

**권장**

알기 쉬운 지하주차장의 사인 및 색채계획

## 2.3 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차면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2면 이상의 복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규정비 100%를 초과하여 확보한다. BF

### 설치규격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및 유도 · 안내표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02.장애인전용주차구역,  
pp.16~20. 참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표시 세부기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목  
참조

### 유도 및 안내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를 설치함과 동시에 바닥 색상의 차별화 등을 통한 식별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유도표시를 설치한다. 편의 건축
- 대지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유도표시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편의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의 별도 주차구역을 마련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 해당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는 입식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설치한다. 편의 BF

### 보행안전통로

- 보행안전통로는 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 주출입구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주차면의 활동공간과 보행 안전통로와의 경계부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안전통로에는 바닥면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坦하게 마감한다. 편의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은 모든 구간에 걸쳐 폭 1.8m 이상으로 하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BF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높이,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은 “공공건축물–접근공간–보행 접근로” 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         |  |
|---------|--|
| 주차면수    | · 최우수 BF인증기준 : 규정비율의 100% 초과 확보  |
| 설치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 BF인증기준 : 폭 3.5m, 길이 5.0m</li> <li>· 법적 크기 : 폭 3.3m, 길이 5.0m<br/>(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
| 유도 및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의 위치 확인 가능,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설치,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연속적인 유도 표시 설치</li> </ul>                |
| 설치규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 BF인증기준 : 보행안전통로는 차량 간섭이 전혀 없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 주차면의 활동공간과 단차 없이 연결</li> </ul>                                    |
| 바닥      |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8m 이상   |

### 참고자료



권장

법적 기준에 맞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권장

주차구역 상부에 눈,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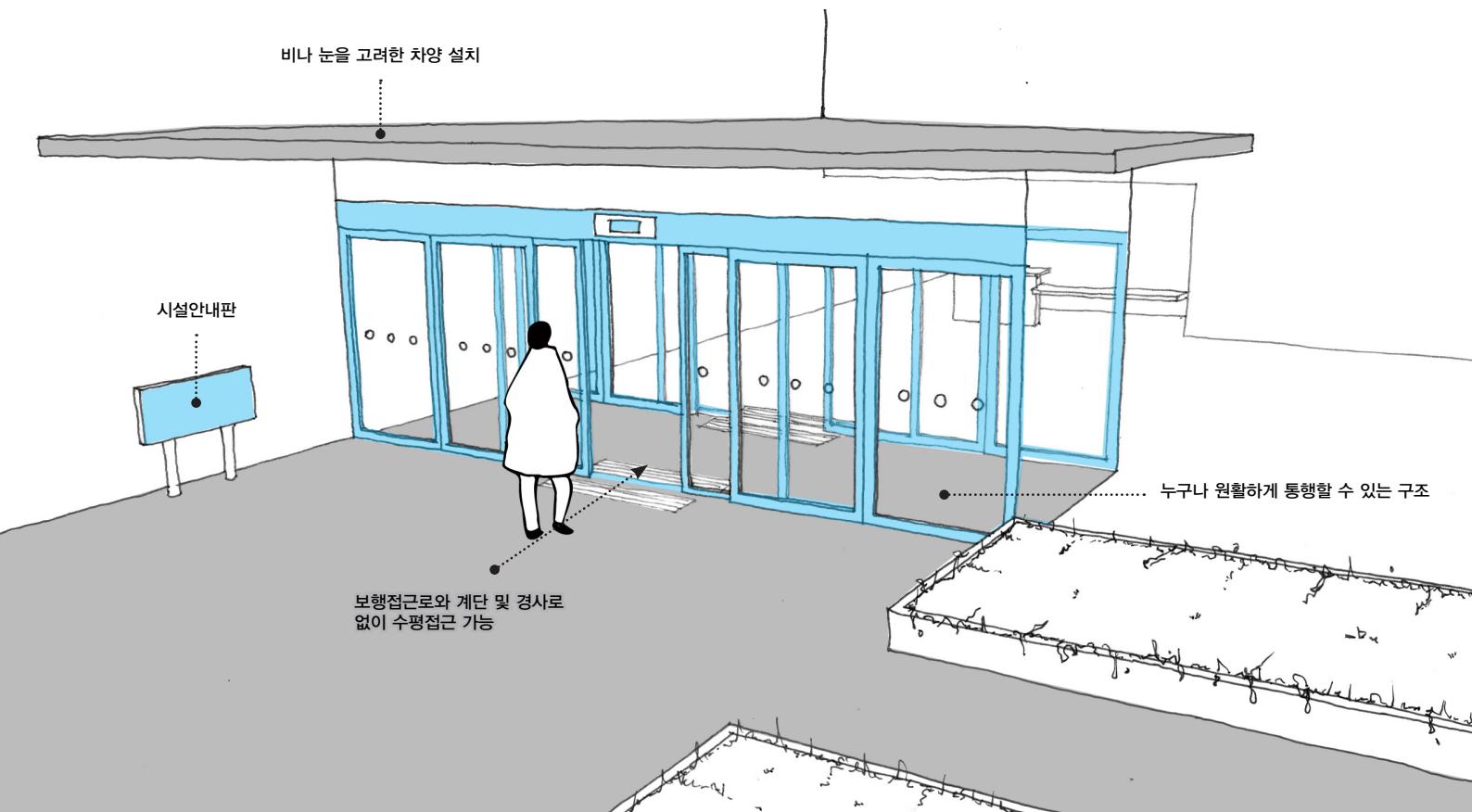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법



참고

평坦한 보행접근로와 연결되고 알기 쉬운 안내를 제공하는 주차구역



03

## 진입공간

### 3.1 주출입구 > 기본지침

**01**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는 계단이나 경사로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반자,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02**

주출입구의 옥외 전면공간에는 비나 눈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

**03**

주출입구의 출입문과 그 전 · 후면은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04**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목적 공간까지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설안내판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05**

주출입구는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계획

**06**

부출입구도 가급적 주출입구의 동일한 설치기준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 3.1 주출입구 > 위치 및 전면공간

#### 위치

- 주출입구의 위치는 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주출입구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안내데스크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쉬운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 야간에도 주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 전면공간

자세한 사항은

전면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 보행접근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수평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단자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는 주출입구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BF**
- 지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 높이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임산부, 유모차 동반자, 노인 등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단에 인접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
- 옥외 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며,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전면공간**

-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 없이 수평접근
- 법적 기준 : 단차 높이 2cm 이하,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 유효폭은 1.2m 이상, 손잡이는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계단과 경사로가 있는  
주출입구

**권장**

단차가 없고 누구나 인지 및  
접근하기 쉬운 주출입구

### 3.1 주출입구 > 주출입문

#### 형태

- 주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
-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및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
- 수동문이나 반자동문의 문손잡이는 휠체어 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0.8~0.9m 의 높이에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부착한다. 건축
- 자동문이 아닌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문 개폐가 용이하도록 반자동문의 베튼이나 문손잡이 쪽 옆에 최소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건축

####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자세한 사항은  
유효폭 및 전면유효거리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은 시설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므로 원활한 출입을 위해 1.2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 편의
- 부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8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 편의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미닫이문은 좌우폭 1.9m 이상, 깊이 1.2m 이상을 확보한다. 건축 편의
- 방풍실과 같이 출입문이 연속된 주출입구는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출입구 주변에 시각장애인용 시설종합안내판이나 우산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형태**

- 최우수 BF인증기준 : 자동문
- 법적 기준 : 회전문이 아닌 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면공간**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8m 이상  
\* 전면유효거리 : 문개폐에 소요되는 거리는 전면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 법적 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여닫이문을 설치한 주출입문  
여닫이문 설치로 출입이  
불편한 주출입구  
(출처:에이블뉴스)

**권장**

자동문을 설치한 주출입구

### 3.1 주출입구 > 유도 및 안전

#### 유도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유도 및 안내, 안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1~25  
참조

- 보행접근로와 높이 차이가 있는 주출입구에 부득이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부출입구를 훨체어 사용자 등의 출입 경로로 할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를 마련한다. **BF**
-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안내를 병행하도록 한다. **BF**
-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핵토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안전

- 주출입문 0.3m 전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색상 및 재질을 달리 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의 BF**
- 주출입구 외부 전면공간이 차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경우에는 경계부분에 안전펜스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주출입구 벽면을 유리로 계획할 경우 어린이는 유리창에 손을 댄 채 창밖을 보는 행태가 있으므로 문 경첩 부분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 미닫이문은 문짝과 문틀이 만나는 부분에 쿠션재 등을 설치하고 여닫이문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되는 도어체크 등을 설치한다. **편의**
- 강화유리문일 경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유리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수평띠나 인지하기 쉬운 주위환경기용 표식 등을 부착한다. **건축**

#### 인적서비스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요청 서비스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안전

-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구(문) 0.3m 전후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참고자료****권장**

연속성 있는 점형블록과  
음성으로 시각장애인 유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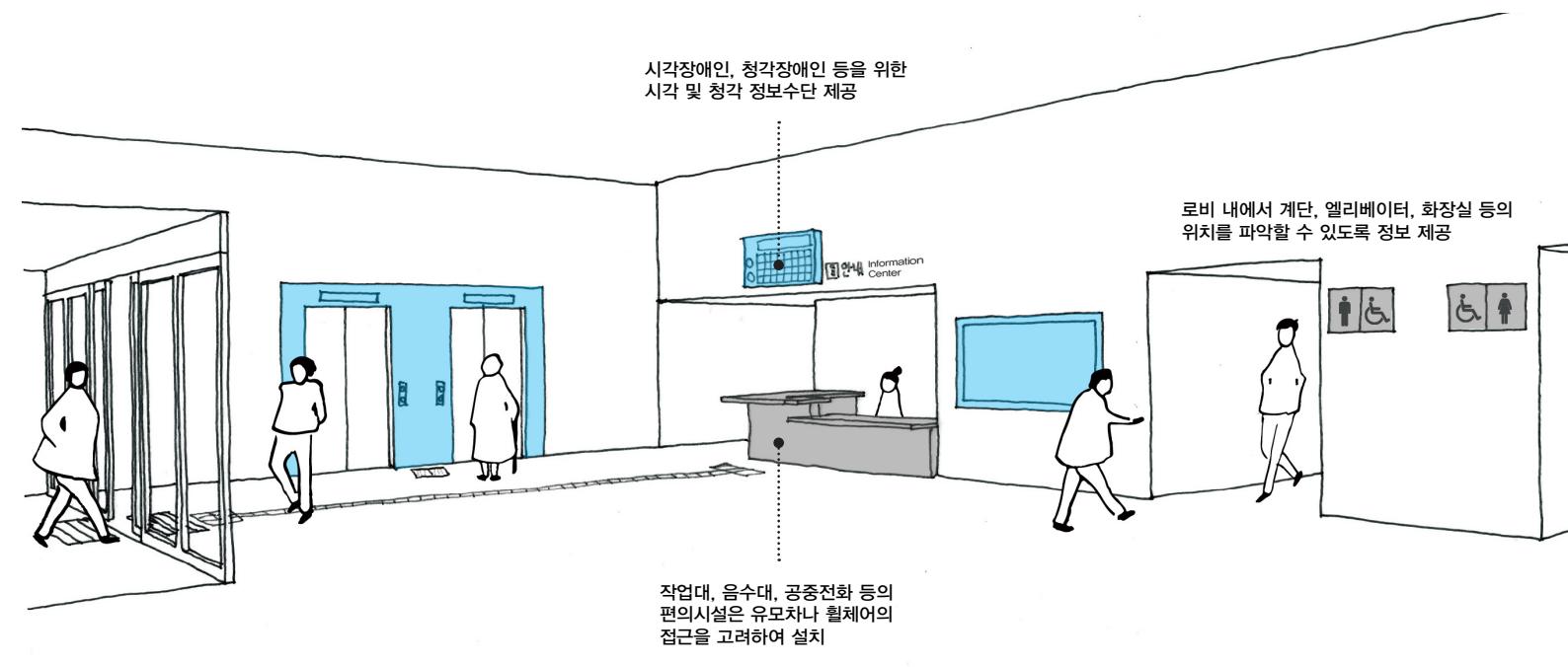
손 끼임 방지와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위 환기용  
표시 부착한 유리문

**권장**

출입 불가능한 범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용 난간  
설치

**권장**

주출입구에 인적 서비스 요청  
설비 설치



## 3.2 로비 > 기본지침

### 01

로비에 들어서면 한눈에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나 시설  
종합안내판 설치

### 02

처음 방문하는 사람일지라도 목적공간에 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안내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

### 03

로비는 개방감이 있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

### 04

로비에 설치하는 작업대,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은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은 물론 누구에게나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활동공간 확보

### 05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각 및 청각 정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

### 3.2 로비 > 접수 · 안내데스크 및 유도 · 안내

#### 위치

자세한 사항은  
안내데스크 및 접수대의  
형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90~92 참조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주출입문에서 잘 보이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하여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주출입문에서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까지의 접근 경로에는 단차 없이 수평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안내표시를 제공한다.
- 안내데스크는 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이 필요하다.

#### 안전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편의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과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눈높이가 동일하게 되는 구조를 권장한다.
- 시설용도에 따라 어린이나 노인이 의자에 앉아 기록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높이 0.8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팡이, 우산을 걸 수 있는 흠틈이나 걸이대, 가방이나 짐 등을 잠시 둘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한다. BF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몸을 지지하기 쉬운 형상으로 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유도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유도 및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93,  
pp.101~105 참조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필기구를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설비, 난청인을 위해 진동호출기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BF
- 음성안내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하여 문자안내를 병행 한다. 건축
- 시각 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음향유도장치와 음성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한다. 건축
-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사인이나 문자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적 대응도 가능하도록 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위치

- 최우수 BF인증기준 :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 형태

-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구(문) 0.3m 전후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 시각장애인

#### 유도 · 안내설비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 이내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음성안내장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 유도신호장치 : 음향 · 시각 ·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권장**

한눈에 알기 쉬운 공간 구조의 로비 : 덴마크



**권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내데스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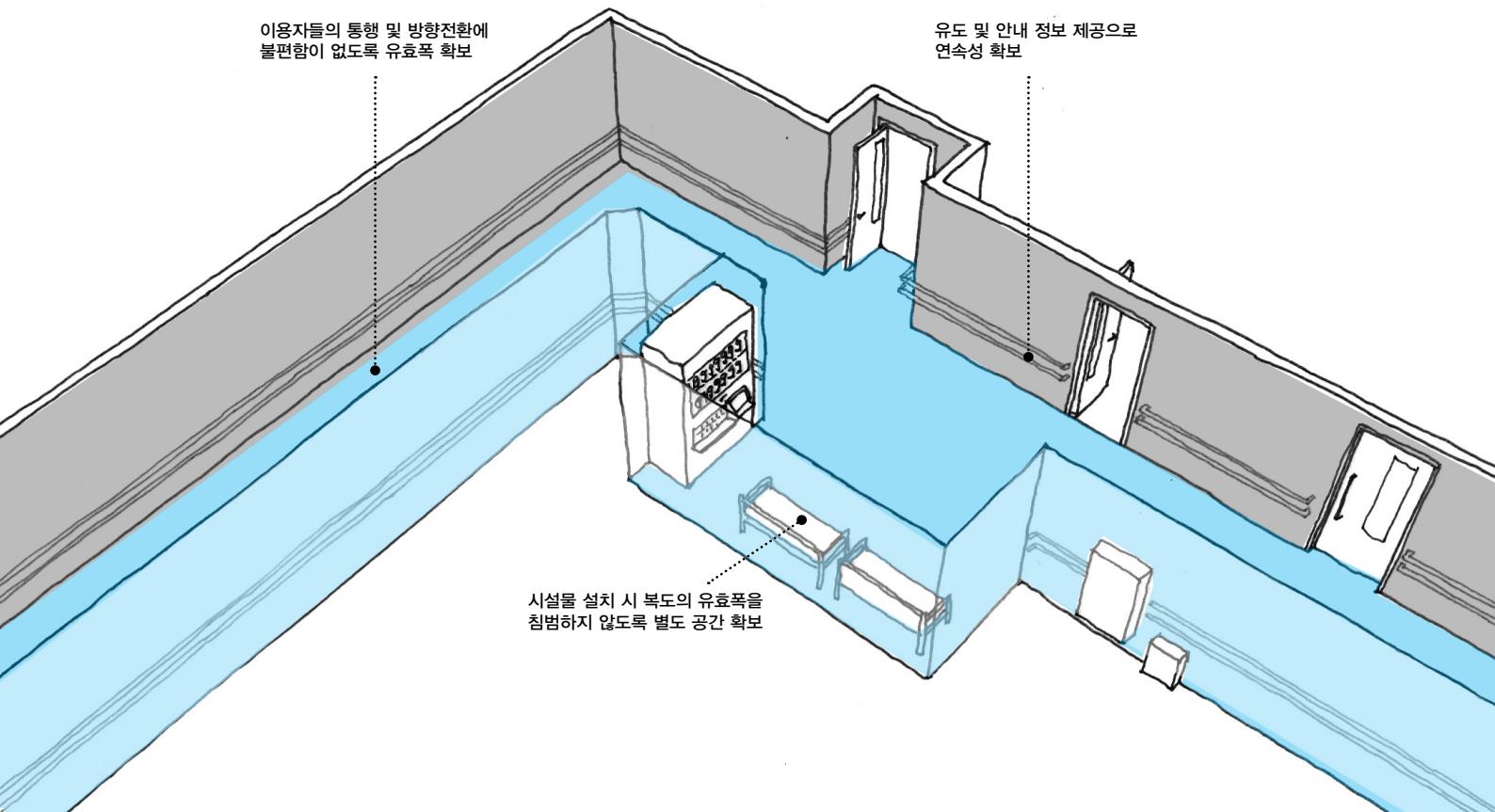
**권장**

다양한 높이의 작업대



**권장**

다양한 시각 및 청각정보를 제공하는 로비



04

## 이동공간

### 4.1 복도 > 기본지침

**01**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 조건이나 동작을 고려하여 계획

**02**

각 공간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므로 이용자들의 통행 및 방향 전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충분한 폭을 확보

**03**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명쾌한 동선으로 계획

**04**

적재적소에 유도 및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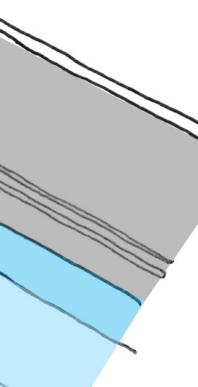
층별 또는 조닝별로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나 공간 연출을 달리하여 이용자가 시설 내 위치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

**06**

이용자가 이동 중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차가 없고 통행하기 쉬운 바닥마감재를 선정하며, 복도에 어두운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채광 및 인공조명계획 수립

**07**

복도에는 기둥이나 벽면돌출, 장식물이나 소화설비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계획



## 4.1 복도 > 유효폭 및 보행장애물

### 유효폭

-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BF
-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교행할 수 있는 1.8m 이상 확보한다. 건축
- 복도의 모퉁이는 이용자가 방향 전환하기 쉽도록 벽 모서리를 0.3m 이상 사선 방향 또는 둥글게 면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 보행장애물

자세한 사항은  
보행장애물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2~38 참조

- 복도 벽면에는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하고, 의자, 자동 판매기 등이 복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한다. 건축
- 복도 유효폭 이내에는 높이 2.1m 이내에 안내사인이나 장식 등의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BF
- 높이 2.1m 이내에 계단하부 등의 보행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이나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편의
- 휠체어 사용자가 많은 시설은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의 높이에 키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유효폭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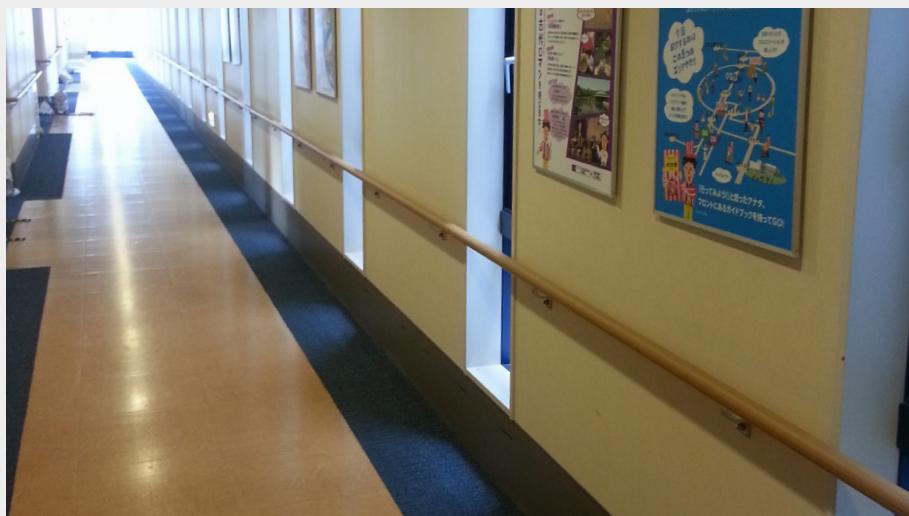
·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확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장애물

- 최우수 BF인증기준 : 벽면에 돌출물 및 설치물과 바닥 이동장애물 설치 지양, 킥플레이트 설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
- 법적 기준 : 높이 2.1m 이내, 벽면에서 돌출폭은 0.1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법적 유효폭은 확보하였으나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복도

**권장**

보행영역의 바닥마감재를  
달리하여 보행유도 및  
실내출입구 위치를 알려주는  
복도

## 4.1 복도 > 마감

### 바닥

자세한 사항은

바닥 및 벽 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2~38 참조

- 임산부, 어린이, 노인, 보행장애인 등은 작은단차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크므로,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 바닥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올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건축
- 지팡이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모가 지나치게 긴 양탄자는 지양한다. 건축
-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포장재와 시각 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포장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공간은 바닥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복도공간으로 연출한다.
-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이나 패턴의 바닥 마감은 지양한다.

### 벽

- 벽 마감재는 손으로 만져도 촉감이 좋고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 벽면에 요철 등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인지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건축
- 벽이나 바닥마감재의 재질이나 색상 등을 충별이나 영역별로 달리하여 건축물 내 사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축
- 출입구의 위치와 공간구성을 알기 쉽게 색채, 마감, 안내표지를 계획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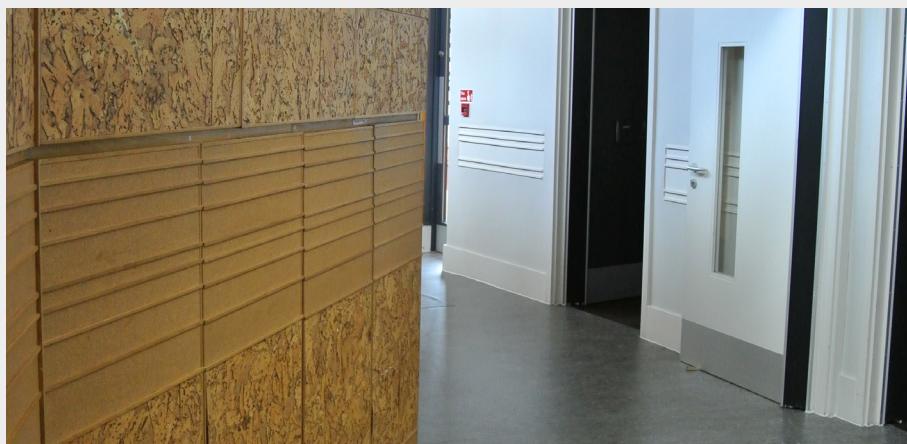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가 전혀 없음. 미끄럼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 최우수 BF인증기준 :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 법적 유효폭 기준 : 높이 차이가 없음. 미끄럼지 않는 재질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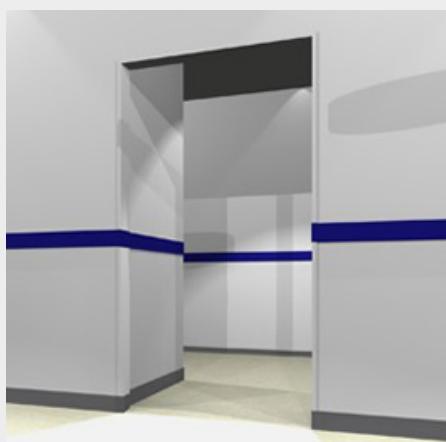
#### 권장

영역별 바닥마감재 패턴을  
달리한 변화감 있는 복도



#### 권장

요철 등으로 이동 방향을  
유도하는 벽면 마감



#### 권장

색, 패턴, 재료 등을 활용하여  
공간의 깊이 및 출입구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벽면  
마감

#### 권장

바닥, 벽, 조명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각  
출입구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마감

## 4.1 복도 > 손잡이

### 설치방법

자세한 사항은  
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71~7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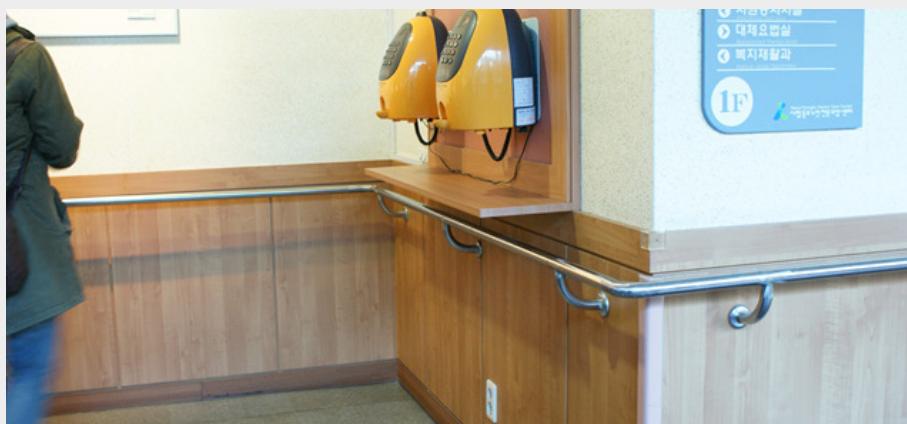
- 어린이, 노인, 임산부,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조건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2단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손잡이는 진행방향, 몸의 균형유지, 보행보조, 추락방지 등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치, 형태, 설치방법을 결정한다. 건축
- 손잡이는 반드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방화문 등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기구나 설비 점검문 등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 방법에 유의한다. 편의
- 몸의 균형유지 및 추락방지를 위해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편의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면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건축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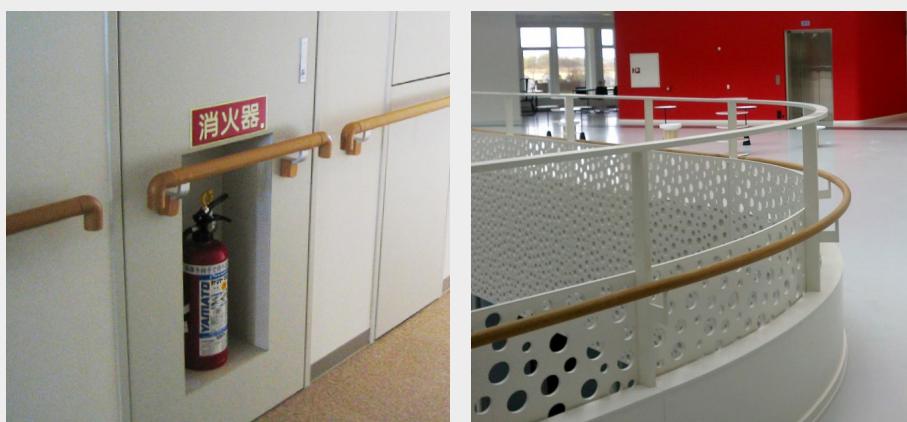
-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의 원형 단면으로 한다. 편의
- 손잡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은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래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손잡이는 상하 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편의
- 손잡이의 재질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사용하기에 좋도록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제를 지양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로 설치한다. 건축
- 2단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하단손잡이의 벽과의 이격거리는 손잡이 직경의 1/2를 더하여 상단손잡이보다 복도측으로 내밀게 설치하는 것이 하단 손잡이를 움켜잡기에 용이하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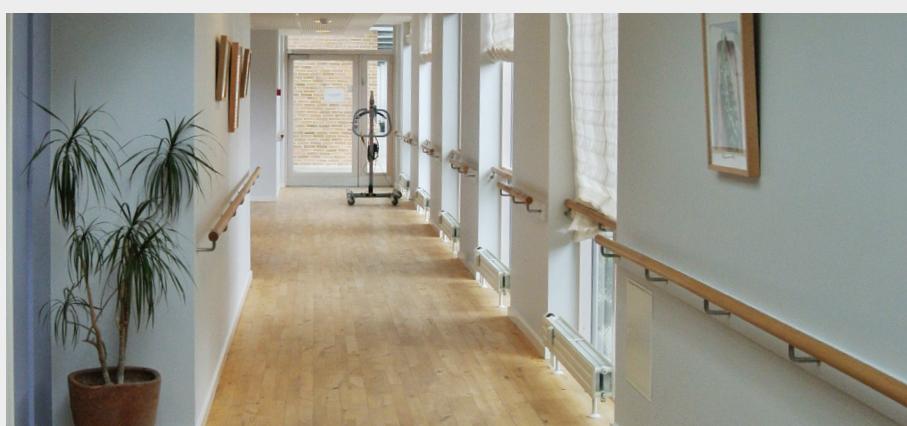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연속 손잡이 설치, 점자표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사용
- 법적 기준 : 상단손잡이 높이 0.8~0.9m, 하단손잡이 높이 0.65m 내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적 기준 : 손잡이 직경 3.2cm~3.8cm, 벽과 손잡이와의 간격 5cm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태****참고자료****지양**

차가운 느낌을 주는 금속제의 손잡이

**권장**

따뜻함을 주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손잡이, 손잡이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화기 매입 설치

**권장**

따뜻함을 주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양방향 손잡이 설치

## 4.1 복도 > 유도 및 안내

### 동선

-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하며,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축
-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원형 또는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구조일 경우, 시각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방향 전환이 적은 복도로 계획하여 사용자의 이용을 배려한다. 건축

### 유도 및 안내

-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목적지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시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명기나 핏포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 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도록 한다.
-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복도로 하여 자연 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 계단 시작과 끝지점 · 장애인용승강기 조작기 · 화장실표지판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 설치한다. 편의

### 조명

-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I. 가로

II. 공원 · 광장

III. 공공건축물

01 적용범위 02 접근공간 03 진입공간 04 이동공간 05 위생공간

### 참고자료



권장

방향성이 있는 바닥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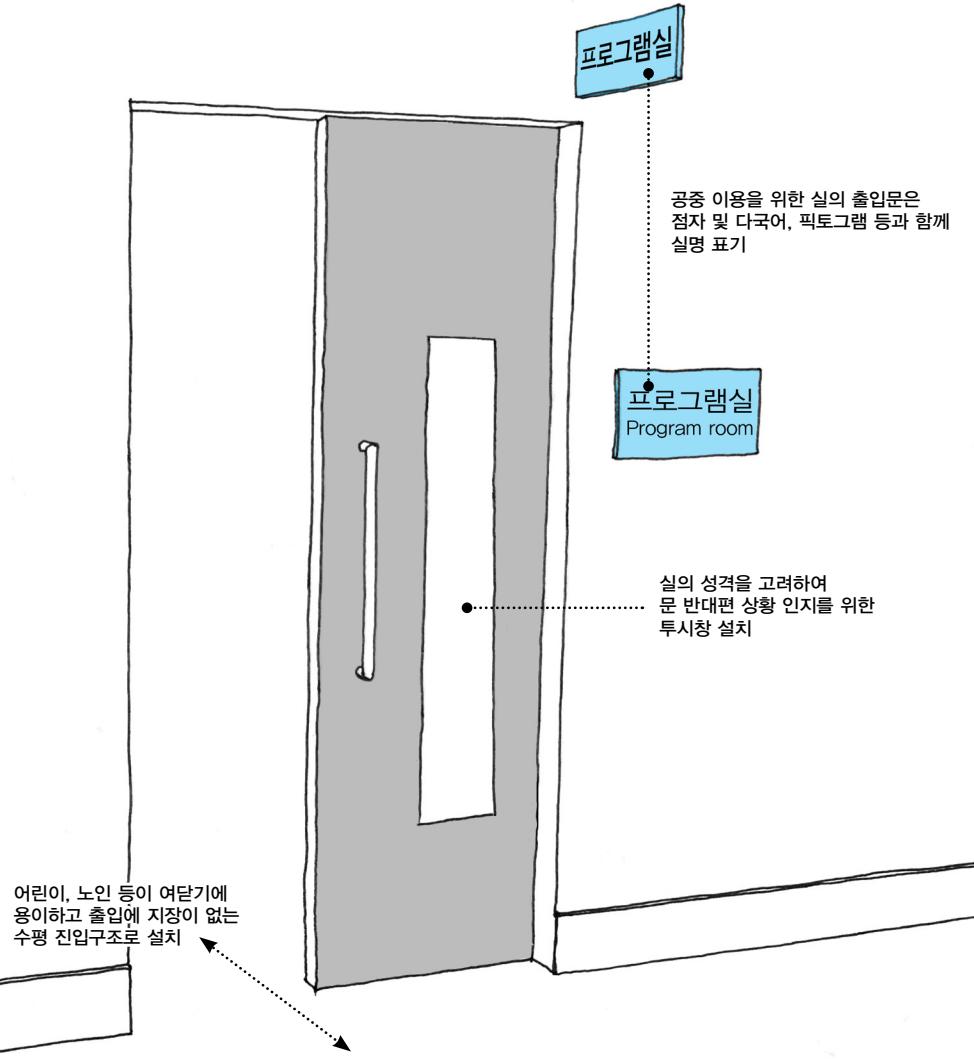
권장

목적공간까지 유도하는 알기 쉬운 안내사인



권장

조명 및 벽체 색상을 활용한 유도 및 안내



## 4.2 실내출입문 > 기본지침

### 01

각 실의 출입문은 어린이, 노인 등이 문손잡이를 잡고 여닫기에 용이해야 하며, 출입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폭, 구조, 단차 등에 대한 배려 필요

### 02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이 문의 출입하는 행태를 고려하여 전·후면 유효거리 및 활동공간 등이 확보된 출입문 설치

### 03

열린 출입문이 통로를 차단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 설치

### 04

공중 이용을 위한 실의 출입문은 설명을 표기한 표지판에 부착하며, 점자 및 다국어 표기, 픽토그램 등을 통한 적절한 정보 제공

## 4.2 실내출입문 > 형태

### 문의 형태

자세한 사항은  
문의 형태 및 문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 실내출입문은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며, 민원실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F
- 자동문은 훨체어 사용자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편의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고,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
-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한다. 건축
-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은 유리면 충돌 방지를 위해 주의환기용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인다. 건축
- 실을 출입하는 사람과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실내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한다.

### 문손잡이

-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어린이 등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를 설치한다.
- 문손잡이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편의

## 4.2 실내출입문 > 문의 구조

### 단차

- 실내출입문 바닥면에는 훨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출입과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흄과 같은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문의 형태**

- 최우수 BF인증기준 : 미닫이문, 여닫이문, 자동문

**법적 기준 : 회전문 금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손잡이**

- 법적기준 : 문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주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출입문

**권장**

내부 상황을 알 수 있게  
투시창이 설치 된 출입문,  
아래는 휠체어 사용자에 의한  
손상방지 처리

**권장**

투시창과 손 끼임 방지 처리  
된 출입문

## 유효폭

자세한 사항은  
유효폭 및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 출입문의 폭보다 통과 유효폭이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효폭을 확보한다. 건축
- 임산부, 노인, 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BF
-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훨체어의 회전범위가 켜져 오히려 불편하므로 지나치게 큰 폭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건축

## 전·후면 유효거리

- 휠체어 사용자 등의 용이한 문 개폐를 위해 모든 실내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을 확보하며, 문의 개폐에 소용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편의 BF
-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 미닫이문, 반자동문의 경우,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문 손잡이와 터치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측면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 4.2 실내출입문 > 유도 및 안내

### 유도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유도 및 안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26~31 참조

- 실내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의 복도 손잡이에 설명을 점자표기하고, 하부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편의
- 실내출입문의 복도측 전면에 시각장애인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를 달리 할 수 있다. 편의
- 문손잡이 측의 벽면에는 바닥에서 1.5m의 높이에 실명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및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편의
- 돌출형 실명표지판을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복도의 보행장애물 범위인 높이 2.1m 이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도록 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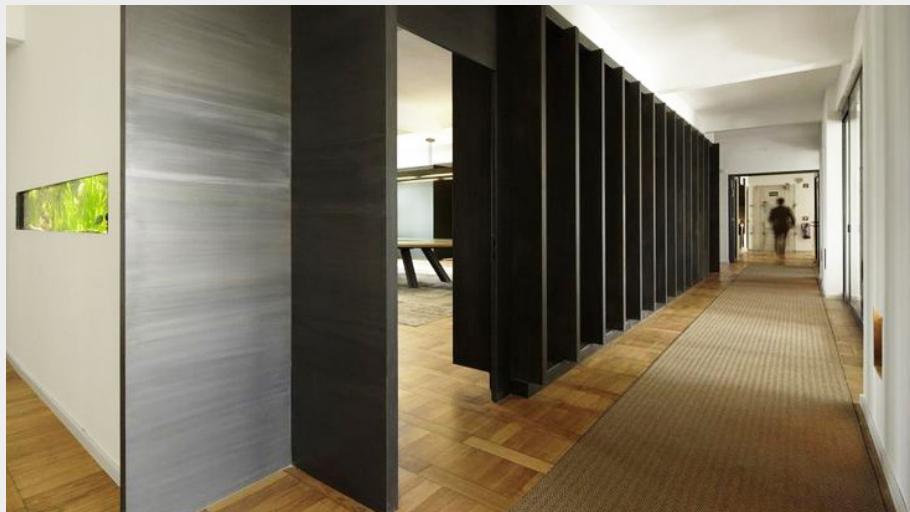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단차 전혀 없음
- 법적 기준 : 단차 2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폭**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0m 이상
- 법적 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 · 후면****유효거리**

- 최우수 BF인증기준 : 주출입문의 전면유효거리\* 1.8m 이상
  - 법적 기준 : 전 · 후면 유효거리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전면유효거리 : 문개폐에 소요되는 거리는 전면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않음

**참고자료****권장**

문턱이 없고 복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실내출입문

**참고**

측면 활동 공간 미확보로  
자동 개폐버튼 설치

**권장**

여유있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확보한 출입문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유도 및 안내     · 법적기준 :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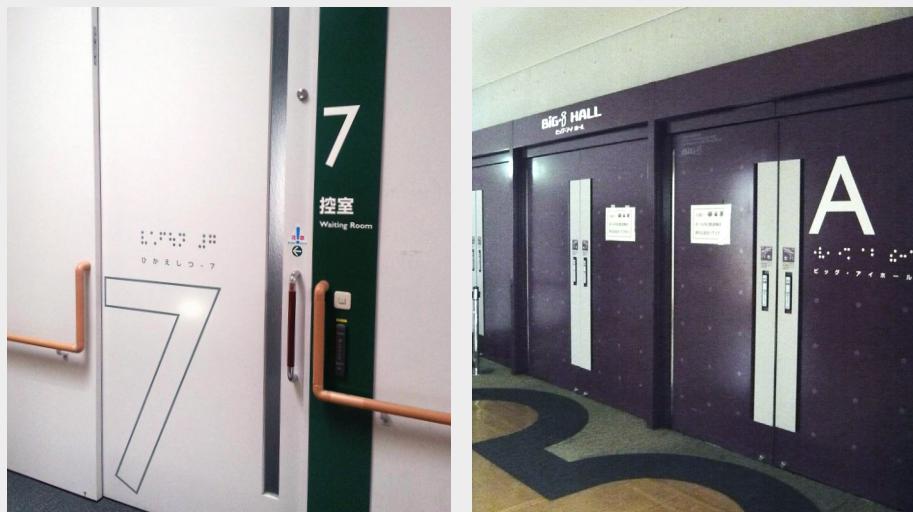
### 권장

출입문과 벽의 색채대비로  
인지성 향상



### 권장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기  
쉬운 실내출입문의 사인



## 4.3 경사로 > 기본지침

### 01

수평이동경로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축물 구조상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평이동동선 내에 높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경사로 설치

### 02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통행하기 적합한 위치, 기울기, 폭, 바닥마감, 휴식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

### 03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위하여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

### 04

건축물 주출입구 등 건축물 외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상부에 햇볕,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05

실내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대피로로 사용하기에 배연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별도의 피난대책 수립

## 4.3 경사로 > 형태 및 구조

### 형태

- 경사로는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이동을 위하여, 방향 전환 없는 직선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효폭 및 기울기

-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게 폭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BF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는 없어야 한다. BF
- 기울기 1/18의 범위를 초과하는 충간 이동경사로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길게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너무 완만한 경사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 BF

### 활동공간 및 휴식참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39~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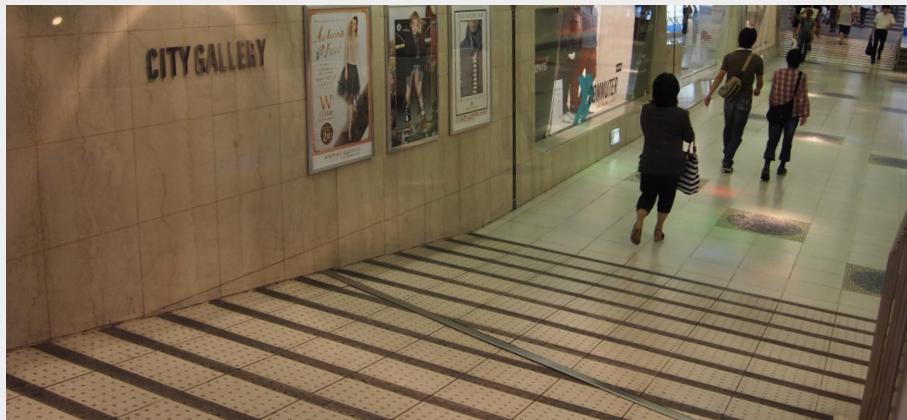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굽절 부분, 휴식참에는  $1.5m \times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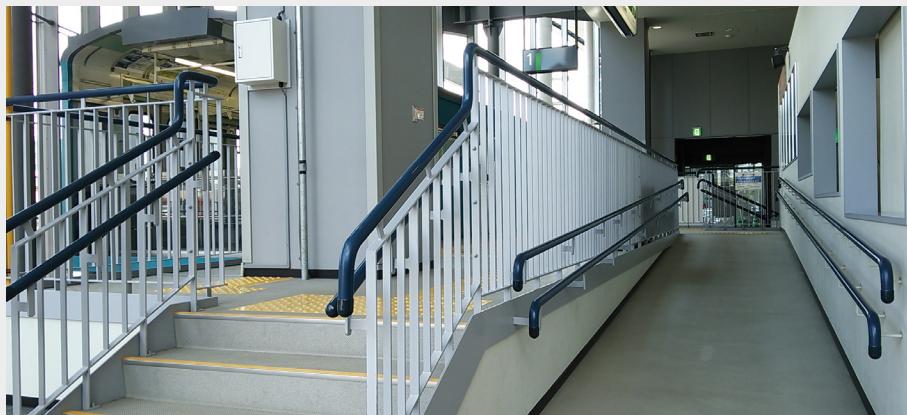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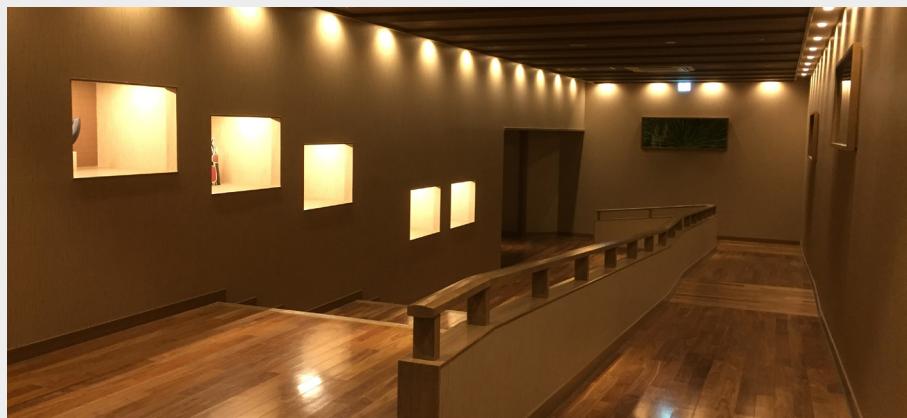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효폭 및  
기울기**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기울기 1/180이하
- 법적 기준 :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경사로만 설치한 통로

**권장**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권장**경사로에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

## 4.3 경사로 > 안전 및 안내

### 마감

자세한 사항은

마감 및 안내표시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39~42 참조

-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의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올림이 적은 마감재를 사용한다. BF
- 옥외에 설치되는 경사로는 비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용 타일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편의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굴절지점, 휴식참은 약시자가, 노인, 어린이 등이 수평 부분과 경사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 질감 등을 달리한다.
- 경사로 양측면에는 훨체어나 유모차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 편의 BF
- 훨체어나 유모차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하여 벽면에 충격 완화용 매트를 부착할 수 있으며, 매트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룬 재질이나 색상으로 마감 한다. 편의

### 손잡이

기타 손잡이 설치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1~7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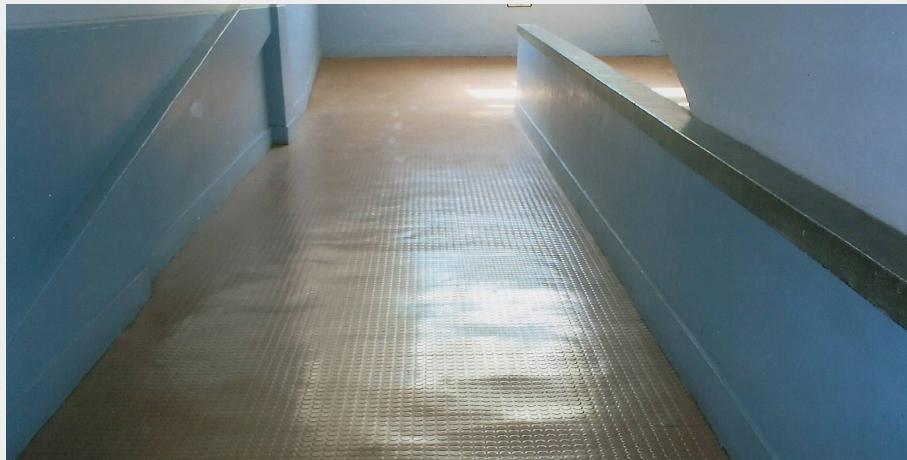
- 주변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 및 명도 차이가 명확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2단 연속손잡이를 설치한다. BF
-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BF

### 안내표시

-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 안내하는 표시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건축
- 훨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로,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분리하여 유도하고 유효폭이 1.5m 이하인 경사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건축
- 경사로 이외의 접근로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휴식참 등에는 경고용 바닥포장재를 0.3m 이상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손잡이**

- 법적기준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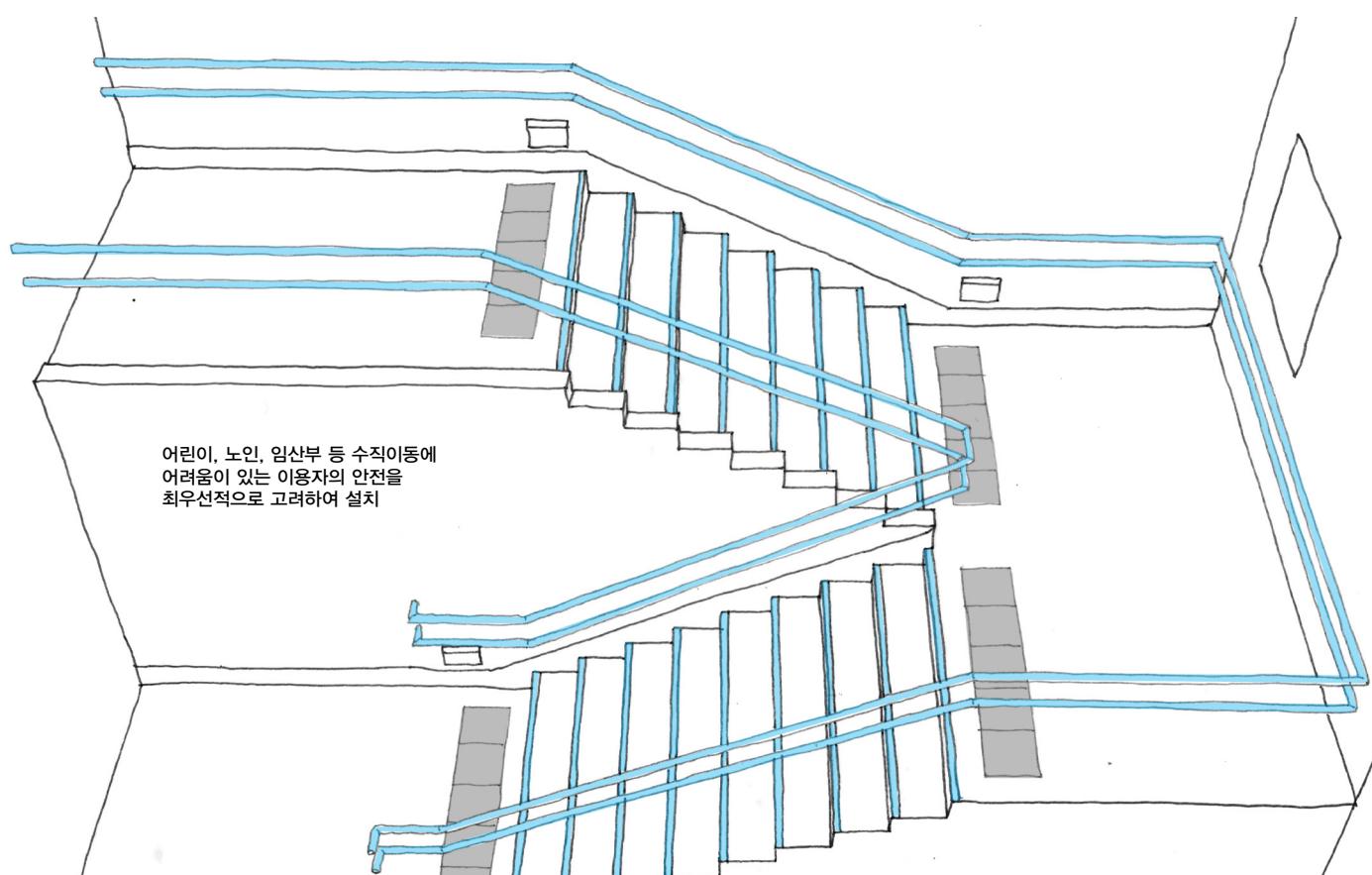
심미성과 안전성이 미비한 경사로

**권장**

미끄럼지 않는 바닥면과 연속손잡이로 안전한 경사로

**권장**

2단 손잡이와 조명, 미끄럼 방지 처리한 바닥면의 경사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수직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4.4 계단 > 기본지침

### 01

계단은 휠체어 사용자를 제외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수직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설치

### 02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안전한 피난 동선으로 활용되도록 설치

### 03

불규칙한 챕면의 높이 차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주원인이 되므로, 하나의 계단에서 디딤판 · 챕면의 치수가 도중에 바뀌지 않게 동일하도록 설치

### 04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디딤판이나 계단코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

### 05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계단 손잡이는 어린이, 노인 등 신체조건이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

## 4.4 계단 > 형태

### 형태

자세한 사항은

형태 및 휴식참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43~49 참조

- 계단은 평상시 충간이동에 유용한 공간이면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이동경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건축**
- 일정한 진행방향과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이 실족하기 쉬운 돌음 또는 나선형 계단은 지양한다. **건축**

### 휴식참

- 노인, 임산부 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잠시 휴식할 수 있고, 실족 시에 계속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계단 중간에 휴식참을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
- 계단의 휴식참은 높이 1.8m 이내마다 설치하며, 수평면으로 된  $1.5m \times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 계단참을 기준으로 상하 계단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에 최우선적인 배려이며, 일정한 진행 방향과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구조는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에게 화재 시 최우선의 안전장치이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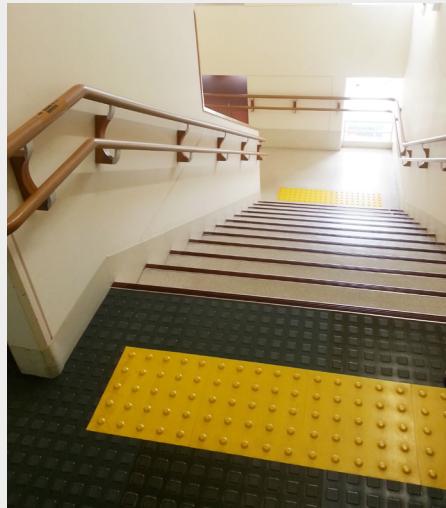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직선 또는 꺾임 형태의 계단, 1.8m마다 휴식참 설치

**휴식참**

- 법적기준 : 높이 3.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건축법 시행령)

**참고자료****지양**

계단폭이 고르지 않아서  
실족의 위험이 높음

**권장**

계단실 진입 시 곧바로 하향 계단을 만날 경우, 비상대피 또는 색약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상향 계단 설치

**권장**

규칙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꺾임형 계단

## 4.4 계단 > 구조

### 유효폭, 유효높이

- 계단의 유효폭은 2명이 여유 있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1.5m 이상으로 확보한다. BF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머리가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한다. 편의

### 디딤판 · 챠면

자세한 사항은  
디딤판 · 챠면, 계단코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인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43~49 참조

- 계단 안전치수(챙면+디딤판=46cm)는 챠면과 디딤판의 비례로 결정된다. 건축
- 한 개의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챠면 높이가 도중에 바뀌게 되면 넘어지는 주 원인이 되므로, 균일한 치수로 하여야 한다. 편의
- 디딤판 너비는 28cm 이상, 챠면 높이는 18cm 이하로 하되, 가급적 어린이, 노인 등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디딤판 너비는 30cm 이상, 챠면 높이는 16cm 이하로 한다. 편의 건축
-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챠면을 설치한다.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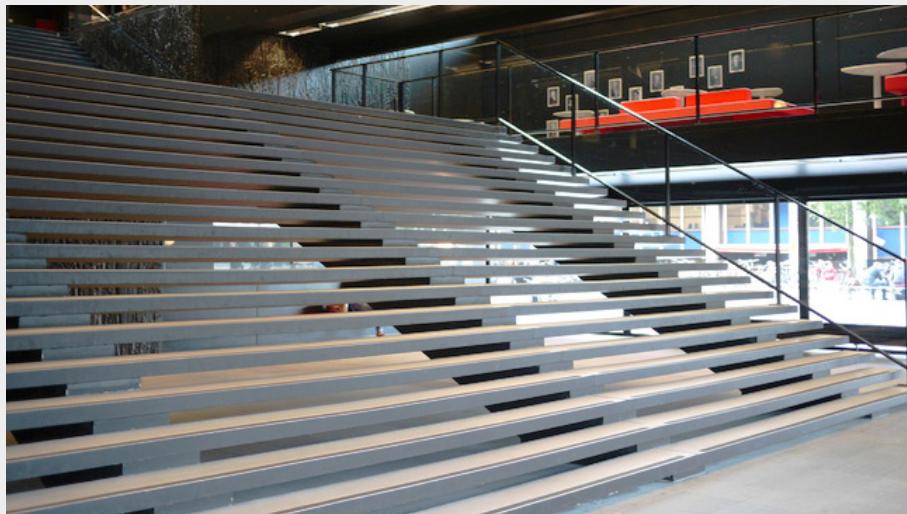
### 계단코

- 계단코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건축
- 디딤판의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챠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circ$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 되어서는 안 된다. 편의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                   |   |
|-------------------|---|
| 유효폭,<br>유효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우수 BF인증기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li> <li>법적기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옥외계단 0.9m 이상<br/>(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
| 디딤판 ·<br>챌면 · 계단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드시 챌면 설치</li> <li>디딤판 너비 0.28m 이상, 챌면 높이 0.18m 이하</li> <li>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li> <li>챌면의 기울기 <math>60^{\circ}</math> 이상, 계단코 3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됨<br/>(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

### 참고자료



**지양**

디자인이 강조된 챌면이 없는 계단



**권장**

디딤판과 챌면의 차수가 균일하고 인지하기 쉬운 계단

## 4.4 계단 > 안전 및 식별

### 바닥마감

자세한 사항은

바닥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43~49 참조

- 바닥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럼지 않으며, 단단히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편의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편의
- 디딤판, 챠면, 계단코는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 · 명도 · 채도,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 건축
-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판 및 계단코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재료 및 색상을 달리하여야 하며,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하도록 한다.

### 조명

- 에너지 절감과 쾌적함을 위해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측창이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야간에도 발을 헛딛지 않도록 천장 조명, 발밀 조명, 비상용 조명 등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여 디딤판과 챠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계단 조명의 조도는 150lx 이상을 확보하여 약시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 한다. 건축

### 난간 및 손잡이

자세한 사항은

기타 손잡이 설치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1~74 참조

- 계단의 측면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2단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양쪽 측면에 모두 설치한다. BF
- 계단의 측면에 벽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손잡이 지지대의 사이 간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바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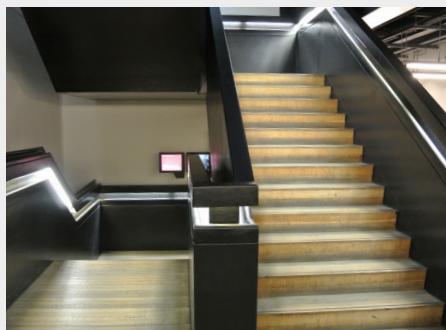
- 법적기준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난간, 손잡이**

- 난간 법적기준 : 계단 측면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난간하부에 바닥면에서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손잡이 법적기준 : 계단 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굽절부분에는 충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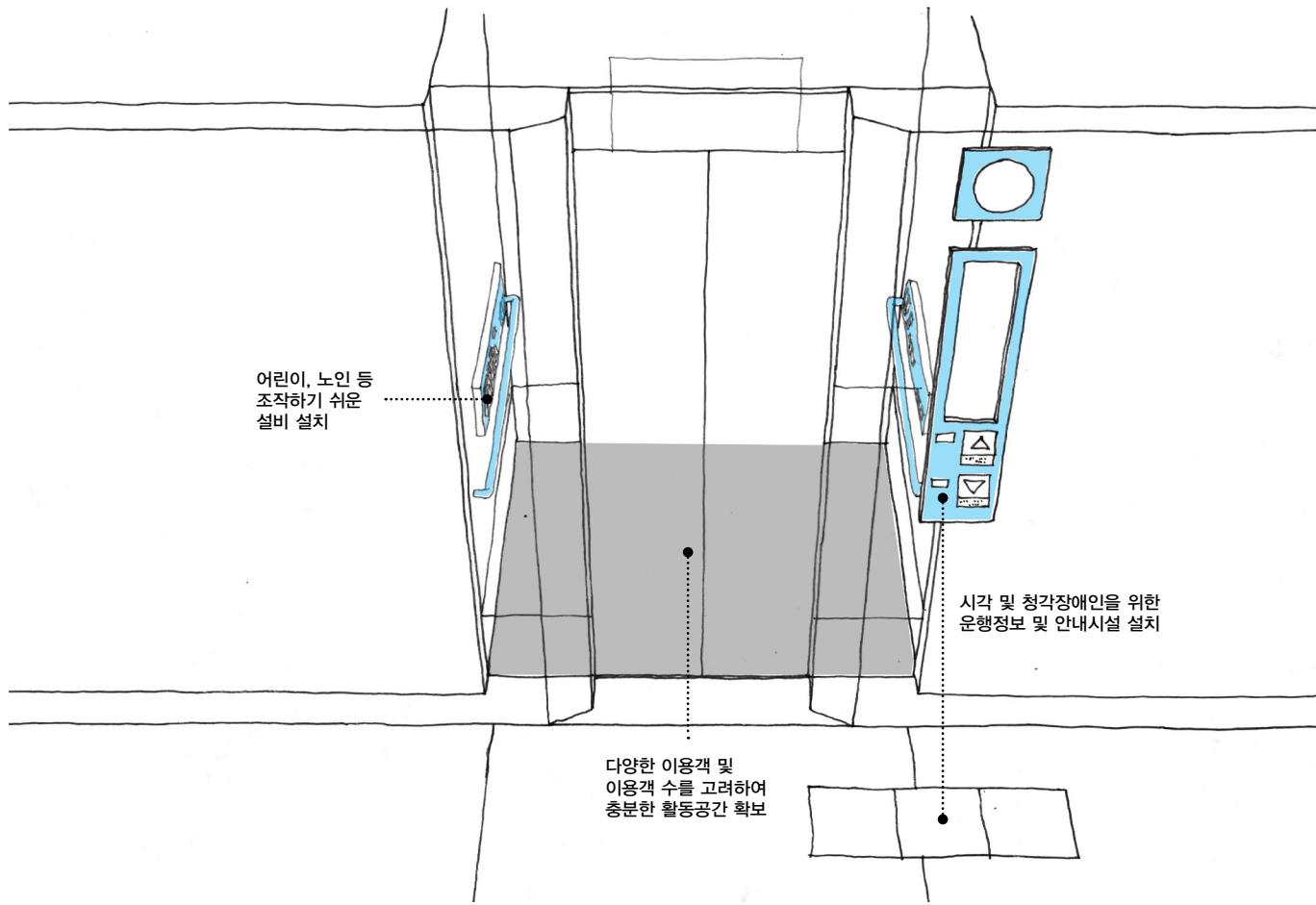
**참고자료****지양**

디딤판의 식별이 어려운 계단

**권장**

조명설치 된 계단 및 계단 형태가 명확하고 유도기능 부가된 계단





## 4.5 엘리베이터 > 기본지침

### 01

엘리베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층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

### 02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눈에 잘 띠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

### 03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전면공간, 엘리베이터 내부공간은 이용객 수를 고려한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

### 04

엘리베이터 조작설비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게 설치

### 05

승강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도착여부,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운행정보 및 안내를 제공

## 4.5 엘리베이터 > 승강로비

### 설치위치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저층 건축물일지라도 엘리베이터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의 층간이동에 매우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축
- 승강로비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각 층에서는 그 층의 중심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편의
-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가깝고, 누구나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활동공간

- 승강로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내리는 이용자,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시설은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B5 건축 편의
- 승강로비의 활동공간은 복도 등의 통로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 노인, 임산부 등이 엘리베이터를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활동공간**

- 최우수 BF인증기준 : 활동공간  $1.5m \times 1.5m$  이상

- 법적 기준 : 활동공간  $1.4m \times 1.4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모든 층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승강로비

**권장**

층별 서로 다른 색채로  
인지성을 높인 승강로비

## 4.5 엘리베이터 > 구조

### 승강기 출입문

자세한 사항은  
승강기 출입문 및 승강기  
내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인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BF 편의
- 승강장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틈새 간격은 3cm 이하로 한다. BF 편의
-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문의 작동이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편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출입문 일부에 투시창의 설치를 고려한다.
- 감지기식 개폐장치의 감지높이 범위는 바닥면으로부터 0.3m~1.4m 이하로 한다. 건축
- 노인, 장애인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의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승강기 내부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폭 1.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BF 편의
-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훨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훨체어 사용자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문 관찰용 후면 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의
- 노인, 임산부 등이 층간 이동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연속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 수평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0.85m 내외, 지름은 3.2cm~3.8cm, 벽과 손잡이의 이격거리는 5cm 내외로 설치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승강기 출입문**

- 최우수 BF인증기준 : 통과 유효폭 1.2m 이상
- 법적 기준 : 통과 유효폭 0.8m 이상(신축 건축물의 경우 0.9m 이상),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의 출입문 틈새 간격 3cm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강기 내부**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
- 법적 기준 : 유효바닥면적 폭 1.1m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참고**

후면 관찰용 상부 볼록거울 설치

**참고**

양방향 개폐 및 바닥 콜버튼 설치

**권장**

투시창 설치 및 바닥면 콜버튼, 후면 관찰용 전면 거울과 시 · 청각 안내 설치  
엘리베이터

## 4.5 엘리베이터 > 조작설비

### 형태 및 기능

자세한 사항은  
조작설비의 형태 및 기능  
내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인용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 엘리베이터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하는 스위치 조작설비의 높이는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은 1.5m,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은 0.85m 내외로 하며, 충수 버튼, 개폐버튼, 비상호출 및 상호통화용 버튼에 점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BF**
- 조작설비는 센서식이 아닌 양각 형태의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충수 등을 점자로 병기한다. **편의** **건축**
- 조작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한다. **BF**
- 승강기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밑면이 25° 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로 한다. **BF**

### 조작반의 배열

- 가로형 조작반은 상단 좌측에서부터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정보판(충수 및 방향표시) –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의 순서로 배열하며, 하단에는 충수 버튼을 배열한다.
- 세로형 조작반은 아래에서부터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 – 충수 버튼 –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 정보판(충수 및 방향표시)의 순서로 배열한다.
- 조작반의 충수 버튼은 세로형일 경우 낮은 충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배열한다.
- 조작반의 점자는 가로형일 경우 충수 버튼의 상단에 나머지는 좌측에 표기하며, 세로형일 경우 모든 버튼의 좌측에 점자를 표기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형태 및 기능

- 호출버튼 · 조작반 · 통화장치 등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 0.8~1.2m, 스위치 수가 많아 1.2m 이내 설치 불가능시 1.4m 까지 가능
- 승강기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 설치가능)
- 조작설비의 형태 : 버튼식,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조작반 ·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참고자료



### 지양

조작버튼의 색상이 동일하여 층수 등 인지하기 어려운 설치 사례



### 권장

조작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양각형태의 조작버튼

## 4.5 엘리베이터 > 유도 및 안내

### 안내장치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치 및 점형블록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0~54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안내장치 세부기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 편의
-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편의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BF
- 층별로 출입문의 위치가 다르면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문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편의
- 층수 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한다. 편의
-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한다. 편의

### 점형블록

- 조작버튼의 전면에는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감지 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를 달리한다. 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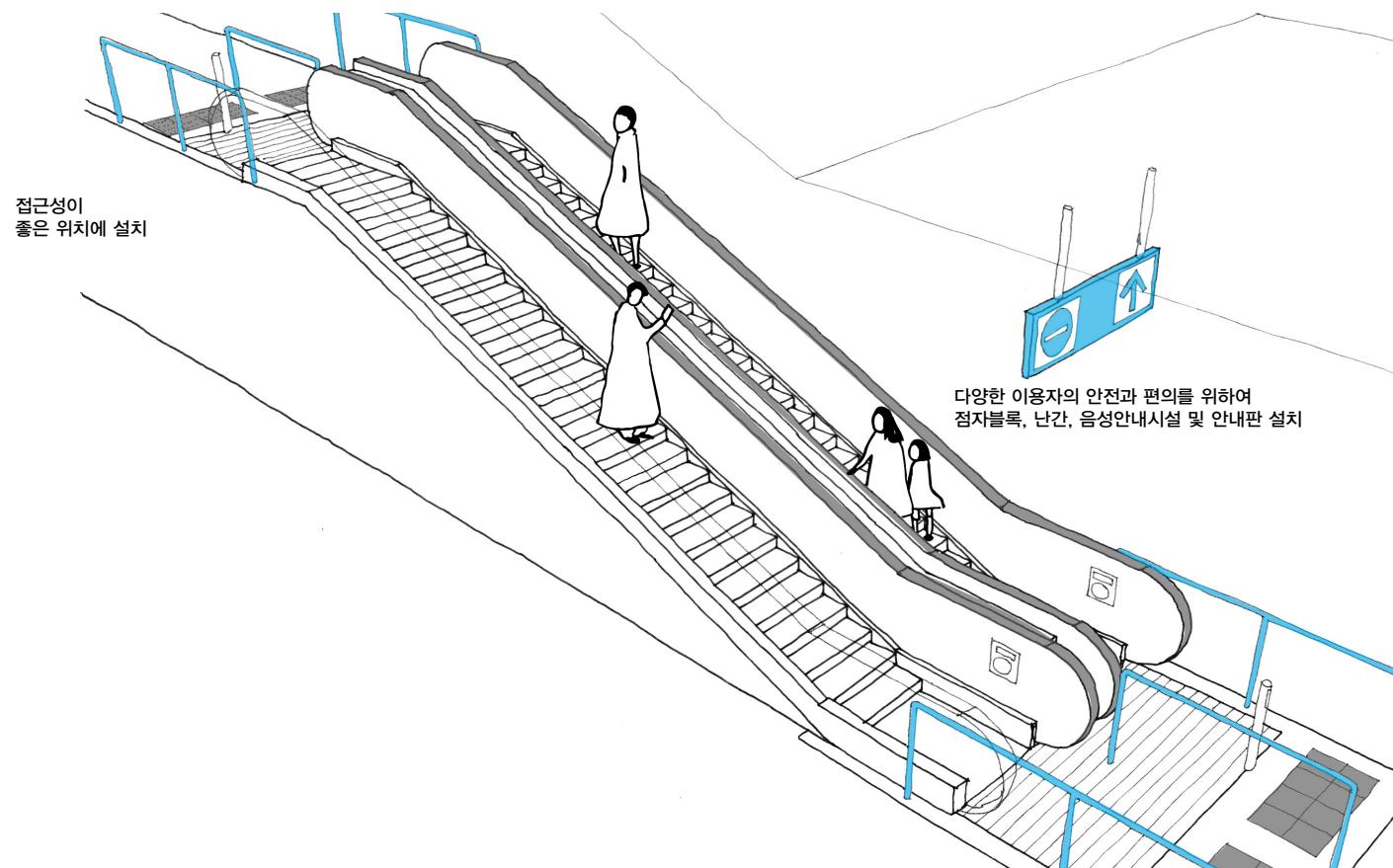
### 참고자료



### 권장

인지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의 픽토그램 및  
사인





## 4.6 에스컬레이터 > 기본지침

### 01

에스컬레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한 설비이지만,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시각장애인, 보행장애인 등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

### 0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디딤판 폭과 끝부분 처리, 손잡이 형태, 이동 속도 등을 세심하게 고려

### 03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다르게 설치

## 4.6 에스컬레이터 > 구조

### 유효폭

-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편의
- 유효폭 1.2m 이상은 양측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 디딤판

자세한 사항은  
디딤판 및 손잡이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5~57 참조

- 휠체어를 수평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을 3매 이상 또는 1.2m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의 건축
-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의 인지할 수 있도록 색상,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

### 손잡이

-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 한다. 편의
- 손잡이는 움켜잡기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축
- 에스컬레이터 양끝에 수평 이동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 시작과 끝지점에는 높이  $0.85\text{cm} \pm 5\text{cm}$ , 길이 1.0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층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편의

### 속도

-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한다. 편의

**참고자료****지양**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할 경우  
수직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사례

**권장**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계단,  
엘리베이터를 인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례

## 4.6 에스컬레이터 > 승강장

### 활동공간

자세한 사항은

활동공간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55~57 참조

- 승강장 전면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times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
- 수평 고정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의 시작지점 이전을 휠체어 활동 공간으로 본다. 건축

###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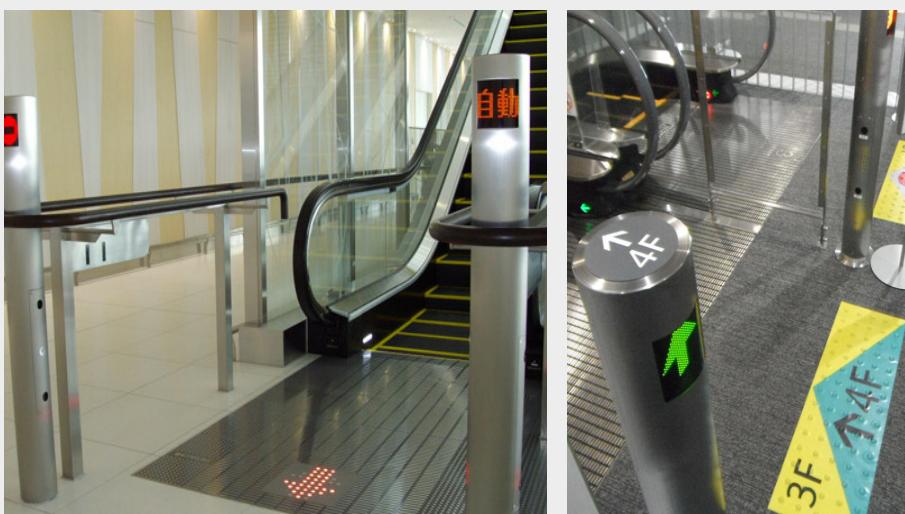
-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포장재와 질감,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건축

### 안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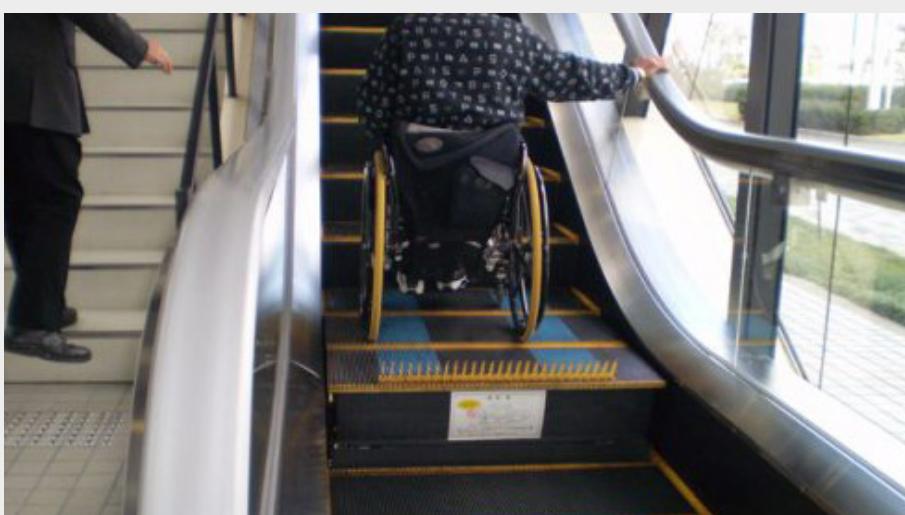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 양 끝 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여부를 표시하고 음성안내 장치 등의 필요한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

**참고자료****권장**

인지성을 고려한 엘리베이터  
이용 및 운영 관련 사인

**권장**

진입가능여부, 진행방향,  
층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장치

**참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 일본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기본지침

### 01

재해시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도로나 공지에 다다를 수 있는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소화활동 및 구조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 02

화재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이용자의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화 및 방연 구획을 적절히 배치

### 03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축물 외부로 대피가능한 구조로 계획

### 04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는 구조로 계획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방재계획

### 건축물과 대지

- 외부공간에는 화재 등 재해시의 안전대책상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자가 용이하게 도로나 공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경로 및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다.
- 복수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상호 연소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격시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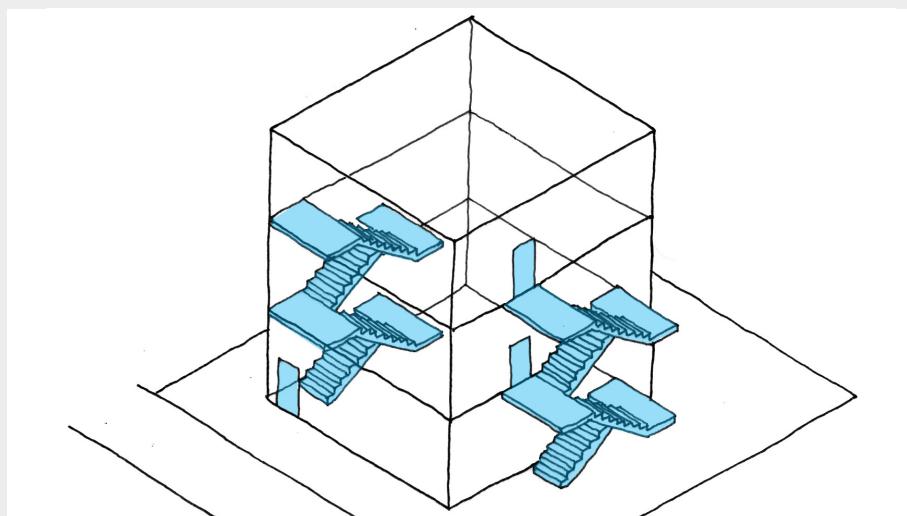
### 평면 및 단면 계획

- 화재시 화염과 연기를 좁은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방화 및 방연 구획을 적절히 배치한다.
-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벽, 바닥, 방화문 등의 부재는 화재에 대하여 소정의 시간 및 내화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단, 발코니, 비상용 엘리베이터, 방재센터 등 피난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피난시 이용자가 피난계단의 위치를 알기 쉽고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있어야 하며, 화염과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이 되도록 평면계획한다.
- 복수의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은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다방향 피난이 확보되게 하고 가급적 분산배치하도록 한다.
- 피난경로에는 순차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복도, 로비, 전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등을 안전구획으로 설치한다.

### 내장 및 방재설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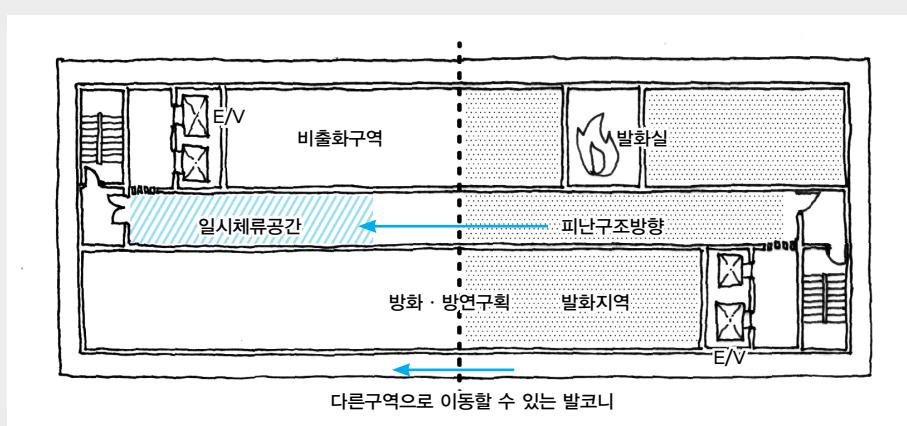
- 내장재 제한 및 방재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준한다.
- 내장재는 기본적으로 불연·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한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화재발생 초기단계에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권장한다.

## 참고자료



## 권장

공연장이나 집회장 등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 피난 경로를 확보한 옥외 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6조



## 권장

2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한 평면계획 예시



## 권장

비상시 대피를 위해 유도용 비상 조명을 설치한 복도 및 계단 손잡이

## 4.7 방재 및 피난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 피난방법

-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및 피난 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BF**
- 공연장 등 관람석이 있는 시설은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를 구성하도록 한다. **BF**
- 피난경로는 시설규모가 작더라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며, 막다른 복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코니 등을 설치한다.

### 피난구

- 공용공간에 피난구를 설치하며, 각 실에서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BF**
- 피난구까지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F**

### 피난의 구조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충별, 주요실 별로 외부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 발코니 등이 훨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모든 층에서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F**
- 건축물내부의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옥외공간이나 피난발코니 등의 일시 대피공간은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공간이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BF**

### 피난안내도

-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피난구까지의 피난동선을 표기한다.

##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시각경보기(경광등)은 남여화장실 내부(다목적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 시각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함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피난구 설치

- 피난방법 : 관련 소방서와 연계한 정기적인 피난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구비,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 피난구까지의 위치 :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연기 등에도 확인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 피난의 구조 :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 주요 실별로 휠체어 사용자 등이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별코니 등 설치

## 참고자료

권장

피난구의 물건적재 금지 사인



권장

## 피난안내도 설치 예시



소화기 사용방법

1. 소화기기를 바닥에 내려두고 손잡이의 안전핀을 끊는다.
  2. 한손은 손잡이, 다른 한손은 호스를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누르고 빗자루로 쓸듯이 박차한다.



화재시 대피방법

1.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2. 발신기(비상벨)를 누르십시오.
  3. 낮은 자세로 피난안내도의 피난 동선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한재신고 : 국법없이 119

권장

#### 다양한 경보 및 피난시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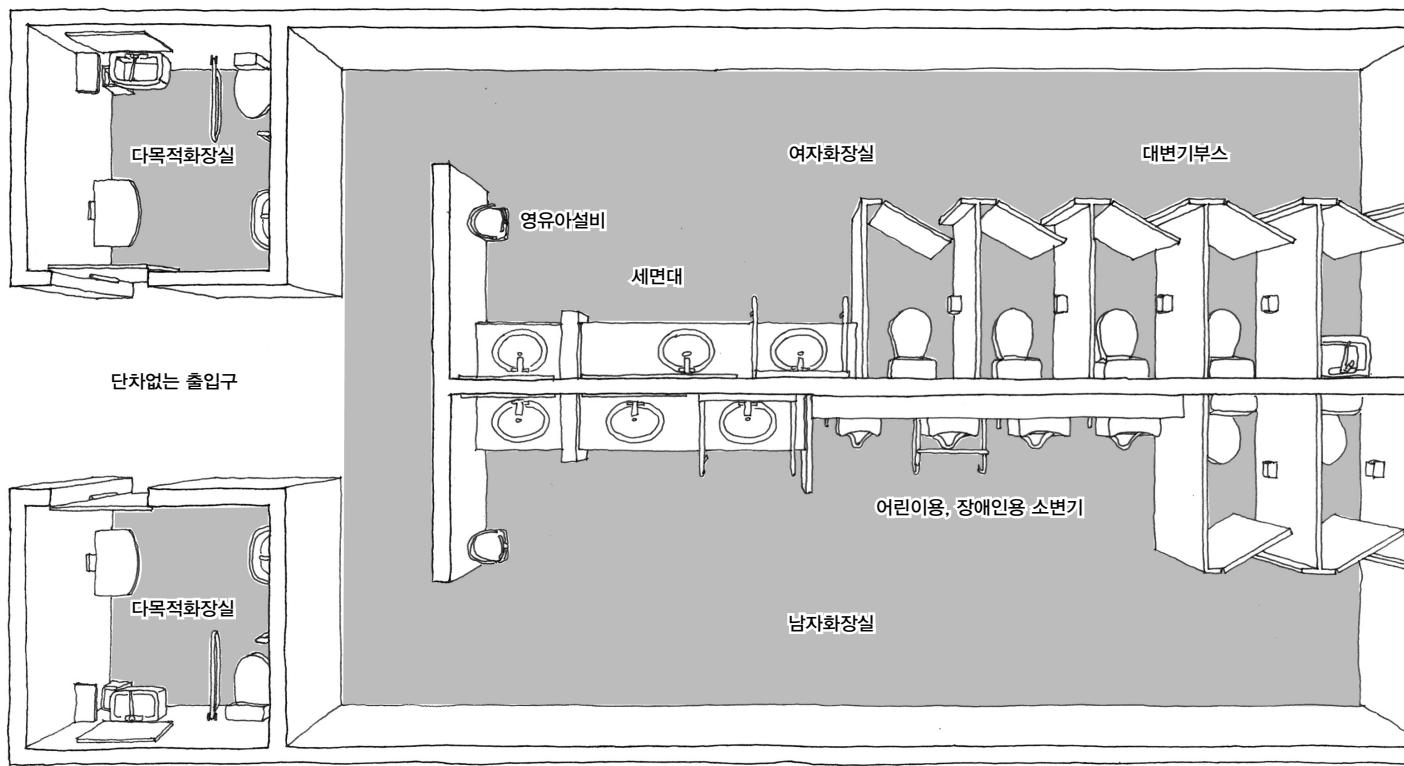


비상구 유도등

시각경보기

피난경보기

무선알림이



05

## 위생공간

### 5.1 화장실 > 기본지침

**01**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동반하는 장소이므로 매우 세밀한 배려 필요

**02**

화장실은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임산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

**03**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

**04**

화장실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절감과 약취가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계획

**05**

일반화장실에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

## 5.1 화장실 > 접근 및 안내

### 위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등을 위한 유도 및  
안내의 세부기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참조

- 화장실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편의
- 장애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과의 통합배치를 고려하여 주출입층 외에도 각 층마다 설치하여 사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 한다.

### 접근통로

-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동반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화장실의 접근 유효폭은 단차가 없는 1.5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F
- 기존 건축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BF

### 출입구(문)

- 남녀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위치나 방향 등을 결정한다.
- 화장실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을 설치한다. BF
- 화장실 내 · 외부 상호간은 물론, 출입문으로 인해 문턱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F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BF

### 유도 및 안내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화장실, 다목적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음성유도장치 등을 설치한다. 편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나 바닥마감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위치**

- 최우수 BF인증기준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 층수의 50% 이상 설치 (다목적화장실 설치 시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

**접근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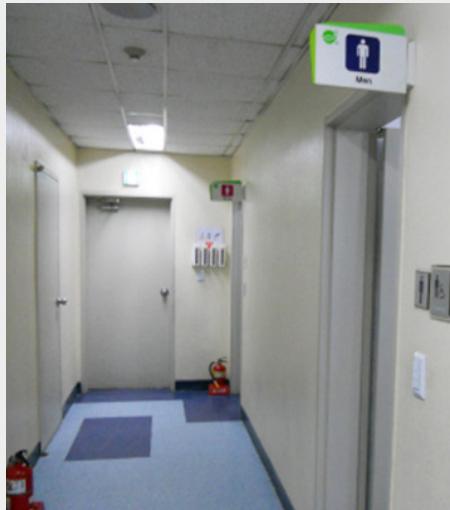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출입구(문)**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법적기준 : 유효폭 0.8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인지하기 어려운 화장실  
안내사인과 다른 실과 구분  
하기 어려운 출입구 주변

**권장**

화장실 내부 구조를 알기  
쉬운 부드러운 촉감의  
촉지평면제시

**권장**

여유 있는 통로와 단차가  
없는 화장실 출입구

## 5.1 화장실 > 마감 및 조명

### 마감

자세한 사항은

바닥마감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BF 편의
-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BF
-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바닥마감재는 특히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화장실의 물청소 등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는 1/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한다. 편의

### 조명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 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을 기준으로 조도기준을 설정하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조명은 빛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 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활동공간**

- 최우수 BF인증기준 : 활동공간  $1.5m \times 1.5m$  이상

- 법적 기준 : 활동공간  $1.4m \times 1.4m$  이상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감**

- 최우수 BF인증기준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바닥마감, 타일이나 판석마감의 경우 줄눈  $0.5m$  이하 설치

- 법적 기준 :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마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청결하고 꽤적인 분위기가 부족한 화장실

**권장**

바닥, 벽의 색채 및 재질감이 다른 마감재를 적용하여 꽤적성 및 인지성을 향상시킨 화장실

**권장**

창문은 없지만 조명을 통해 밝은 분위기 연출

## 5.1 화장실 > 안전 및 범죄예방

### 안심비상벨 및 CCTV

-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안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심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 안심비상벨의 설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비상벨은 다목적화장실, 세면대 주변, 대변기부스마다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 비상벨에 대한 설명 및 작동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한다.
- 비상벨 경광등 수신기는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광등 사이렌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추가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화장실 입구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고려한다.

### 스마트폰 활용

- 비콘(블루투스 송수신)과 스마트 폰을 활용, 안심존을 형성하여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흔들게 되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 및 112로 전송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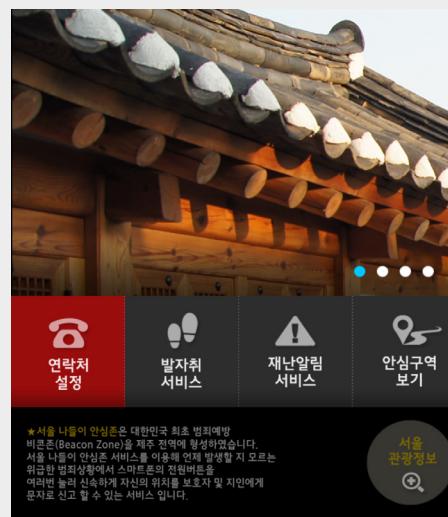
## 5.1 화장실 > 대변기부스

### 구조 및 형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부스의 크기 등  
세부기준: 「본 가이드라인」  
p.244 참조

-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한다. 건축
- 대변기부스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하며, 여닫이문일 경우 문 개폐 방향은 통로 쪽이 아닌 대변기부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건축
- 부득이하게 다목적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한 경우,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권장

손이 달기 쉬운 위치에  
안심비상벨 설치

## 권장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서비스 예시

## 잠금장치 및 제정장치

자세한 사항은  
잠금장치 및 세정장치의  
세부기준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참조

- 대변기부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편의
-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여야한다. 편의
-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이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점자를 표기한다. 편의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편의

## 기타 설비

- 대변기부스 일지라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잡고 일어나기 쉽도록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변기부스 내에 가방이나 짐을 들 수 있는 선반이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 대변기부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생기구의 종류를 표시하고 연령, 장애유무, 영유아 동반 등 해당 이용자에 대한 시각정보를 픽토그램 등으로 제공한다.

## 참고자료



## 권장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열고 닫기 쉬운 접이문을  
설치하고 대변기, 형태,  
영유아거치대 등 편의시설  
비치 유무의 안내제공



## 권장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는  
알기 쉬운 세정버튼 및 각종  
편의설비를 비치한  
대변기부스



## 지양

변기 뒤편에 위치하여 변기  
뚜껑을 닫아야 누를 수 있어  
사용하기 힘든 세정버튼

## 권장

색상 대비를 통해 변기의  
위치를 찾기 쉽도록 계획

## 5.1 화장실 > 위생기구

### 대변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위생기구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대변기는 비데 기능이 있는 양변기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대변기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하며,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도록 한다. 편의 건축
-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의 범위 내로 한다. 편의 건축

### 소변기

- 장애인과 영유아를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한다.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소변기는 화장실 바닥면을 청소하기 쉽게 가급적 벽면부착형으로 설치한다.

### 세면대

- 세면대는 목발사용자 등을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편의
-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는 파우더 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파우더 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세면대는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을 설치한다.
- 거울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전면거울을 설치하거나 거울 상단부분을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한다. BF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자동급수가 아닌 경우에는 냉온수 구분을 색상과 점자를 병기한다. 편의
- 수전은 겨울철에는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세면대 주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핸드드라이어, 종이타올,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대변기의 손잡이**

-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 모두에,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변기의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면대의 손잡이**

- 수평 손잡이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권장**

벽걸이형 위생기구를 설치하여 청소가 용이하고, 마감재와 위생기구의 색상 및 채도 대비

**권장**

세면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따뜻한 재질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고,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선반, 가방걸이 등 설치

**권장**

광감지식 수도꼭지와 우산걸이, 핸드드라이어 등의 편의설비를 갖춘 세면대

## 5.1 화장실 > 영유아 설비

### 일반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거치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62~70 참조

-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 어린이용 화장실은 부모의 동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 어린이용 화장실이나 어린이용 설비는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어린이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의 위생기구는 어린이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위생기구

- 어린이용 대변기는 어린이전용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 할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 좌대를 설치해야 한다.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 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 기타 설비

- 여자화장실은 물론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접이식 기저귀교환대를 보호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세면대 주변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핸드드라이어와 영유아거치대를 설치한다.
- 영유아거치대가 있는 대변기부스는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어린이용

위생기구

-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 어린이용 대 · 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 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제외
- 어린이전용 대변기 설치 또는 일반인용 변기에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 설치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용으로 설치할 경우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 이하의 높이로 설치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로 설치 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권장**

어린이의 신체특성에 맞는  
위생기구 설치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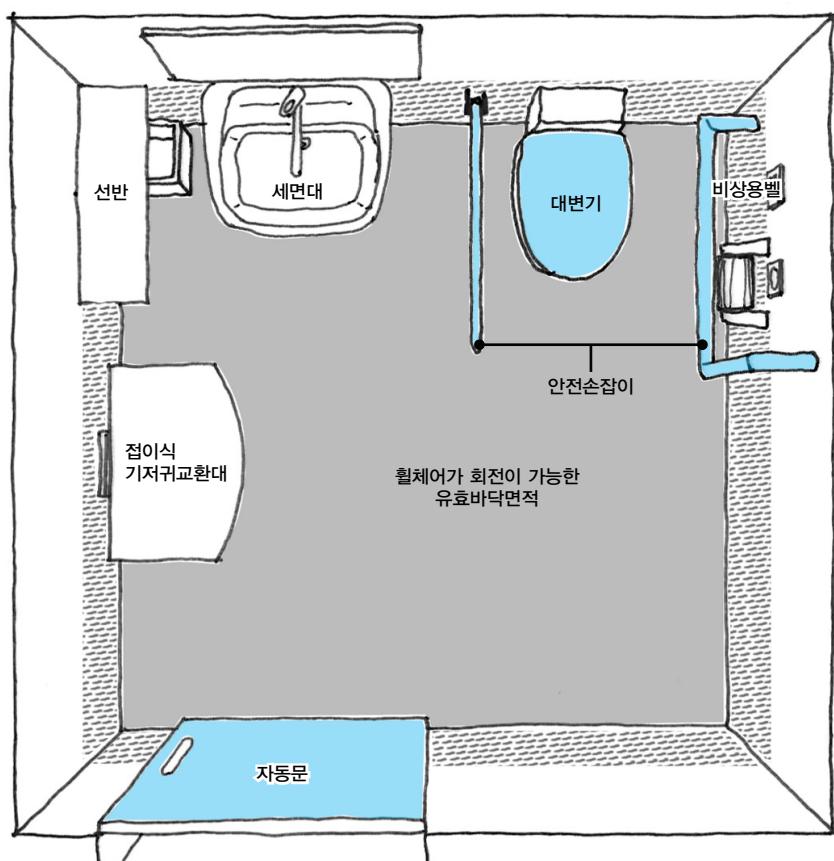
접이식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권장**

이동 동반 이용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설치된 영유아 임시  
의자

**권장**

영유아 팬티형 기저귀 또는  
의복 탈착용 접이식 교환대



## 5.2 다목적 화장실 > 기본지침

### 01

화장실 출입구에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설치

### 02

다목적 화장실은 각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가급적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편마비 등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서로 다른 2개소 설치 권장

### 03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출입문, 유효바닥면적, 위생기구, 손잡이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

### 04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나 가구 설치

## 5.2 다목적화장실 > 기능 및 구조

### 기능 및 위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크기  
및 구조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62~70 참조

- 다목적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
- 장애인, 임산부,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은 이용자가 많은 주요 충에서는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BF
- 다목적화장실은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통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장실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건축
-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 원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등 다양한 신체 상황 및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위생 및 편의 설비의 위치가 서로 다른 2개소의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한다.

### 구조 및 형태

- 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가족 혹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위치로 한다.
- 다목적화장실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폭 1.5m 이상을 확보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BF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0m 이상을 확보하며,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BF
- 다목적화장실의 유효 바닥면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BF
- 기존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적정 유효바닥면적 기준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 대변기 전면에는  $1.4m \times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대변기 측면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

## 기능 및 위치

- 최우수 BF인증기준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 층수의 50% 이상 설치  
(다목적화장실 설치 시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

## 구조

- 최우수 BF인증기준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1.2m 이상 확보, 유효바닥면적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자동문, 자동문 버튼은 0.8m~0.9m 높이와 코너로부터 0.4m 이격 설치
- 법적기준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유효바닥면적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법적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었으나 직관적으로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

**권장**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

## 5.2 다목적화장실 > 설비

### 위생 및 편의설비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손잡이, 거울, 세정장치 등  
기타 설비의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62~70 참조

- 다목적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위생 및 편의설비는 비데형 대변기, 세변기, 소변기 등의 위생기구를 기본으로 간이의자, 영유아 거치대, 기저귀교환대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또는 바닥에 쓰러진 경우에도 이용과 조작이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BF** **편의**
- 출입문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잠금장치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BF**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점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편의**
- 바다면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옮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가방, 지팡이, 우산, 옷, 짐 등을 잠시 옮겨놓거나 걸 수 있는 접이식 또는 수납형 선반이나 후크 등을 설치한다.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편의**

### 유도 및 안내

- 다목적화장실은 손잡이와 같은 높이에 휠체어 사용자, 노인, 임산부, 유아 및 동행한 사람 이외에는 사용을 양보해 달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2호**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B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위생 및  
편의설비

- 최우수 BF인증기준 :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휴지걸이 등의 기타 설비, 광감자식 및 누름버튼 세정장치 설치,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 설치, 유아용거치대 설치, 조명 스위치 및 휴지걸이 등의 높이 0.8m~1.2m 이내
- 법적기준 : 시각적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 기타 설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지양**

법적기준에 의해서만  
설치된 차기운 느낌의  
장애인전용화장실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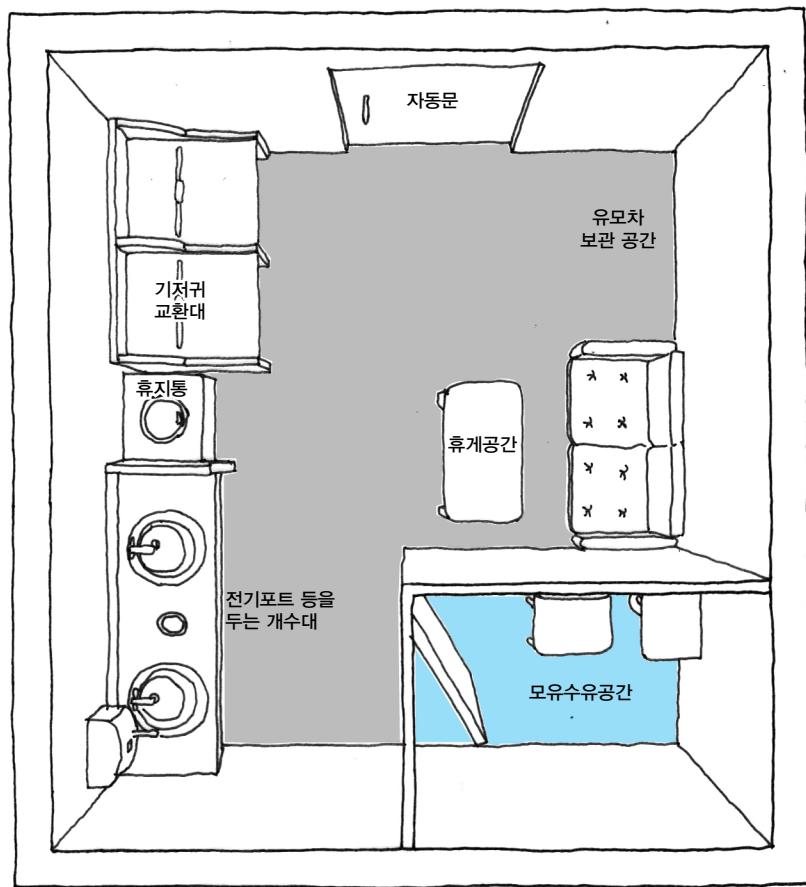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위생기구 및 기타 설비 등이  
벽마감재와 대비를 이루어  
인지하기 쉽고 청결한  
분위기를 주는 다목적화장실

**권장**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위생기구 설치

**권장**

입출입 편의를 위한 잠금장치  
겸용의 대형 출입버튼



## 5.3 수유실 > 기본지침

### 01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 사용자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02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

### 03

수유실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

### 04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 설치

### 05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

## 5.3 수유실 > 위치 및 접근

### 위치

- 임산부의 휴식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수유실은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접근로

- 수유실로 접근하는 통로의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1.5m 이상을 확보한다. [BF]
- 접근로에는 단차나 기울기가 없이 평탄하게 통로가 되도록 한다. [BF]

### 출입문

- 통로나 로비 등에서 수유실 내부의 직접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계획에 유의한다.
- 휠체어나 유모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으로 하거나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유모차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여유있게 확보한다. [편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위치**

- 법적기준 :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접근로**

- 최우수 BF인증기준 : 유효폭 1.5m 이상 확보, 전혀 단차 없음

**참고자료****권장**

수유에 필요한 공간 마련 및 기저귀교환대, 세정을 위한 세면대, 오물처리 휴지통 등을 설치한 쾌적한 수유공간



## 5.3 수유실 > 구조 및 설비

### 구조

-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편의
- 기저귀 교환 등을 위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독립된 실로 설치한다.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편의
- 세면대, 온수기 등을 둔 선반은 하부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깊이로 한다. 편의

### 편의설비

- 수유실에는 물을 끓일 수 있는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분유통 소독이 가능한 설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개수대,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을 비치한다.
-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짐을 옮겨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임산부 등이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수유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등을 비치한다. 3F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구조**

- 법적기준 :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단높이 0.65m 이상의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활동공간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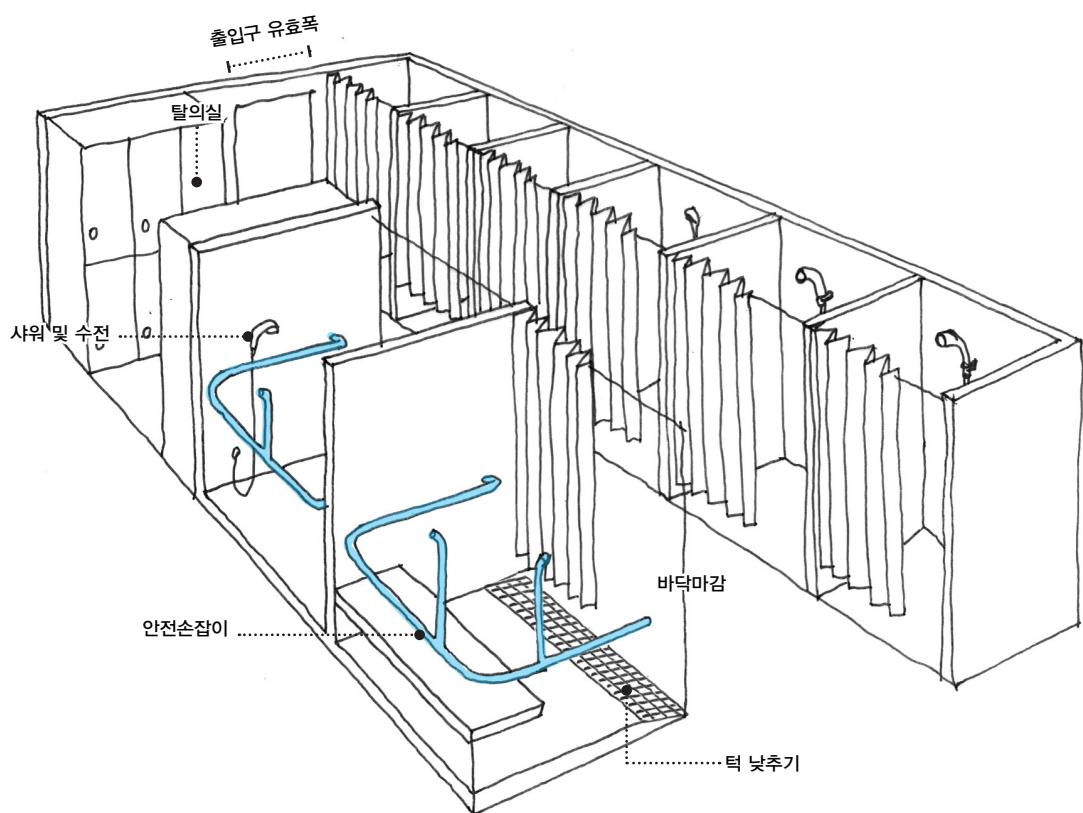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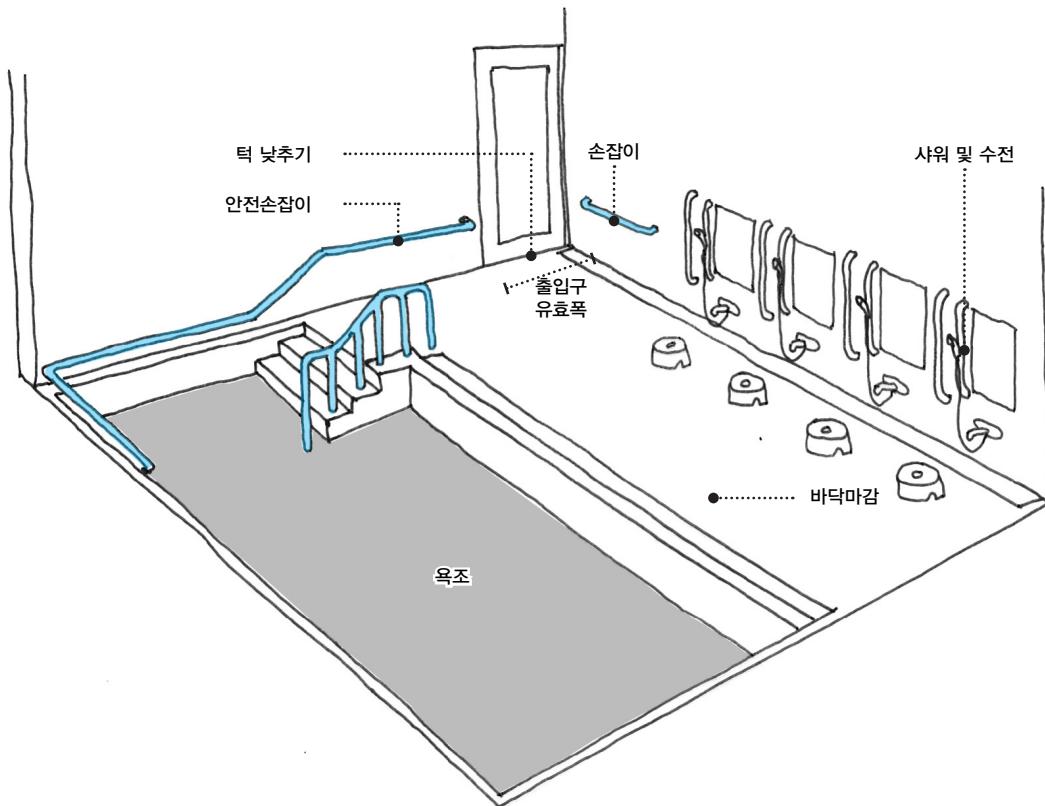
**편의설비**

- 최우수 BF인증기준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별도의 수유 공간 마련, 수유할 수 있는 의자 등 설치,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콘센트와 포트 등 설치,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참고자료****권장**

수유를 위해 개수대, 전기 포트, 기저귀교환대, 모유실 등 각종 편의설비를 갖춘 수유실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기본지침

### 01

욕실 및 샤워실은 물을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의 포장재료, 부착물,  
단차, 손잡이 등 안전에 특별히 배려하여 설치

### 02

노인 등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온열환경변화에 따른 신체상황의 급변을 배려

### 03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배려

### 04

욕실, 샤워실, 탈의실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동일한 층에 설치

### 05

욕실과 샤워실은 출입, 보행, 기립, 착석, 입욕 등의 행동 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적재적소에 설치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일반사항

### 출입문

자세한 사항은  
기타 세부기준 : 「서울형  
장애인 없는 인증제 –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p.84~85 참조

- 욕실, 샤워실, 탈의실의 접근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하며, 접근 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출입문은 미닫이문이나 접이문 등 개폐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편의
- 욕실, 샤워실, 탈의실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린 점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건축

### 바닥

- 욕실 및 샤워실은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작은 문턱이나 단차에도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 등 바닥면과 동일하게 설치하여 단차 없이 출입하도록 한다. 편의
-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편의
- 욕실,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하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로 한다. 건축 편의
-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체온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난방을 적극 권장하며, 이는 일정한 온도유지는 물론 미끄럼방지 등에 효과적이다. 건축

### 기타 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접자를 표기한다. 편의
- 자동 온도조절 또는 냉·온수의 범위를 고정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건축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바닥**

· 법적기준 :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자료****권장**

욕실 출입문의 단차 제거

**권장**

터치식, 광감지식 등  
사용하기 쉽고 픽토그램이나  
점자를 표기한 수도꼭지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욕실

### 욕조 및 활동공간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범위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 욕조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건축
- 욕조 측면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한다. BF

### 기타 설비

- 욕조 주위에는 반드시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BF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욕조 주변에 앉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에서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한다. 편의
- 어린이, 노인, 성인, 장애인 등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형 샤워수전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높이의 샤워기 후크를 설치 한다.

### 참고자료



**권장** 욕실 내에서 걷고 앉고 서는 동작을 돋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한 손잡이

**권장** 욕조로의 이동을 보조하는 벤치 및 손잡이 설치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샤워실

### 유효바닥면적

-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샤워실(샤워부스)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한다.
- 샤워실(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 \times 0.9m$  또는  $0.75m \times 1.3m$  이상을 확보하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times 1.5m$  이상의 크기를 권장한다. 편의

### 기타 설비

- 샤워용 접의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sim0.45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주변에 앉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한다. 편의
- 어린이, 노인, 성인, 장애인 등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형 샤워 수전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높이의 샤워기 후크를 설치한다.

### 참고자료



**권장**

샤워실 바닥면이 욕실과 연결되어 평坦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접이식 의자와 손잡이 설치

**권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샤워기, 욕조 주변에 대비되는 색상의 손잡이 설치

## 5.4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탈의실

### 탈의 및 수납공간

- 여러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출입구와 유효폭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1.2m 이상을 확보하여 가구 및 설비 등을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
-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탈의실의 수납공간은 바닥면으로부터 0.4~1.2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편의
- 탈의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 BF

### 기타 설비

- 탈의실 내에 비치하는 의자 등은 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0.4m 정도의 높이로 한다.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앓고, 서고, 걸을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건축
- 탈의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입욕 또는 샤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 및 기타 편의설비를 갖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참고자료



**권장** 탈의실 옷장 밑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 확보  
(출처: 에이블뉴스)

**권장**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



## 통합 · 연계한 기준 및 지침

- BF**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 이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편의** (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도로** (4)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 (5)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로** (6) 서울시 가로 설계 · 관리 매뉴얼
- 공원** (7)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제 [공원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건축** (8) 서울형 장애물없는건물 인증제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도공원** (9)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 자전거** (10)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 버스** (11)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 철도** (12)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 편의시설 설계 지침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최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변혜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김선태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  
이수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미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신동홍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김상운 건국대학교 연구처 연구교수  
강태성 건국대학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수연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재석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유가현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이주형 건국대학교  
변성현 건국대학교  
김현준 건국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주연 건국대학교  
박귀현 건국대학교

**편집/삽화/디자인** 강채인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김혜연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행정** 정미영 건국대학교  
임지나 건국대학교

---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발행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발행일 2017. 1

서울특별시	고홍석	문화본부장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
	정미경, 윤문경(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민병아, 최성옥(전)	유니버설디자인팀 담당

**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Copyright©20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서울특별시